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67-01

2021년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용역보고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책 임 연구 원 : 최 승 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구 원 : 최 윤 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 석 진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강 민 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 지 선 (자치법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경 석 (중앙대학교 박사)
 하 민 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장 선 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 윤 정 배 (자치법연구원 팀장)
 강 명 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원)
 마 상 훈 (자치법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정 훈 (자치법연구원 주임연구원)
 이 경 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배 우 리 (자치법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국내외의 법령, 최신 판례·결정례, 정책 등을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에 관련된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성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두 개념의 구분에 관하여 혼란이 있어 왔으나, 사전적·집단적 특성을 지니는 접근성 조치와 달리, 정당한 편의제공은 사후적·개별적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 등이 2018년 장애인권리위원회 제6호 일반논평을 통해 제시되었음
-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성질과 그리고 접근성 조치 및 접근성 최소기준의 적용을 통한 접근성 보장의 작동 방식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들의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가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피고,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선진 10여개국의 법령·판례 및 결정례·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논의하였음
- 전체 논의의 기초로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검토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의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접근성 조치를 통해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의무가 연속적 보완 관계를 이루도록 제도를 디자인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여러 나라에 걸친 다양한 규범과 사례, 정책 및 제도의 작동 방식이나 효과 등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상향식으로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 유형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상의 속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리라

는 측면에서, 법제 데이터를 구조화하기 위한 기본틀을 설계하였음

- 크게, 접근영역과 장애유형,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분류를 데이터 기본 범주화 대상으로 삼고,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호에서 강조하는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을 기본적인 영역으로 보고, 나머지 노동, 교육, 문화, 재화용역 일반, 행정서비스, 참정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병렬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도록 기본틀을 구성하고 국내 및 해외의 개별 케이스 이해에 활용하였음
- 국내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을 직접 다루고 있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접근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법령과 법원의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정책 및 제도등에 관하여 수집하고 개별 케이스를 분석한 뒤 논점 및 함의를 도출하였음
- 국내의 사례에서도 접근성 조치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혼재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에 정당한 편의 내용 형성을 위임하고 있는 조항들의 경우, 논의의 기초에서 살핀 접근성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의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편의제공보다는 접근성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러한 성격을 밝히면서 접근성 최소기준과 정당한 편의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나열하는 일부 법령에 대하여, 최근 법원은 이를 예시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는 열거의 방식으로 보는 경우에 비해 두터운 권리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판례 및 결정례들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거부에 대한 면책사유로서의 과도한 부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도한 부담 등의 판단 시 공적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또한 정책 개선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의 유니버설 디자인들이 사전적이며 집단적인 방식이면서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세분화하여 예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접근성 보장 효과를 최대화하는 한 축으로서 접근성 조치의 확장 또한 의미 있는 작동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접근성 조치의 맞춤화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결을 위한 법원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웹접근성의 확보는 사전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고 있었으며, 신기술 등장 시 정당한 편의제공 방식을 통해 보장되던 영역이 점차 접근성 표준을 통해 보장되는 영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음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제와 복지법제가 잘 맞물려 기능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정책 및 입법 개선안 제시에 앞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언제 작동하는지,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 조치가 혼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갈래를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두 문제의 순수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경우의 수에 따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하였음
- 접근성을 가장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접근권’의 성질과 법적 효과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접근권을 법에 명문화하는 경우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 보았음
- 또한 차별금지법제와 사회복지법제의 조화로운 제도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도 살펴 봄
- 정책 개선 방향으로서, 접근성의 제도화와 접근성 지원 제도의 강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공적 지원 고려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정당한’ 편의에 관한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하였음
- 법령 체계화 방향으로서,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 혼재 해소를 중심으로 접근성 조치를 규정하는 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예시로서 장애인등편의법에 내용형성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시설물 접근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제4항의 개정 필요성과 방

식에 관하여 제안하였음

- 이동·교통수단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형성을 시행령을 통해 교통약자법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8항의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규정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본래 목적대로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고 접근성 표준으로서의 무조건적 이행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헌법 등의 상위법에 접근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선언적으로 보장되거나 타 법령에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온 ‘접근권’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 인권 보장 효과를 강화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관계맺음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 어떤 상황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다른 개별 사례에 있어서의 더 나은 조치를 발굴하기 위한 일차적 의미를 넘어, 개별 기관에서의 시정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례와 다른 생활영역으로 확장 적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의미 또한 지님
- ‘접근권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진행형의 대화’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복합적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당한 편의제공이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접근권을 두텁고 연속성 있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논의의 기초	13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5
제2절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에 대한 분석틀	20
제3장 국내의 경우	31
제1절 법령	33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45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91
제4절 분석	109
제4장 해외의 경우	121
제1절 법령	123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148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163
제4절 분석	179
제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185
제1절 유형별 쟁점	187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199
제3절 법령 체계화 방안	21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29

참고문헌	234
------------	-----

국가별 부록 (별권)

I. EU	1
II. 영국	25
III. 독일	111
IV. 프랑스	147
V. 이탈리아	167
VI. 스웨덴	177
VII. 오스트리아	215
VIII. 일본	247
IX. 홍콩	303
X. 미국	317
XI. 호주	425
XII. 캐나다	461

제1장

연구 배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 배경

- 국제규범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권리로 인정된 것은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에서 시작되었는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배제·거부·억압하는 사회적·물리적 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으로 평가됨. 동 협약에서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관하여 제2조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5조제3호를 통해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할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이라는 용어에 상응하되 권익실현의 관점에서 보다 강화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정당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관해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제1항제3호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함
- 접근성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효적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로서 평가됨. 그러나 구체적인 법령 및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성 조치 의무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다양하게 규율 및 적용해 온바, 이들 국가들의

입법례에서 접근성 및 합리적 편의제공은 각국 법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구현되는 특징이 발견됨. 접근성 조치와 합리적 편의제공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 각각의 실질적 의미와 관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채 각국의 입법례에 반영되면서,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한 적용에 있어 국가별 차이가 존재함

2. 연구 필요성

-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 재편에 대한 시대적 요청
 - 장애인이 사회 내 시설, 이동, 정보 등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접근성의 개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수용되는 시설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자리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완벽하게 참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적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오늘날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의 복잡한 판단 구조로 인한 적용상의 문제점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다른 차별금지 의무와 대별되는 가장 큰 특색은 특정한 내용의 작위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작용을 차별로 평가하고 이를 금지하는 구조를 취한다는 점임
 - 이같은 규율 방식은, 작위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단순 금지를 넘어서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의무지우고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이를 차별로서 금지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형식적 차별 금지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 보장과 자유 증진을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음
 - 편의제공 의무의 부담자라 해도, 편의의 제공이 불비례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부작용이 차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 의무 구현 구조가 독특함
 - 또한 접근 영역별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규율 방식이 다르며, 관여되는 법령체계가 달라진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전체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법이 예정한 대로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접근성 개념의 특수성과 접근성 의무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최소 범위의 접근성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판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장애인 접근권이 협소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식들 가운데 접근권이 갖는 독특한 성격과, 접근성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위한 통일적 판단 기준의 미비, 관련 법령간 비정합성 등이 이러한 문제들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종래 통일된 해석 기준 미비로 접근성 조치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혼동이 있어 왔다고 해도, 일단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이전과는 다른 원리원칙의 확립이 필요함
- 그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법령 정비 방향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해외 법제를 검토하여 우리 법제 형성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도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접근성 조치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관계에 대한 이해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조치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구별 기준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바, 접근성 조치는 사전적인 것으로서 집단을 권리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된 조치가 과도한 부담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될 것이 요청되는 데 비해, 정당한 편의제공은 사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권리 대상인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 조치가 조건적으로 즉각 이행될 것이 요청된다는 점이 주된 차이점으로 제시됨
- 차별 구성 여부에 관하여 이처럼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와 달리, 접근성 표준의 미준수가 차별을 구성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2014년 일반논평 제2호에서 모든 접근성 침해가 차별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 때문에 이 두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반차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6호 일반논평(2018)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이 두 의무가 모두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그리고 접근성 의무는 점진적 이행을 특징으로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즉각적

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 위반의 경우 과도한 부담 유무와 관계 없이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법제의 형성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실제 제도를 수립하거나 법령을 개정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 및 결정에 있어서의 판단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2018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제6호 일반논평을 발표하면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접근성의 관계 및 이에 대한 판단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기존의 혼란을 극복하고 조화롭게 설계 및 해석함으로써 법제를 보다 정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됨

-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같은 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 온 우리나라로서는 2018년 위 논평을 계기로 새롭게 정립된 질서 위에,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법제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장애인이 경험하는 일상 속 시설·설비 이용이나 정보 접근 등의 방법과 사회적 관계맺음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임

- 웹콘텐츠 접근성, 모바일 접근권 등 새로운 유형의 접근성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법령, 정책 등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법제에 최적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급히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임

○ 장애인 접근권의 확보에 있어서 국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과, 장애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령·판결·결정·정책 등 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물리적 공통 기반들을 파악하고 그 실현 구조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최적의 제도 설계를 위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사례를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정책 개선의 기반으로 삼고자 함

-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속성과 통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함
- 더 나아가, 각국의 발전 양상을 고려한 법제 모델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 제도를 설계해 나간다면, 특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IT 융복합이 장애인 권리 신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도 및 입법적인 선도가 가능하리라 기대됨
- 장애인 인권정책에 대한 권고가 힘있게 작용하고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진정사건에서의 결정이 장애인 인권의 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개별 법령과 사례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비일관성을 극복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 이슈들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최신 법제 연구의 필요성

- 특히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018년 제6호 일반 논평 이후, 각국 법제에서도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에 대한 보다 명료한 해석 기준이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법제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법제 및 정책은 새로운 수요 및 질서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하나, 단편적 연구들 로만은 그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준 변화에 따라 최신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설계가 필요함
- 또한, 이와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욕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접근성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의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 장애인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자원분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책으로 제시하기 위한 연구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법적 판단, 시정권고, 정책 형성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법령, 결정례,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함

- 규범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나누어 접근함. 이는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판단 기준 자료로서의 의미 및 기존 법제에 따라 섬세하게 분류하고 판단할 분석틀로서의 의미도 지님
-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여러 법제와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차별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장애인 유형별 특성 및 차별의 체계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와 관련된 입법 및 행정, 사법상의 총체적인 제도가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는 기초를 설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의 가장 핵심적이고 일상적인 보장 수단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질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

○ 법제 개선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

-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조성된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은 각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일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대우, 특히 접근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달리 대우받지 않도록, 직접 및 간접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그 환경이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으로 조성할 의무를 우리 공동체에 부과함
- 그러나 장애인들은 충분한 자원을 투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시적인 최소기준만 충족하면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는 법제가 원인제공의 한 요인이기도 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함
- 공공의 지원체계로부터의 부담이 결여된 상태에서 편의제공에 따른 실질적 차별의 해소가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장애인과 편의제공 의무 부담자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만 간주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원래 목적하였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임
- 그 간극을 메꾸고 장애인차별금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제공에 따르는 부담을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의 법제 핵심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장애인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이해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 의무의 관계에 대한 조화로운 설계와 해석이 필요해지고 가능해진 오늘날,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 정리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질 수요를 확인하여 법제 개선의 기반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애인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됨
 -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인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 관련 국내외 법제 자료 수집 및 분석
 - 법령, 최신 판례, 결정례, 정책 등 국내외의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와 관련한 주요 법제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분석
- 해외 선진사례 수집 및 분석
 - EU,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10여 개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장애유형별 최신 선진 사례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선별·분석·번역·정리
-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 관련 법제 개정안 제시
 -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
 - 정보접근권과 문화 향유권 등 새로운 접근성 조치 대상 영역을 포함하는 정책 및 법령 개선 방향을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규정들간 정합성을 검토하여 법제 체계화 방안을 제시

2. 연구 수행 단계

○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 관련 논의의 기초 수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분석)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상 합리적 편의제공(협약 제2조, 제5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등) 및 접근성(제9조 등) 의무 관련 내용을 분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상 쟁점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이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중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제2호(2014년), 평등과 반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2018년)의 내용을 분석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및 접근성 의무의 의미, 상호관계와 해석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분석틀 마련)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 관련 국내외 법제의 형성 및 적용에 있어서 연혁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거나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된 쟁점을 파악. 특히 법령 체계화 및 법제 개선안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이에 대한 경우의 수, 구현 경로 등을 파악하여, 앞서 파악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관계에 관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제 및 법제간 분석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

○ 국내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국내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 관련 법령 개별 분석) 국내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와 관련된 법령의 연혁적 특징을 개관하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조치와 관련된 규정 체계의 특성을 분석하며,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 등 국내의 관계법령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국내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에 대한 규정 내용, 적용 프로세스, 해석 기준 등을 파악하여 영역별로 정리
- (국내 판례 수집 및 분석)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후 국내 법령의 연혁적 변화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헌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 분야의 법원 판결 및 결정 사례를 수집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령 체계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한 뒤 앞서 설계하였던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별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판단 근거 및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사례와 비교하여 심층 분석하고 유의미한 사례 특징들을 정리

- (국내 결정례 수집 및 분석)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내용적으로 연관된 사례를 수집하여 결정례 판단 근거 법령을 식별한 뒤 국내 법령 체계 변화와 연관지어 연도별·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하여 유의미한 특징들을 정리
- (국내 정책 및 제도 등 수집 및 분석)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정책·제도 개선 사례집, 추진계획 자료, 실태조사자료, 보도자료 등 정책 연관 자료 등을 수집하고 주제영역별로 취합한 뒤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국내 정책의 방향 및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진단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분석
- (국내의 경우에 관한 종합 분석)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에 대한 국내 법제도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와 관련한 국내외의 실태, 법령, 결정례, 정책 등의 개별 분석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징 및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에 대한 법제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해외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선진 10여개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조치 관련 법령 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및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홍콩 등 주요 선진국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 조치 관련 법령을 수집 후 단위 법령의 관점에서 내용 및 체계를 분석하여, 분야·영역 및 장애유형별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규정 방식의 내용 및 연혁적 특징과 적용 프로세스, 해석 기준 등을 파악하고 국가별로 정리
-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해외 최신 판례 및 결정례 수집 및 검토) G7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및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구축해 온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에 따라, 실제 사건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이를 적용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국가별로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 최신 판례 및 결정례를 수집하고 개별 내용을 종합 체계적으로 분석
-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해외 선진 정책자료 수집 및 검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상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최신 정책자료를 취합하여 국가별 정책 특성을 검토.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 관련 공공·민간정책 최신 사례를 수집 및 분류하고, 특히 정보접근권과 문화 향유권 등 새로운 접근성 조치와 관련된 해외 선진 정책자료를 포함하여 검토

- (해외 선진사례 종합 분석 및 법제 시사점 도출) 정당한 편의제공이 실제 법령에서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범위는 개별 국가의 경제력 정도,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공동체 자원 분배의 정도 및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 지능정보화 및 장애인 접근성 보장 관련 기술의 발전 양상 등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하고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정리된 해외 선진사례를 종합 검토하면서 향후 연구, 조사, 정책개발 및 법령 해석 방향 도출을 위한 준거로서 각국의 경제, 사회, 기술 특성 등 배경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법령을 분석하고 법령 체계화 및 법제 개선안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도출

- (국내외 법령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 방향 검토) 해외 선진사례 분석, 국내 법령 및 판례, 결정례, 정책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던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주제영역 및 정책수단별로 유의미한 법제 개선 방향을 검토
-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확인) ① 지체·뇌병변 장애, ② 시각·청각·언어 장애, ③ 내부 신체 기능 장애, ④ 발달장애의 4유형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자문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접근성 및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편의제공 관련 욕구를 진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 방향과 그 구현 관련 쟁점 사항을 분석
-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장애관련 활동가, 장애인단체, 장애관련 교수 및 법조인 등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자문 등을 통해 국내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문제지점을 식별하여 개선 의견을 수렴
- (법제 개선 방향 종합) 앞서 진행된 법제 현황 및 개선 방향 분석 결과와 장애인 당사자 및 국내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
- (법령 체계화 방안 도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과 관련한 법령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별로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

○ 국가별 보고서 정리

- (국가별 보고서) 해외 선진국의 법령·최신 판례 및 결정례·정책 등 수집된 법제 사례에 대해 영역별(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등)로 선별·분석·번역·정리하여 국가별 보고서 형태로 제시

제2장

논의의 기초

제2장 논의의 기초

제1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접근성 및 합리적 편의제공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¹⁾ 의무를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는 2006년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²⁾(이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을 들 수 있음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당사국들이 동 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을 전문에서 밝히고 있음
- 동 협약 제9조에서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타 대중 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 이 협약의 목적상, “합리적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1)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사용된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대신,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되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의 용어를 사용하되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맥락 등 원문 표현을 밝혀 적는 것이 의미에 있어 적절한 경우에는 ‘합리적 편의제공’으로 표현하기로 함
 2) 채택일 2006. 12. 13. /발효일 2008. 5. 3. | 대한민국 가입일 2008. 12. 11. /적용일 2009. 1. 10.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고 정의됨(제2조)

- 협약 제5조제3호는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할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에 대한 거부를 장애로 인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성’은 동 협약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협약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음.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라)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 그런데, 동 협약상의 접근성 의무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내용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구별 기준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두 의무의 관계에 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가. 구분 기준

- UN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라 한다)는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제2호(2014년), 평등과 반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2018년)을 통해 이러한 접근성 의무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적용 및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음. 특히, 두 의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일단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것은 2018년의 제6호 논평을 통해서임
 - 동 논평에 따르면, ‘접근성과 합리적 편의는 평등 법률·정책의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접근성 의무는 ‘집단과 관련되며, 점진적으로,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반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개별화되는 것이고, 모든 권리에 즉시 적용되지만, 과도한 부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para.41)

- 위와 같은 2018년 제6호 일반논평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두 의무의 구분에 관한 혼란이 해소될 수 있게 됨
 - 제6호 논평에서 이같은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 두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단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음. 차별 구성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경우와 달리, 접근성 기준의 미준수가 차별을 구성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2014년 일반논평 제2호에서 모든 접근성 침해가 차별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 때문에 촉발된 기존 논란이 비로소 해소될 수 있게 됨
 - 두 의무가 별개라는 구분과 함께, 접근성 조치가 사전적인 것으로서 집단을 권리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된 조치가 과도한 부담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될 것이 요청되는 데 비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사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권리 대상인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 조치가 조건적으로 즉각 이행될 것이 요청된다는 점을 주된 차이점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두 의무의 성격 구분은, 두 의무가 실제 작동되는 양식과 이를 반영한 법제 디자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접근성 의무는 보편적 설계나 보조 장비를 통해 그 이상에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반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법제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음

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통 목적과 연속적 보완 관계

- 또한 동 논평에서는, ‘보편적인 디자인 또는 보조 기술을 통해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를 ‘사전적 의무’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지금부터의 의무’라면서 두 의무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접근성 의무, 이 ‘두 의무 모두 접근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para.24)
 - 다시 말해, ‘접근성(Accessibility)’ 보장을 위한 방법에는, 사전적, 집단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접근성 의무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 또한 공통의 목적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은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경 및 조정된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별적 조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근성 의무가 예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불이익이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생활 전 영역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장소, 시설, 장치,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건축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 ‘접근성의 점진적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동안 ‘즉각적 의무인 합리적 편의’가 개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para.42)³⁾

-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공통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 작동 방식에 있어서는 합리적 편의 의무와 접근성의 의무는 서로 연속적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2006. 12. 13. / 발효일 2008. 5. 3. || 대한민국 가입일 2008. 12. 11.⁴⁾ / 적용일 2009. 1. 10.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다만, 이 paragraph 42.는 당사국이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4)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서술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합리적 편의가 접근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유보: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25조마호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 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2절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에 대한 분석틀

1. 기본 분석틀의 설계

가. 기본 분석틀 설계의 의의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규범과 사례, 정책 및 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한 범주에 따라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그 작동 방식이나 효과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본 연구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권리가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권리의 보장에 있어 현재의 제도는 어떤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권리자가 당해 권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향유할 수 있으면서도 의무자가 당해 의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에 관해 국내외의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통해 고민하는 상향식의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별된 복수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 체계를 설계하는 틀작업이 요청됨
- 개별 사례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여러 사례들의 공통 내지는 비교되는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의 고안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법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음

나. 복합적 유형화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에 있어 일종의 기본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범주는 주로 '접근 영역'으로 불리며,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참정 등으로 구분됨. 재화와 용역은 다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의사소통,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 체육활동 등으로 나뉨
 - 그런데 이러한 접근영역의 구분은, 접근성 내지 정당한 편의제공을 두고 통일

된 한 가지 관점에서 범주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 목적에 비추어 적합한 방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 여러 영역이 중첩적으로 관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관련 사안들이 어느 한 영역에 대한 것으로만 다루어짐으로써 연계 분석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 문화활동에 관한 케이스와 교육에 관한 케이스의 핵심 쟁점이 모두 정보통신·의사소통과 관련한 문제인 경우에도, 각각 접근영역 분류나 적용 법령을 중심으로 이들 정보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의 문제점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관련지어 분석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나 법령, 판례에의 반영에 있어서도 개별 사안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시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는 A가 영화를 관람하고자 한다면, A의 출발 장소에서부터 영화관까지의 이동·교통수단, 영화관으로의 진입 및 영화관 기본 설비의 이용, 영화티켓 구매 및 결제, 관람할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영되는 영화들의 내용, 시간, 상영관 및 관련 부가 정보 등의 전달, 재난 시 대피로 등의 안내, 영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장면 묘사와 대사 등을 전달하는 보조장치의 이용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함

- A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 정보통신·의사소통, 2) 시설이용, 3) 이동 및 교통수단, 4) 문화·예술활동 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영역의 관점에서만 조명하기 쉬운 단일 분류식 접근은, 문제의 복합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혹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체계에 따라 ‘재화 및 용역 이용’에 관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섬세한 내용들이 함께 고려되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 쉬움

- 최소한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서 문제해결에 참고 및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단일 분류 방식은 명백한 한계를 지남

○ CRPD 일반논평 제2호(2014)에서는 접근성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성**에 입각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para.13). 그렇다면, 관련된 영역들을 여러 분석 항목별 관점에 따

라, 또한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도 그 해당되는 모든 유형들을 병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의 입체적인 이해와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서로 다른 법제에 따른 케이스들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법제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보를 세분화된 형태로 유형화하고 또한 이를 병렬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 이처럼, 세분화된 분류의 병렬 적용을 이용한 케이스 정보의 유형화가 필요하나, 모든 접근영역에 대하여 이들을 같은 층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 편의제공 문제의 이해나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인지 등, 보다 의미있는 케이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고찰이 아울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체 차별금지 규정 체계와 조화되면서도,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례 이해와 법제 개선안 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범주화의 개념과 목적과 관리 양식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2. 법제 데이터 구조화 방법

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 데이터 구조화 양식 개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

- 이들 모두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법령, 판례, 정책 및 각종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 요소들이 추출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관여되는 요소로는 당사자 요소와 환경 요소, 대상 요소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당사자 요소로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 대상 요소로서 장소, 시기, 절차, 환경 요소로서 법령, 평가 등을 들 수 있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교차차별의 유형 등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분석 항목으로 추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사후적 관리를 위해서는 경과 자료들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기본 요소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마다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사례 데이터들의 특징들을 담아내고 개선을 위한 지향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항목들을 주의깊게 고르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화된 특징 요소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을 시도함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의 이해를 위하여, 관여된 요소들의 특징과 가능한 경우의 수를 파악하여 패턴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개별화된 요청에 따라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합리적 조정’ 의무의 제공과 거의 모든 생활 영역과 관련을 맺게 되는 접근성 자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 요소들이 한두 가지에서 그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임. 행위의 본질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작업은 중심이 되는 공통 요소들과, 해당 사안의 특징을 식별하기 위한 대표자로 나누어지게 될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대상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들을 먼저 체계화하고 관련 쟁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령, 판례, 정책 등에 관한 케이스 분석용 양식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으며, 개별 케이스에 관한 세부적 정보를 수집, 번역, 분석 및 검토하는 데 활용하였음

관련 국가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독일 <input type="checkbox"/> 오스트리아 <input type="checkbox"/> 이탈리아 <input type="checkbox"/> 영국 <input type="checkbox"/> 프랑스 <input type="checkbox"/> 스웨덴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캐나다 <input type="checkbox"/> 호주 <input type="checkbox"/> 일본 <input type="checkbox"/> 홍콩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관련 제목	<input type="text"/>	연번	<input type="text"/>
관련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외부신체기능 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언어 <input type="checkbox"/> 안면	
	<input type="checkbox"/> 내부기관장애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심장 <input type="checkbox"/> 간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 <input type="checkbox"/> 간질	
	<input type="checkbox"/> 우리나라 등록장애 유형 외 신체적 장애	<input type="checkbox"/> 외형적 추형 <input type="checkbox"/> 신경계 <input type="checkbox"/> 근골격계 <input type="checkbox"/> 감각기관장애 <input type="checkbox"/> 생식기 <input type="checkbox"/> 소화기 <input type="checkbox"/> 비뇨기 <input type="checkbox"/> 호흡기 <input type="checkbox"/> 피부/혈액/내분비계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 <input type="checkbox"/> 당뇨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에이즈	
정신적장애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input type="checkbox"/> 우리나라 등록장애 유형 외 정신적 장애/사회적 장애	<input type="checkbox"/> 학습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서장애 <input type="checkbox"/> 알코올 중독 <input type="checkbox"/> 약물 중독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input type="checkbox"/> 타인의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접근권 및 반차별권(합리적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구분	<input type="radio"/> 접근성 <input type="radio"/>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input type="checkbox"/> 접근성·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접근영역 1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시설물[<input type="checkbox"/> 건물 <input type="checkbox"/> 도로 <input type="checkbox"/> 교통 <input type="checkbox"/> 학교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input type="checkbox"/> 이동·교통수단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활동 <input type="checkbox"/> 관광활동 <input type="checkbox"/> 체육활동 <input type="checkbox"/> 사법 <input type="checkbox"/> 행정 <input type="checkbox"/> 참정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영역[<input type="checkbox"/> 전자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응급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의무부담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교차 차별 사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나이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신분 <input type="checkbox"/> 출신지역·국가·민족·인종·피부색 <input type="checkbox"/> 혼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신·출산 <input type="checkbox"/> 가족 형태 <input type="checkbox"/> 사상/정치적 의견 <input type="checkbox"/> 전과 <input type="checkbox"/> 성적 지향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분야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정치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사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복지 <input type="checkbox"/> 여가 <input type="checkbox"/> 도시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통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장애 정도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관련된 접근영역, 장애유형 등과 함께 기재		

관련 법령	
법령명	<input type="text"/>
조문번호	<input type="text"/>
원문	<input type="text"/>
번역	<input type="text"/>
검토 내용	<input type="text"/>
관련 판례·결정례	
제목	<input type="text"/>
판결·결정일	<input type="text"/>
사건번호	<input type="text"/>
법원·평등기구·결정기관명	<input type="text"/>
청구주체 (신청인·진정인·원고 등)	<input type="text"/>
상대방 (피신청인·피진정인·피고 등)	<input type="text"/>
관계인 (피해자·참고인 등)	<input type="text"/>
결론유형	<input type="checkbox"/> 인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인용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input type="checkbox"/> 의무이행 권고 <input type="checkbox"/> 교육실시 권고 <input type="checkbox"/> 징계 권고 <input type="checkbox"/> 보호조치 권고 <input type="checkbox"/> 지도·감독 권고 <input type="checkbox"/> 관행개선 권고 <input type="checkbox"/> 규정마련·개정 권고 <input type="checkbox"/> 제도마련·개선 권고 <input type="checkbox"/> 재발유의 권고 <input type="checkbox"/> 지원 권고 <input type="checkbox"/> 협의를 조정 권고 <input type="checkbox"/> 의견표명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판시사항·결정사항·주문	<input type="text"/>

판단요지·결정요지	<input type="text"/>
근거법령·참조조문	<input type="text"/>
상세내용	<input type="text"/>
검토내용	<input type="text"/>
관련 정책/사례/자료	
요지	<input type="text"/>
상세내용	<input type="text"/>
검토내용	<input type="text"/>
관련 법령	<input type="text"/>
출처	<input type="text"/>
보완 및 추가사항	<input type="text"/>

나. 기본틀의 활용

1) 기본 접근 대상과 분야 구분을 통한 접근영역 유형화

○ 다음 장에서 살펴 볼 내용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주요 법제는 대개 영역별로 접근성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내용을 규정하는 특징을 보임. 정당한 편의제공 또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접근영역은 사례를 의미있게 분석하기 위한 일차적인 유형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의사소통, 시설물 이용, 이동교통수단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영역별로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에 하향식으로 이슈를 도출하고 개별 사례에서 그 문제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제도 개선안을 고안하는 데 있어 특히 유용한 방법일 수 있음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RPD의 일반논평 제6호(2018)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한 편의제공 의무와 접근성 모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서로 작동 방식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개념이지만 그 접근의 대상 영역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 의무가 함께 관련된 케이스의 분석에 있어, ‘접근성’과 관련하여 중심이 되는 영역들을 기본으로 하여 우선 유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판단됨

○ CRPD의 일반논평 제2호(2014)에서는 ‘물리적 환경’ 및 ‘대중교통’에의 장애인 의 접근과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의 중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음(para.1 및 para.6 등). 장애인 접근성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리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분석에 있어 우선순위를 높여 다룰 필요가 있음

- 또한 접근 양식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대상이 어떤 것인가와, 접근을 통해 목적하는 총체적인 경험이 어느 분야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

- 동시에, 이러한 구분들이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계나 국내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의 체계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보고서 전반의 분석에 있어서, 1) 정보통신·의사소통, 2) 시설이용, 3) 이동 및 교통수단을 기본적인 접근성 영역으로 보고, 나머지 영역의 경우 이를 분야 정보로 보고, 1) 재화·용역일반 2) 문화예술체육관광, 3) 노동, 4) 교육, 5) 행정서비스·참정, 6) 금융·보험·상거래 7) 건강·보건의료, 8) 재난안전 9) 주거 10)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기본적인 접근성 영역으로서의 1) 정보통신·의사소통, 2) 시설물 접근⁵⁾, 3) 이동 및 교통수단 중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거나 공통적인 속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 합쳐서 다루는 것도 기능상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이를 나누어 취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구분된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나누어 살펴기로 함

5) 또는 시설 이용

- 위의 분야 구분 또한 해당 접근 영역의 공급자와 관련한 분류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해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용보다는 노동으로, 토지건물임대보다는 주거 등으로 표현하기로 함

2) 장애 유형에 따른 분석

- 장애유형은 케이스 분석 정보의 활용을 고려할 때 주요 기준으로서 의미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국내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 보면서 그 경향성에 먼저 주목하면, 비슷한 이슈들을 종합하여 상향식으로 문제의 모습을 발견하기 쉬움. 다음 장에서부터 살펴 볼 내용과 같이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 이슈를 바라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유형화 기준 가운데 하나로는 장애유형을 들 수 있음
 -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판례나 결정례 등의 형태로 문제제기되었던 국내외 케이스들의 주요 흐름들은 시·청각 장애,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몇몇 장애 등의 유형별로 사례간 공통적인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국내와 해외의 법제 특성 차이나, 반차별법제와 복지법제 사이의 장애 유형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 등의 문제 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장애 유형에 관한 정보를 개방적이고 병렬적인 방법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법제의 중요한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해당하는 장애 유형을 모두 병렬적으로 기재하되 법정 장애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두드러진 장애유형, 또는 함께 등장하는 장애 유형의 공통사항을 묶어 장애유형을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유연하게 적용함

3)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구분

- 개별 사안들에서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슈는 혼재될 수 있음. 앞서 논의된 것처럼 2018년 CRPD 제6호 논평 이전까지,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적 구분에 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 국가의 법제에서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이 자리잡게 된 연혁적 특징과 관련하여 서로 법제에서

분리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난 때문이기도 함

- 개별 사안에 나타난 접근성 의무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그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제의 관련 문제와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케이스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이 접근성 의무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 둘이 혼재된 것인지에 관한 유형 구분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됨

4) 그 밖에 케이스별로 유의미한 정보

- 위에서 상세 버전으로 살펴 본 사례정리 양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 케이스 종류, 해당연도나 일자, 판결/의결/법령제정/정책입안 기구, 의무부담자 유형, 장애 정도, 교차 차별 사유, 결론 유형, 기타 키워드 등이 유형 정보로 부가수집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내용들을 표기 및 활용함
- 케이스별로 제목, 사안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및 조문, 판단 이유, 검토 의견 및 수집 및 분석된 상세한 사건 정보, 관련 원문 자료 등을 필요에 따라 함께 정리함

다. 기본분석틀(간소화버전)

- 개별 사건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틀을 활용하되, 보고서의 전반적인 가독성을 고려하여 주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핵심 정보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시와 같은 간소화된 버전의 틀을 통해 분석요약 및 유형화하여 정리하기로 함

제목		영화상영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구 분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의사소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예술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편의제공	
기본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원 20○○.○○.○○.선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 판결
주요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화상영관 사업자들이 시각장애인인 원고에게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 접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피고들이 영리사업자로서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과도한 부담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의무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당한' 편의제공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고찰 필요

제3장

국내의 경우

제3장 국내의 경우

제1절 법령

-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법 제4조 제1항제3호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동 법률을 통해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한 바 있음
- UN 장애인권리협약이나 해외의 입법례에서는 대부분 ‘합리적’ 편의라는 용어를 쓰는 데 반해,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편의 대신 ‘정당한’ 편의라는 용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조하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논의 또는 해외 입법례의 원문을 밝혀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표현하기로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조문은 각각 고용(제11조), 교육(제14조), 시설물의 이용(제18조), 이동·교통수단(제19조), 정보통신·의사소통(제21조), 문화·예술활동(제24조), 관광활동(제24조의2), 체육활동(제25조), 사법·행정(제26조), 참정권(제27조), 직장보육서비스(제33조) 등으로, 이들 각 조문 및 관련 시행령 등 하위 규정, 타법 위임 등의 방법을 통해 각 접근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음

1. 기본 접근 영역별

가. 정보통신·의사소통

- 국내의 경우, 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관련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제8조제1항, 제6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p> <p>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비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p>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음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나. 시설물 접근·이용

- 시설물 접근·이용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및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대상시설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 시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다. 이동 및 교통수단

-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4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통약자법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분야별

가.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관광활동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의 접근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의2와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관광활동에의 접근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동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체육활동에의 접근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나. 교육

- 교육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 1. 음성변환용 코드
 -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다. 노동

- 노동 영역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제공에 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참정권에의 편의제공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마. 재화 및 용역 일반 및 기타

- 재화·용역 일반의 이용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판례 및 결정례(6)7)

1. 기본 접근 영역별

가. 정보통신·의사소통

1) 판례

□ ○○지법 2021.2.18. 선고 2017가합33112판결, 인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및 상거래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정당한 편의제공

○ 사실관계

- 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회사(피고)가 해당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이미지 파일에 대해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

- 6) 국내 법원의 판례 및 결정례의 경우, CaseNote, 종합법률정보센터 등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키워드로 하여 2008년 이후를 대상범위로 검색하였으며, 검색 값으로 도출되는 4,234건의 판례 및 결정례에 대한 검토 결과, 대부분의 사안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으로 학대, 착취 또는 장애인이 민형사상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를 대신 이행하도록 종용 또는 연루되는 사건, 피고의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은 정보통신, 교육, 이동 및 교통수단,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사법·행정서비스 영역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7)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주된 쟁점으로 직접 다루고 있거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결정례를 수집 및 선별하여 분석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결정례집에 수록된 케이스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8년 이후의 모든 케이스를 대상으로 검색하였으며, 그 가운데 제목 이외에 내용이 공개되지 않거나 병합되어 다른 케이스에서 동일한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54건의 결정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이 웹사이트를 통한 상품의 정보 확인 및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는 원고 등에게 정보접근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적극적 조치 등을 청구

○ 판단

- 이에 본안에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차별행위의 존재 여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판단기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
- 법원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2013. 4. 11.부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웹사이트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의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가 2013. 4. 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 갑 등은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는 乙 회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 갑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

츠 접근성 지침 2.1.’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침이 국가표준으로 승인되어 웹 접근성 준수 여부 평가에 있어 표준으로 활용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규범적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등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이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 등 협력업체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인 점, 협력업체들이 직접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고 있고, 이 사건 웹사이트에 등록된 상품의 수는 약 수백만 개에 이르는 점,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상품 등록 시 대체 텍스트란에 의무적으로 필수적인 정보의 기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나, 일부 협력업체들이 대체 텍스트란에 의미 없는 단어를 형식적으로 입력한 후 등록하고 있으며, 피고가 수많은 상품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 따라서 乙 회사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적극적 조치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및 광고 등에 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도록 판시하였음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no.1	
의결일자	2020. 6. 12.
사건번호	20진정0176200
사건제목	음성변환 바코드 등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서비스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이 발급하는 자격이력 내역서 제공에 있어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 아이)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위반 *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의 성격,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상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의 비용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움
비고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기에 제공받지 못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no.2	
의결일자	2020. 11. 24.
사건번호	20진정0200800
사건제목	자막, 수어통역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에 대해 정보통신에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고등교육 강좌를 제공함에 있어 자막이나 수어통역 등 편의 미제공 행위는 차별금지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위반 * 피진정인 1은 교육 강좌 모두에서 문자 및 수어통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 2는 모든 강좌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에 한해서는 수어통역도 제공 *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과도한 부담을 주장하나, 소요예산이 기관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본질적이며 파괴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비고	* 정당한 편의제공이 반드시 이용자가 지정하는 행태의 편의제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

no.3	
의결일자	2016. 4. 22.
사건번호	14진정0887500·14진정0887600(병합)
사건제목	모바일 웹 접근성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OO이 운영하는 모바일 웹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에 있어 자동입력방지용 보안문자 입력 단계의 음성지원서비스 미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 * (주)OO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국가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관련제조업자등의 의무기관에 해당됨 * 모바일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모든 환경에서 일률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나 이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고,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모바일웹상의 음성지원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전문기관의 의견을 고려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no.4	
의결일자	2016. 11. 14.
사건번호	16진정0746800
사건제목	공연 예매 음성지원서비스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OO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함. * 웹사이트를 통해 공연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보안문자 입력에 대한 음성지원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 * OO예매서비스에 음성지원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개발할 수 없고 많은 비용과 인력투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외 예매처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나, 회사매출액 및 영업이익등의 규모를 고려하면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서비스제공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no.5	
의결일자	2015. 1. 19.
사건번호	14진정0870400
사건제목	교육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주요 논점	<p>* ○○직업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 촉진법」 제2조에 근거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p> <p>*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업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개별지도가 어렵다는 것은 장애인의 요청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이자 편의제공의무의 위반행위</p> <p>* 해당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p>
no.6	
의결일자	2013. 3. 13.
사건번호	12진정0653600
사건제목	홈페이지 웹접근성 미보장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p>* 시각장애인에게 ○○구민회관 홈페이지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p>
no.7	
의결일자	2012. 3. 23.
사건번호	10진정0608110, 10진정0608118 (병합)
사건제목	대체 텍스트 등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p>주요 논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가짐 *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주차정보, 부동산가격공시열람서비스에 대한 대체 텍스트 등을 미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배포되는 전자정보 및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접근 및 이용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웹접근성의 문제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과도한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더욱 중요한 점, 피진정기관이 대표홈페이지 개편에 있어 3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p>no.8</p>	
<p>의결일자</p>	<p>2011. 11. 28.</p>
<p>사건번호</p>	<p>11진정0063900</p>
<p>사건제목</p>	<p>보이스아이 미제공</p>
<p>접근영역</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법·행정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의사소통</p>
<p>장애유형</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p>
<p>주요 논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가 시각장애인에게 부장애 재진단 서류 안내 등 행정서류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보이스아이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문서로 발송하지 않은 편의 미제공 행위 * 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차원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의무위반이자 차별행위임 * ○○동사무소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여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관내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임 * 따라서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고, 유사사례의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 및 정책마련의 개선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함

나. 시설물 접근·이용

1) 판례

□ ○○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판결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체장애 [휠체어사용자]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접근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사실관계

- 원고는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00년 말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원 ○○학과에 지원하여 2000. 00.경부터 석사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이수과정에서 학교 내 건물 중 평생교육관, 인문관, 중앙도서관, 식당, 학생회관 등을 주로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청구취지

- 원고는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장애인인 원고의 입학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장애인인 원고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주로 이용하는 각 건물에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출입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등 그 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심한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학교생활을 하게 하였음이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및 제4조의 배려의무 위반행위인바, 원고가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

○ 판단

- 이에 본안에서는 계약관계에 기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배려의무로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구할 수 있는지 등 피고의 구체적 배려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

- 법원은 원·피고 사이가 일방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등록금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한 이상 피고 역시 장애인인 원고에게 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장애인등편의법」이 정하는 내용이 장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시설주에게 모든 시설을 구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무 불이행 시 제46조에 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책무로서 막연히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법적 의무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 대학 내 편의시설이 미흡함은 것을 알고 입학하였다는 점이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피고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 따라서 피고의 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겪게 된 신체적인 불편 및 정신적인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음

2) 재결례⁸⁾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건(2018경기행심1302)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접근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화와 용역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해당 사례에서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 내 요양원의 소유자가 ○
○호의 공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임의 용도변경하여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공동공간인 일반주
차장에 마련하였음. 이 과정에서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않아
청구인 등의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갈등이 발생하자 요양원 소유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주차구역을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
의시설을 훼손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음

- 이후 청구인 등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처분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리 미숙에 대한 책임의 전가가 부당함을 주장
하며 이 사건 청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노유
자시설에는 그 편의시설로서 예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

8)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동일한 검색키워드로 2018년 이후의 재결례를 검색
한 후 ‘보건복지’, ‘장애인’, ‘기타 불리한 처분’ 등의 처분유형별 상세검색 항목 값으로 결과 범위를
축소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공통되는 결과가 없어 단순 키워드로 검색되는 1,214건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음. 결론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분야는 이동 및 교통수단으로 확인되었으
나, 그 내용이 교통약자 이동편의법에 따른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시 운전자의 승차거부 행위’
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취소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또한, ‘장애인’
키워드 검색의 결과 역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및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또는 환수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제공 이행청구가 주된 사항으로 확인되어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의무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대한 재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다만,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처분의 유사 재결례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도 소재의 요양원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2면) 및 안내표지판 등의 임의삭제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
분에 대한 취소청구 건(2018경기행심1302)으로, 해당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여야 한다. 청구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2면) 및 안내표지판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9조(시설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에 별도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시정명령) 및 제24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 94,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함.”이라 판시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원처분을 유지하였음

■ 사실관계 요약

-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 내 요양원 소유자는 ○○호 점유자임
- ○○호 소유자는 해당 공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관리단 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용도를 변경(근린생활시설→노인복지시설)함
- 이에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편의시설(안내표지판, 장애인주차구역)을 건물 공용주차장에 설치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충분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용부분의 임의변경이 문제되며, 안내표지판을 철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 주차장으로 도색하여 훼손함
- 이에 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주(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예고함

■ 처분 및 청구취지

- 2018.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원처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부당한 책임전가를 이유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이 사건 청구)

■ 판단

- 법원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편의시설로서 예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것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별도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재결)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no.1	
의결일자	2013. 4. 3.
사건번호	12진정0618300
사건제목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도서관)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에 약 100~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소모성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음성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no.2	
의결일자	2011. 11. 10.
사건번호	10진정0794800·11진정0323600(병합)
사건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백화점, 대형마트 건물)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사용
주요 논점	* ○○시의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미비 행위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행위
비고	* 불법주차 차량 단속미비 책임을 피진정인이 아닌 지자체에게도 부과
no.3	
의결일자	2011. 8. 22.
사건번호	11진정0074900
사건제목	승강기 미설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시청 건물)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사용
주요 논점	* ○○시청 민원실등 지하 구내식당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no.4	
의결일자	2011. 7. 22.
사건번호	10진정0370410 등 9건 병합
사건제목	장애인화장실 남녀미구분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지하철 화장실)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의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 * 부채가 과도한 상황 및 해당 교통행정기관의 예산지원 부족은 장애인화장실을 남녀구분하여 설치하는 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건물붕괴 및 승객안전 우려의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미설치한 것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사유에 해당
no.5	
의결일자	2011. 7. 22.
사건번호	09진차0001267
사건제목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일반음식점)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 이용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음식점 건물에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 * 경사로시설 개조에 드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충분하게 안내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설설치에 대한 부담을 준 것은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장의 책임
비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피진정인이 아닌 지자체에게도 부과

no.6	
의결일자	2011. 4. 26.
사건번호	10진정0470000
사건제목	승강기 미설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도서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예술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 이용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광역시)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무를 해태한 행위 * 향후 건물보수공사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건물보수공사를 이유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
no.7	
의결일자	2011. 4. 26.
사건번호	10진정0140200
사건제목	승강기 미설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 사용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하는 ○○도 ○○센터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제한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전 설치된 대상시설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센터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의 정비대상시설에 해당하여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마련했어야 함 * 시설개조에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어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가지는 점, 2010년 관련예산을 신청한 것은 편의시설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설의 개조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그 밖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려움

다. 이동 및 교통수단

1) 판례

□ ○○지법 2014. 4. 11. 선고 2013나10169판결, 일부 인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휠체어사용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 및 교통수단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화와 용역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편의제공

○ 사실관계

- 원고는 이동시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12. ○○. ○○. 21:10경 ○○역에서 철도여객사업을 운영하는 법인(피고) 소속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아 ○○호 열차에 탑승하여 ○○역에 21:47경 도착하였으나, 피고 소속 직원이 ○○역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열차 승무원이 원고를 도와 열차에서 하차시켰으나, 해당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은 역무원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가 홀로 장시간 승강장에서 대기한 사실이 있음

○ 청구취지

- 원고는 열차가 21:47경 ○○역에 도착하여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하차한 후 해당 역사의 역무원이 승강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27분가량 홀로 기다려 22:15경 역무실에 도착하였고, 피고가 역업무 매뉴얼 등에 따라 장애인 안내를 하지 않은 과실로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떠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 사안임

○ 판단

- 이에 본안에서는 원심에 대한 판단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졌음
-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 철도여객사업, 철도의 역 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의 ○○서비스 지침, 역업무 매뉴얼 등은 휠체어 장애인의 열차 하차 시 미리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였음이 하차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역 운영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탑승한 열차 번호, 좌석, 도착예정시간 및 원고가 리프트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취지를 피고 측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열차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장애인 혼자서 열차에서 승하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승하차시에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인한 열차의 적정한 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자신에게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 주고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점, 피고 역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역업무 매뉴얼과 역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준수토록 하고 있는 점, 열차의 정차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서는 미리 역에 역무원 등이 대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 혼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추락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미리 승강장에 대기하여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그런데도 원고가 출발한 ○○역 안내에서 원고의 도착역인 ○○역에 원고를 위하여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적어도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느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 소속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6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판결, 일부 인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휠체어사용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 및 교통수단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화와 용역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편의제공

○ 사실관계

- 원고는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2017. 6. ○○경 ○○시내버스에 보행장애로 휠체어의 사용이 필요함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택시의 이용신청을 하였고, ○○시내버스는 원고를 이 사건 택시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하였으나,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7. ○○. 과 2017. 7. ○○.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자 ○○시내버스의 직원인 이 사건 택시의 승무원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택시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
- 사건 이후 원고는 ○○시내버스에 휠체어 이용에 어지럼증을 느끼는 애로사항을 밝히며 이 사건 택시의 승차 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시내버스는 2017. 10. ○○경 원고의 고객정보를 장애 3급에서 장애 2급으로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으나, ○○시내버스는 여전히 “원고가 뇌병변 장애 3급인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택시의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택시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2018. 1. ○○. 이후부터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택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에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 피고 시장에게 “원고는 교통약자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교통약자 및 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이 사건 택시 이용대상자임에도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택시의 이용을 불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인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과 도입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교통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이 있음

○ 청구취지

- 원고는 乙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 甲 주식회사가 원고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판단

- 이에 본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
- 법원은 특별교통수단인 이 사건 택시의 운행은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른 피고의 사무에 해당하고, ○○시내버스는 2005. 12. ○○.부터 피고에게 당해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2017. 7. ○○.부터 2019. 8. ○○.까지 업무 집행에 대한 과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에게도 이 사건 택시를 제공할 경우 그 배차 시간이 지연되어 이용대상자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이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택시의 이용대상자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이면서 그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 등은 이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택시 운행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인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택시이용의 거부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해 조항의 취지는, 그 적극적 조치에 있어 그 대상자의 범위가 일부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일 뿐, 적극적 조치의 대상자에 포함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적극적 조치의 실시를 거부하는 행위까지 위 조항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단, ○○시내버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시내버스에 이 사건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한 피고의 위탁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가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음

○ 결론

- 따라서 피고는 ○○시내버스가 “뇌병변 장애 3급이면서 휠체어를 실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택시의 제공을 거부한 기간이 약 25개월 정도인 점, ○○시내버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를 제공한 이후 병원, 복지관 등에 오가기 위하여 원고가 2019. 9. 경에는 5회, 2019. 10. 경에는 35회, 2019. 11. 경에는 22회에 걸쳐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시내버스가 이 사건 택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도 위와 같이 병원, 복지관 등으로 여러 차례 외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을 이동상의 어려움의 정도 및 ○○시내버스의 이 사건 택시 제공 거부의 경위 및 그 과실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음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no.1	
의결일자	2017. 7. 3.
사건번호	15진정06676000 외 13건
사건제목	고속·시외버스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교통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 사용
주요 논점	<p>* (교통행정기관)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017년 6월 기준 ○○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p> <p>* (교통사업자)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설치된 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필요</p> <p>*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자) 교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음</p>
비고	*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버스터미널 운영자별 판단구조의 차이
no.2	
의결일자	2011. 8. 22.
사건번호	10진정0371600,10진정0371605병합
사건제목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교통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 사용
주요 논점	<p>* 지하철 역사에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사안과 관련하여, ○○역 ○○호선·○○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역 ○○호선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호선·○○호선 환승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만 있을 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p>

no.3	
의결일자	2011. 7. 22.
사건번호	10진정0376701등 39건 병합
사건제목	점자블록 미설치 등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교통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미설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것이고, 교통행정기관(〇〇시)이 장애인의 이동 및 보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 버스노선도의 확대문자 미제공, 음성안내서비스 미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no.4	
의결일자	2010. 8. 9.
사건번호	10진정2457
사건제목	면허 응시 제한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의 1종 대형특수면허의 시험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전국 26개의 운전면허 시험장 중 1곳만을 기능시험장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차별행위 * 고가의 대형 및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배치하는 것이 전체 세출예산의 1%미만에 불과한 점,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에 소요되는 비중은 1.23%에 불과하는 점, 장애인의 대형면허응시율 감소세가 응시자들의 경제적부담, 시간적손실, 이동에 대한 불편등으로 인해 면허시험응시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국가기관인 점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부담 또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no.5	
의결일자	2010. 8. 9.
사건번호	09진차231·09진차238(병합)
사건제목	이동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 사용
주요 논점	<p>* ○○역 앞 지하도는 도로의 부속물로 이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지하도상가 접근 및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역 부근 200M 이내 횡단보도 및 입체횡단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p> <p>* ○○시장이 지하도상가 ○○번출구에 승강기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온 점, 지하도상가상인회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시설개조에 비용이 소요되긴 하나 피진정인은 장애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피진정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p>
비고	*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사방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로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작동되고 이로 인해 장애인은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2. 분야별

가.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체육

1) 판례

□ ○○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접근성 vs.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편의제공

○ 사건 개요

- 대형 영화상영관 사업자인 피고들이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등인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서 원고들에게 그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하였음

○ 판단

- (1) 간접차별 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⁹⁾
- (2)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하여, i)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수단제공의무와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i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규정 취지나 형식을 고려하면, 동법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iii)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에는 영화관람을 돕기 위한 시설적 측면의 수단이나 편의뿐만 아니라 영화 그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나 편의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iv) 피고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v) 따라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9) 간접차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i)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ii) 대형 영화관 사업자인 피고들이 배리어 프리 영화를 제한적으로 상영하는 외에는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영화상영관에서의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iii)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 상영장소, 상영시간에 관한 선택권의 범위, 장애인 아닌 사람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영화 관련 정보의 범위를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았음

- (3) 정당한 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¹⁰⁾, i) 피고들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규모 등에 비추어 장비나 기기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ii)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 (4)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음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no.1	
의결일자	2020. 2. 19.
사건번호	19진정0759500
사건제목	장애인주차구역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광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체장애
주요 논점	<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관광, 여행 등 활동 참여에 있어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 강구의 의무가 있음</p> <p>* ○○시장이 행사를 개최한 축제장소가 「장애인등편의법」, 「주차장법」, 「○○시 주차장 조례」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민간사업자와 달리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의 장애인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차별행위</p>

10) 오픈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사업자인 피고들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폐쇄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장비가 없는 점,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no.2	
의결일자	2018. 1. 30.
사건번호	16진정0227000
사건제목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피난안내 영상물이 비상구 등 위치 안내를 인식하기 어렵다거나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가 포함돼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등 충분한 자막과 수화가 필요한 점으로 보아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 * 수화삽입이나 필수적 정보에 대한 추가자막제공이 과도한 정보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영업규모를 감안하면 피난안내 영상물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움
no.3	
의결일자	2017.10.31.
사건번호	16진정0134300
사건제목	영화관 보호자 동행 요구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D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 하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영화관 이용을 제한 및 거부한 행위 * 피진정인이 부상을 우려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행하에 4D 영화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대형사고 발생시에 대비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no.4	
의결일자	2013. 5. 6.
사건번호	12진정0618000, 12진정0628700, 12진정0627500, 12진정0622600, 12진정0618500, 12진정0617500 (병합)
사건제목	체육시설 등 이용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체육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p>*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제1항등의 규정을 통해 체육활동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이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구, ○구시설관리공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함</p> <p>*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안내책자 등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비장애인 위주의 수업으로 운영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p> <p>* 다만 건물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편의미제공의 사항은 대체수단으로 인적 서비스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까지는 이르지 않음</p>
비고	* 장애인등편의법상 의무설치사항에 해당되는 편의시설이 아님에도 이는 이미 제공되었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해석
no.5	
의결일자	2013. 5. 2.
사건번호	12진정0617800·12진정0618100·12진정0630700(병합)
사건제목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육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p>*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문화시설로 지방공기업인 ○○구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레포츠타운, ○○스포츠텐터, ○○구민체육관이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블록 설치, 보조인력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p>
no.6	
의결일자	2013. 5. 2.
사건번호	12진정0618800
사건제목	보조인력 미배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p>*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등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예산문제로 인해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p> <p>*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에 맞는 새로운 강좌의 개설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피진정기관이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아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영화상영시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음</p>
비고	<p>* 피진정기관이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위치에 있지 않아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영화상영 시 화면해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p>

no.7

의결일자	2013. 4. 3.
사건번호	12진정0643900·12진정0656700·12진정0657700(병합)
사건제목	수화통역 미제공 및 보조인력 미배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체육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주요 논점	<p>* ○○구 및 ○○구도시관리공단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보조인력의 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p>

no.8

의결일자	2013. 4. 3.
사건번호	12진정0617700,12진정0618900(병합)
사건제목	참여 프로그램 미운영, 점자 및 음성변환 바코드 자료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p>* ○○구 및 ○○구도시관리공단이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p>

no.9	
의결일자	2013. 4. 3.
사건번호	12진정0636400
사건제목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으로 2012. 4. 11.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 예산부족의 문제로 점자안내책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임
no.10	
의결일자	2013. 12. 13.
사건번호	13진정0192700
사건제목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 사용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도서관에 경사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 벽과 슬래브의 해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출입구 옆 외부에 2층으로 연결되는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아 피진정도서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음 * 피진정도서관의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은 것에는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음 * 물리적 변경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비고	* 시설의 물리적 변경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나. 교육

1) 판례

□ ○○지법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판결, 인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험시간 연장 등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편의제공

○ 사실관계

- 원고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2014. 1. 23. ○○시가 설립한 직업교육 훈련기관인 ○○기술교육원의 ○○과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 및 면접에 응시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선발과정에서 불합격시킨 사실이 있음

○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면접시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선발과정에서 불합격시켰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차별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임

○ 판단

- 이에 본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불합격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
- 법원은 원고가 해당 선발과정에 지원하면서 ○○기술교육원에 직접 전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지원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 소집일에 동석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의 장애사실을 알렸음에도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안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으며, 면접 중 배우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원고가 면접시간의 조

정 및 배우자 동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면접관의 질문을 배우자가 필답으로 응시자에게 전하고 응시자 또한 필답으로 답하게 하여 원고에게 문자통역, 시험 시간 연장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형식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별행위가 원고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불합격한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발과정에서 원고를 불합격시킨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음

○ 결론

- 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별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차별행위의 성격 및 정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음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no.1	
의결일자	2018. 8. 10.
사건번호	18진정0327200
사건제목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리나라 등록장애 유형 외 (기면증)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면증 수험생(법정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시험시간 연장 등)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편의제공 의무 위반행위 * 장기치료 및 약물복용에도 완치가 어렵고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장애에 해당함 * 이에 ○○시 교육감, 교육부장관이 기면증 수험생에게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조건을 부여하는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no.2	
의결일자	2014.8.20.
사건번호	13진정0876000
사건제목	승강기 미설치 등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뇌병변
주요 논점	<p>* ○○대학교가 ○○관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 식당과 동아리방을 배치하고 재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그 접근수단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만 설치하고 피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교내활동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피해자 평등권 침해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차별행위</p> <p>* 피진정인은 건물의 노후화등을 이유로 승강기 설치가 곤란함을 주장하나, 참고인 의견에 따르면 최대한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강기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물의 구조적 위험성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상으로도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p> <p>* 피진정인은 ○○관의 승강기 설치에대한 대안으로, 신축되는 강의동에 ○○학과를 우선적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관을 주 강의실로 사용하게 되는 타학과 재학 장애학생이나 입학예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므로 근본적인 구제조치로 보기 어려움</p>
no.3	
의결일자	2012.6.13.
사건번호	10진정0175100외 2건
사건제목	승강기 미설치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장애 > 휠체어 사용
주요 논점	<p>* ○○대학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대학과 ○○대학 시설물 접근에 있어 승강기 등 별도의 설비 및 이동수단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학생이 해당 건물 2층 이상에 위치한 각 교육 관련 시설을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권리를 제한하는바,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서 교육 기회의 제한 및 배제에 해당하는 차별행위</p> <p>* 피진정대학교는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에게 가장 편리한 이동설비인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건물들에 승강기설치는 단기적으로 이행이 어려우며 재정 및 기타 여건이 확보될 경우 추진을 검토할 예정임을 주장하였으나, 단기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해당 교육시설의 건물 중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센터 또는 향후 입학할 수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실험실 습실 등을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 1층이나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로의 이전 및 재배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함</p>

no.4	
의결일자	2011. 1. 6.
사건번호	09진차1175
사건제목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한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육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주요 논점	<p>* 피진정인1 소유의 청소년수련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비록 자신이 직접 운영 또는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무 부담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p> <p>* 피진정인2가 운영하는 ○○ 수영교실의 경우, 수영강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수영강사 1인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강습 인원의 문제, 현재까지 어떠한 추가등록도 받아온 사실이 없으며, 대체적 존재로서 일반수영강습반의 등록이 가능한 점등을 고려하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려움</p>

다. 노동

no.1	
의결일자	2017. 4. 3.
사건번호	16진정0764100
사건제목	보조공학기기 등 미지원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체장애
주요 논점	<p>* 장애인 공무원인 진정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p> <p>* 모든 교육공무원 즉,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6항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 또한 교육감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인 진정인의 임용권자는 피진정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p> <p>* 장애인교육공무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운용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면할 수 없음</p>

no.2	
의결일자	2015. 8 20.
사건번호	14진정0632700
사건제목	법정휴가일수 미보장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체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권은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헌재 1991. 6. 3. 89헌마204),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학교의 장이 소속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학교공헌도 항목을 포함시키고, 사용한 휴가 합산일이 5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평가하는 행위는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보건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여성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학교장은 교원의 휴식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였어야 했음에도 법정휴가일수에 훨씬 못미치는 5일의 휴가일수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는 교원의 휴식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
비고	* 다만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이 사건 이후 퇴직을 하였고, 「2015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에서는 휴가사용일수에 대한 평가항목이 삭제되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no.3	
의결일자	2015. 8 20.
사건번호	15진정0627300
사건제목	공무원 시험 편의제공 거부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뇌병변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으로 필기를 하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이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시험과목 중 회계학 과목의 메모대필 요청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 * 7급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의 목적은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활용(계산)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지 응시자의 암산능력이나 필기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메모대필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필자의 지적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응시로 보기 어려움 * 통상 본인이 직접 메모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할 수 없고, 메모대필자의 문제풀이 개입가능성은 사전교육등을 통해 차단이 가능하므로 메모대필 불허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no.4	
의결일자	2010.4.9.
사건번호	09진차490
사건제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산업재해 판정 장애인
주요 논점	<p>*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즉,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 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추정이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단순히 진정인의 장해급호만을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p> <p>* 다만,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절차와 관련된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미리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체협약서」의 내용에서도 징계와 관련해서만 사전 통보 의무 및 소명 기회 부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직권면직 결정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p>
비고	* 산업재해(장해등급 2급5호) 장애인

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

1) 헌법재판소 결정례

□ 2020. 10. 29. 2016헌마86결정, 기각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체장애 휠체어사용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 및 교통수단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화와 용역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편의제공

○ 사실관계

-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3급 지적장애인으로, 2015. 7. 경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였으나, 신체장애인이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아 기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청구취지

-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에서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도록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2015. 7. 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특수제작 이륜자동차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음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임

○ 판단

- 이에 본안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행정청의 부작위 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됨
- 먼저, 재판관 5인은 제기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규정에 구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이고 판단하였음
- 이와 같은 위헌판단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의 규율 내용과 취지, 이를 이어받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와 제19조 제6항, 제7항과 운전면허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3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운전면허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신청·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공단이 운전면허시험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자에게 차량제공 급부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을 위해 기능시험용 차량이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게 관련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

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같은 법 제19조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신체장애인의 자립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단지 버스·철도·선박·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득의 기회 역시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하는바, 신체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자동차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장애인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와 그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과정을 형성하는 것은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초가 되고,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8항이 같은 조 제7항의 적용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이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정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실시하였음
-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함은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므로 살펴보건대, ○○공단이 이러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바이나, ○○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당연히 제공하면서 신체장애인에게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신체장애인 사이에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이며,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2020년도 총 지출예산 합계 3,063억 4,664만 1,000원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에 관한 지출예산 합계 284억 4,018만 4,000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에게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이 ○○공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예산 제약을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 두 번째 정당화 사유로 피청구인은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고,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나 장애인의 취업 지원과의 관련성이 적으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체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자동차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장애인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와 그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과정을 형성하는 것은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청구인은 사실상 기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함으로써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초를 갖추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음
- 세 번째 정당화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기능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청구인이 소유하거나 그가 타고 온 차를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나, 자신의 차량이 없는 경우 또는 자신의 차량이 있더라도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는 한 무면허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를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혜택만으로 신체장애인에게 기능시험 응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실시하였음
- 반면, 재판관 4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 및 법률 해석상 도출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살피건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부분에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이용 등과 같은 구체적 생활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법 제19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신청, 응시, 합격하는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

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규율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6항, 제7항에서 정한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8항의 단계적 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출장시험 요청에 대한 지원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이 사건 부작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음

- 또한,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교통법령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해당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더 나아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정하는 내용만으로 개별 응시생의 장애 정도에 맞춘 특수제작·승인차를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할 작위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6항에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과정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였음이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은 국가의 정책결정이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존중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억제하고 응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장애의 정도에 적합한 시험용 차량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예측과 판단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법령상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하였음

○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재판관 5인의 의견이나, 이는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음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no.1	
의결일자	2020. 9. 1.
사건번호	20진정0242500
사건제목	점자투표용지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법·행정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정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행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아무 어려움없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기관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중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으나(이 사건의 경우 ○○광역시 ○○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시행되는 선거에는 시각장애선거인의 거소투표시 점자투표용지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no.2	
의결일자	2020. 7. 27.
사건번호	19진정0448400
사건제목	점자 및 음성변환용코드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법·행정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사소통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의 특성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낸점은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 *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권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진정인인 ○○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no.3	
의결일자	2019. 9. 6.
사건번호	17진정0270800
사건제목	특수투표용지 등 편의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이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시각장애인이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구 및 보조인, 이동편의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 * 장애인이 공직선거과정에서 참정권을 보장받고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 국제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는 국가에 의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임 * 투표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미리 요청하도록 사전공지하는 방법 등으로 대략의 소요수량과 편의제공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촉박한 경선일정으로 인해 특수투표용지등을 제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이동편의제공의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제공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no.4	
의결일자	2012. 8. 22.
사건번호	11진정0699900
사건제목	수화통역 미제공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법·행정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주요 논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주관기관은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의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 * 실기시험 응시에 있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수험자는 수험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수험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필담을 통한 의사소통은 구술에 의한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시험시간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 *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위촉할 수 없다는 주장, 소요비용에 대한 주장은 수화통역사를 위촉하지 못할 현저히 곤란한 사정, 과도한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진정기관의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상 '수화통역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혜적 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정당한편의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기관의 시혜적 행위가 아니라 의무사항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자체의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에 대해 수화통역사 위촉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 「장애인권리협약」 내용근거 제시

마. 금융·보험¹¹⁾ 및 상거래와 재화·용역 일반

no.1	
의결일자	2017.12. 1.
사건번호	16진정0962400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뇌병변

11) 금융·보험 영역과 관련하여 인용결정된 사건들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나, 크게 금융·보험 영역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결정례들을 수록함

주요 논점	*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인불명의 뇌성마비인 경우 일상생활 기능 수행의 독립성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의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의의 의견을 구한 사실이 없어 보험인수와 관련한 내부 심사기준조차 따르지 않은 점, 진정인의 보험 가입 신청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심사와 판단을 하지 않고, 진정인의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 등급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지 진정인에게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생활 기능 수행을 못할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
no.2	
의결일자	2014.11.17.
사건번호	14진정0013000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체장애
주요 논점	* 피진정 보험사는 '절단 인수심사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보험인수심사기준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는 것이 보험가입 거절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임
no.3	
의결일자	2013. 8. 21.
사건번호	13진정0388500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장애
주요 논점	* 진정인의 보험인수심사에 있어 진정인의 현재 장애 정도 및 상태, 건강,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검토 없이 진정인이 고지한 장애유형 및 정신과 처방약 복용만을 근거로 전화상담 과정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한 것,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 중이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

no.4	
의결일자	2012. 7. 18.
사건번호	12진정0222500
사건제목	보증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주요 논점	* 장애등급 외에 진정한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 상법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의 보험가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
비고	*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 신분증 요구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지 존재
no.5	
의결일자	2011.3. 8.
사건번호	10진정0377600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장애
주요 논점	* ○○보험회사가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고, 피해자를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간주하여 해당 보험청약건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no.6	
의결일자	2011. 6. 30
사건번호	10진정0231300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주요 논점	*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절대사절”로 처리하였을 뿐, 장애등급 외에 진정한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상법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가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no.7	
의결일자	2011. 4. 26.
사건번호	10진정0736800
사건제목	여행자보험가입거부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장애
주요 논점	<p>*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장애등급이 지적장애 3급으로서 F70 '경도 정신지연'에 해당했음에도 학교 측이 제출한 학생 명단에 피해자의 장애유형이 '발달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발달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발달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발달장애(F80~F89)코드 중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 개별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과적 질병으로 보아 피해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p>
no.8	
의결일자	2010. 9. 10.
사건번호	09진차1552·1554·1556·1557·1562·1565(병합)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뇌병변
주요 논점	<p>*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보험인수 심사에 앞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파악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을 위험성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았으며, 이 지능지수 수치를 그대로 피진정인의 보험인수 기준인 URS(Underwriting Reference System) 매뉴얼에 적용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환경 및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p> <p>* URS 매뉴얼 또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보험사고 개연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p> <p>*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원천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도록 보험상품을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p>
비고	* 호주인권위원회의 보험 및 연금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

no.9	
의결일자	2010. 10. 20.
사건번호	09진차1563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장애
주요 논점	<p>* ○○손해보험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오인하여 피해자의 장애 상태 등을 평가하였고, 피해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보험약관상 정신표면책 조건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p>
no.10	
의결일자	2010. 10. 20.
사건번호	09진차1560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장애
주요 논점	<p>*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10년 전 장애검진서를 근거로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하고, 단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p> <p>* 피진정 보험회사가 가입하여 있는 생명보험협회의 「장애인보험계약인수 모범규준」의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인수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p>
no.11	
의결일자	2010. 10. 20.
사건번호	09진차1555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장애
주요 논점	<p>*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피해자를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간주하여 해당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p>

no.12	
의결일자	2009. 8. 7.
사건번호	08진차886
사건제목	보험가입거절
접근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보험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적장애
주요 논점	*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만 의존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1. 기본 접근 영역별

가. 정보통신·의사소통

□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국내 표준현황¹²⁾

- 웹 및 전자문서 접근성을 보장하는 표준 및 지침은 해외의 표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있는바, 국내의 표준도 해외와 비슷하게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표준을 찾아보긴 힘들지만 장애인의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삼아 제작됨.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는 웹 접근성 분야로, 웹 접근성에 관련된 표준에는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이 있음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 규격을 제공하는 한편, 또한 보조기기를 통해 웹 콘텐츠를 접근할 때에도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침을 제공함. W3C의 WCAG 2.0: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을 참조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정의하였고,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의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4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됨
 -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은 장애인과 노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 기술적 불편을 해소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의 구축 방법을 규정하였고, 웹 페이지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본 표준은 3개의 원칙과 26개의 지침으로 구성되며,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유사한 지침을 제공함. 다만,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이 전반적인 웹 접근성에 대한 지침 규격을 제공했다면,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은 노인이라는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노인 또는 저시력인에 초점을 맞춘 세부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침에 중요도와 해당 지침이 필요한 장애 유형, 장애 유형별 지침에 대

12) 임순범, 박주현, ‘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정보 접근성 표준 현황’, TTA저널 193호, 2021. 01/02 월호, 67-72면.

한 추가설명 및 관련 표준을 기술하고 있음

- 해외의 웹 접근성 기술 및 표준, 전자책 표준이 발전한 만큼 국내의 전자책 표준도 이에 발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문서와 관련된 대표적 표준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안하여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발표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 제1부 저작 지침과 제2부 인증지침이 있음
- 독서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는 2016년에 제정되어 2020년 6월 개정되었는데, 이 표준은 W3C에서 제정한 전자책 접근성 국제표준(EPUB Accessibility 1.0), IDPF 및 DIAGRAM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국내에서 발간되는 다양한 전자책 형식을 추가 반영하였음

〈한국형 웹접근성 지침과 장애인 웹콘텐츠 사용성 지침의 세부항목 비교〉

원칙	지침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2.1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인식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 텍스트 •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영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폰트 크기 조절 • 중요한 기능의 재확인 • 적절한 홈페이지 제공 • 고해상도 이미지 제공 • 인식 가능한 링크 및 버튼 제공 • 하이퍼텍스트 표현 • 항목의 배치
운영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 장치 접근성 • 충분한 시간 제공 • 광과민성 발작 예방 • 쉬운 내비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우 스크롤 방지 • 무의미한 경우 페이지 방지 • 대화 상자 초기값 설정 • 서식 계층 버튼 위치 • 상하 스크롤 방지 • 구성 요소 배치 • 동적 메뉴 배제 • 롤 오버 기능 배제 • 홈페이지 링크 제공 • 항목 구분 • 입력 단계 구분
이해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독성 • 예측 가능성 • 콘텐츠의 논리성 • 입력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 유지 • 간결한 문장 제공 • 정보 검색어 입력 방법 • 용도에 맞는 테이블 사용 • 페이지 구조 제공 • 특수 기호 사용 제한 • 평이한 용어 사용 • 검색 결과 제공

□ 청각장애인 재난안전을 위한 실시간 수어 안내 서비스¹³⁾

-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태풍, 홍수,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안내방송이나 재난문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청각장애인은 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해 대피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문자언어(필답) 이해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전체의 26.9%에 달하며 사실상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청각장애인의 재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실시간 수어 영상 서비스를 실시함
 - 재난안내를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익숙한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즉각 변환하여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안내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국내 청각장애인 37만 명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재난문자를 실시간 수어 영상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됨
 - 이외에도, NIA는 (주)SR과 함께 ‘수어통’을 이용해 수서·동탄·지제역 등 주요 기차역에서 응급안내방송을 수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시범 운영중임. 장애인이 역사 내 화장실 등 전광판을 보지 못할 경우 안내방송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현장의 소리’를 지능정보기술로 해결한 성과로, 스마트폰에 수신된 문자를 앱이 자동으로 인식하여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변환 후 안내하는 방식임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¹⁴⁾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 제품 116종, 총 3,200대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주관하여 신청접수, 선정,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보급대상자는 소정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제품가격의 80~90%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3)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긴급재난문자, 언제 어디서든 수어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2020. 10. 21.
 14)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개최’, 보도자료, 2021. 5. 20.

- 해당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 보조기기센터에 신청하여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무상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음¹⁵⁾

□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 개발¹⁶⁾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부활동과 신체활동이 줄어든 만큼 집에 머무르는 장애인도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은 「같이게임, 가치게임, 자조모임」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과 같이 적합한 게임을 찾아보고, 게임보조 기기를 함께 개발함. 게임 접근성¹⁷⁾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도 훨씬 편리하게 가족,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게임접근성이 보장되어 장애인도 함께 게임을 하고 있음¹⁸⁾

□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¹⁹⁾

-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신청 제한기준 폐지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 개선과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화 등을 추진
 -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로 제작해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 대체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2021년 7월 1일부터 '3일 드림'²⁰⁾ 서비스를 시작함

15) '제주도, 장애인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 국민일보, 2021. 9. 26.

16)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 보조기기 함께 개발한다!', 보도자료, 2021. 4. 23.

17)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18) 특히 미국 크레이그병원(Craig Hospital)은 장애인과 함께 가장 적합한 게임 옵션과 게임보조기기를 찾아준다.

19)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보도자료, 2021. 10. 5.

□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 ‘열린관광지’는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72개소를 조성했고, 현재 20개소는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열린관광지’는 2021년 5월 세계관광기구의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 개발’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얻음

□ 청각장애인의 병원출입을 돕는 아바타 수어 개발²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디지털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지원하면서 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음
-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지원하는 감성표현 서비스 개발』과제 일환으로 개발된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바타 수어 기술이 국립대학병원에 시범 도입됨으로써 안전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는 물론, 청각장애인들이 병원을 갈 때 불편을 덜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충남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2021년 4월부터 병원 입구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아바타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어를 하는 캐릭터로 방역 관련 문진 과정과 확인 사항을 쉽게 전달하는 방식임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기관의 방역 관리 절차와 출입절차가 복잡해졌으나, 디지털 정보 이용에 취약한 장애인들은 기존 키오스크만으로는 의사소통 지원체계가 부족해 출입에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고 애니메이션으로 수어를 전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얼굴 표정 표현 총 22종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20) 신청 도서를 스캔한 자료를 편집하고 교정한 후 디지털음성도서 국제표준형식(DAISY)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청각장애인 병원출입 돕는 아바타 수어 개발’, 보도자료, 2021. 4. 19.

- 기존에도 확진자 정보, 감염병 대응 정부 대책, 백신 접종 안내 등 관련 정보가 키오스크,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되었지만,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유형에 맞는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출입 절차에 필요한 수어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새로 제작하고 입술을 당기는 모습, 얼굴을 좌우로 기울이는 모습 등으로 작년보다 더욱 다양한 표정을 구사²²⁾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특히 수어 애니메이션 영상은 한국농아인협회 감수를 거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만들
- 병원 출입뿐 아니라 진료 과정이나 공공시설 민원 안내, 온라인 학습시스템 등 생활 정보와 의사소통에도 아바타 수어 기술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VOD(Video On Demand), OTT(Over The Top) 등 미디어 콘텐츠 전반을 대상으로 자막, 수어 번역 대상 분야를 확대할 예정임

□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미디어기술 지원²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협업해온 ‘AI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²⁴⁾회를 개최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개발한 ‘음성-자막변환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이 시연함
- ‘음성-자막 자동변환 기술’은 인공지능(AI)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 후 화면에 표시해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감상할 때 자막을 지원하는 기술임
-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은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① 청각장애인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바타 수어로 음성·자막을 변환하여 제공하는 기술과 ② 다양한 감정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화면해설방송기술로 구성되어 있음

22) 머리(head), 눈썹(eyebrow), 눈(eye), 입(Mouth), 뺨(Cheeks), 몸통(Body) 등 22개 비수지 신호 정의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미디어기술, 장애인의 눈과 귀를 열어준다 - 과기정통부·방통위,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시연 -, 보도자료, 2021. 4. 20.

24) 본 행사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개발한 ‘음성-자막변환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감성표현 서비스’ 기술이 시연되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도입 및 확대²⁵⁾

- (금융위원회) 시각장애인이 텔레·인터넷뱅킹, 인증서발급 등 금융거래 이용시 생성된 비밀번호를 음성으로 알려 주는 음성OTP(One Time Password)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직접 배송, 대리발급, 유선으로 사전에 음성OTP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된 날짜에 가까운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음성OTP 신청·발급과정 전반에 걸쳐 금융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²⁶⁾

□ 장애인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의향상²⁷⁾

- 코로나19 이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20.11.10. 개정, '21.7.1. 시행)
-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선택규격 2종(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하여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됨.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m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25) 금융위원회,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One Time Password)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관행과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8. 21.

26) - (발급기간 단축) 본점-영업점간 업무절차 간소화(예, 전산망을 통한 수요 발주 및 당일 처리 등) 등을 통해 배송기간을 적극적으로 단축(현행) 1~2주 소요 → (개선) 1~2 일내 배송.

- (사전신청제 도입) 시각장애인이 유선으로 사전에 음성OTP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된 날짜에 가까운 영업점에서 수령

- (직접 배송) 영업점을 통한 신청 후 배달증명 방식으로 음성OTP를 배송하여 시각장애인 이 직접 수령

- (대리발급) 시각장애인의 대리인(인감날인 위임장 등 적법한 대리 필요)을 통한 음성OTP 대리 발급 허용(다만, 신규발급시 제외)

27) 행정안전부,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보도자료, 2020. 11. 10.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5종)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7종)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화면확대기능, 휠체어사용자조작기능(1,220mm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3종) 화면확대기능, 휠체어탄사용자 조작, 촉각(점자)모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2종) 촉각(점자)모니터, 음성인식기능

나. 시설물 접근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서울시)²⁸⁾

- 서울시에서는 시대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등을 위한 조례 정비 및 법률 제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임. 복지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등의 정책을 추진²⁹⁾하여 왔으며,

28) 서울특별시 문화본부(디자인정책과), -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2020. 8.

29) 서울시의 정책 추진경과 ('10 ~ '20. 6)

- 복지시설 24종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10 ~ '13년
 - 기 개발된 24종에 대해 매년 6종씩 지침 현행화(고도화) 추진중
- 57개 공공건축물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10년 ~
-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전시회(6회 22,295명) : '12년 ~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대내·외 인식확산 추진 : '15년 ~
 - 성동구 보건소 외 공공건축물 2개소, 동대문구 화목경로당 외 공공공간 3개소 조성
 - 인성·창의교육 : 교육청과 연계한 정규교육과정으로 초등학생 7,561명, 교사 275명 참여
 - 복지시설 UD 교육과정 : 서울시·구 직원 대상 인재개발원 직무 교육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및 평가 체계 개발 : '16~'17년
 -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관련 법령·지침 15개를 종합, 단일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환경의 기본이 되는 가로, 건축물, 공원 등 3개 부문, 29개 세부항목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 : '16년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센터 설치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 ※ 서울시 조례제정 이후 양천·마포·도봉·금천 등 자치구에서도 개별 조례 제정 시행중
- G밸리 UD 테스트베드 조성 : '18년~
 -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일대 UD 공공가로 조성,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등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18년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비전, 목표, 10대 원칙 제시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시범사업 운영 : '19년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강제적용 방안 건의(행감, 문광위) : '19년

'16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 이후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왔음

- 그러나 가이드 라인 준수(활용) 여부 등 관리 점검에 대한 행정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서울시의 각종 심의 및 제도 안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통합적으로 실행(작동)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전반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단계별 추진 체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행정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이를 확산하여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환경을 제공할 예정임

다. 이동 및 교통수단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³⁰⁾³¹⁾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9개 도(道)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³²⁾, '20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³³⁾는 전체인구(5,183만 명)의 약 29.7%인 1,540만 명(약 10명중 3명)으로 '19년에 비해 약 18.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동편의시설³⁴⁾의 기준 적합률 조사결과, 9개 도(道) 평균 기준 적합률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팀 신설(문화본부 조직개편) : '20년
 - 시의회 등 UD 전담팀 신설 촉구(시정질의 '17.8, 문광위 오한아 의원 요청 '19. 6)
- 30)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최근 5년간 7% 이상 상승 -', 보도자료, 2021. 6. 10.
- 31)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http://tmacs.kotsa.or.kr>)'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이동편의시설현황'에서 확인가능
- 32) 8개 특·광역시(세종 포함)와 9개도(제주 포함)에 대해 격년으로 표본 조사
 - < 조사 대상 >
 - 대상 : 9개 도(道) 지역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 교통수단 : 버스(4,531대), 철도차량(245량), 도시·광역철도(134량), 항공기(334대), 여객선(73척)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67개소), 철도역사(97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258개소), 공항(9개소), 여객선터미널(13개소), 버스정류장(437개소)
 - 도로(보행환경) : 주요 여객시설 출입구 반경 150m(456개소)
- 33)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 34) 장애인전용 화장실·휠체어 승강설비·점자블록 등

72.1%로, 지난 조사('18년)에 비해 2.1%p 증가³⁵⁾한 것으로 나타남. 대상별로는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6.5%, 여객시설 74.0%,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65.9%로 조사되었음.³⁶⁾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비교통약자, 교통약자 모두 버스, 도보이용(휠체어) 순이었으며,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의 상승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탑승을 위한 대기시간이 감소³⁷⁾되어 이동권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³⁸⁾

○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했으나,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보급 등 '사람'의 안전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대비하여 도로설계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로설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³⁹⁾을 마련함

- 특히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⁴⁰⁾

35) (도지역 기준적합률) ('16년) 67.3% → ('18년) 70.0% → ('20년) 72.1%

36) •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 철도(98.6%)>버스(88.4%)>도시·광역철도(86.6%)>항공기(73.7%)>여객선(35.4%)
 • (시설별 기준 적합률) 공항(88.3%)>도시·광역철도역사(87.4%)>철도역사(85.2%)>여객터미널(81.2%)>여객자동차터미널(67.1%)>버스정류장(34.6%)

37) 교통약자의 탑승 대기시간은 30분이내는 '20년 47.6%('18년 54.7% 대비 7.1%p 개선), 10분이내는 '20년 46.7%('18년 32.3% 대비 14.4%p 개선)

38) 국토교통부,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연구 추진... 안전성·편리성 강화, 교통사고 예방 기대', 보도자료, 2020. 3. 23.

39) 도로설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반영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③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④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40)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전환

2. 분야별

가.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체육활동

□ 장애인의 관광 향유권 향상⁴¹⁾

- 서울시에서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경복궁 점·목자 촉각그림 관광카드’를 개발하고, ‘경복궁 점·목자 촉각그림 관광카드’은 경복궁 내 경회루, 근정전 등을 촉각으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 해설 입체카드로써 점·목자로 설명도 표기함
 -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내 엘리베이터 앞 바닥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 우선탑승을 유도하는 안내사인을 그려 넣는 등 서울시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로 7가지 ‘공공디자인’을 개발하여 시설물, 시각매체,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완성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임
 - 이번에 개발한 공공디자인은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장애인 관광 향유권, 심리 안정, 배려 문화와 같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공공디자인으로 의미 있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

□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실감콘텐츠 제공⁴²⁾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의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내 공간을 활용해 문화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 교육·놀이·관광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상상누림터’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실감 기술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 우선 2021년 3월 31일 경남 특수교육원을 시작으로 충북 특수교육원, 광주 특수교육지원센터, 화성·오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용자와 교사의 수요를

41) 서울문화투데이, ‘시각장애인에 촉각으로 문화유산 해설... 서울시, 스타트업과 7종 공공디자인 개발’,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02>, 2020. 12. 15.

4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를 넘어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전국 4곳에 장애인 대상 실감 콘텐츠 체험관 ‘상상누림터’ 조성 -’, 보도자료, 2021. 3. 30.

반영해 각 특수교육시설마다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함

-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코딩⁴³⁾ 로봇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를 배우거나 증강현실(AR) 직업 체험, 진도아리랑 등을 가상현실(VR)로 구현해 낸 전통문화공연, 놀이 활동 확대를 위한 실감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음
- ‘상상누림터’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확한 지점을 누르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다른 실감콘텐츠에 비해 그 조작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하였음
-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이동 없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 책상을 배치하고,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음
- 문체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실감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상상누림터’ 조성을 확대하고 전국 각지의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를 개발·도입해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등을 꾸준히 개발할 예정임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전시해설영상 제작⁴⁴⁾

-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전시가 축소되고 도슨트가 들려주는 전시해설도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이 청각장애인들의 박물관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유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립서울농학교와 수어 전시해설 영상 공동 제작을 위한 ‘눈으로 듣는 한양’ 프로젝트를 시도하였음
- 이 프로젝트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영상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청각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함께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어해설영상과는 차별화됨.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만드는 첫 번째 수어해설영상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임. 기존에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수어해설은 보통

43) 컴퓨터용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44) 문화뉴스, ‘서울역사박물관X국립서울농학교 수어 전시해설영상 제작... 문화시설의 문턱 낮춰’,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246>, 2021. 4. 9.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전문 수어통역사가 해설하는 방식임매월 1회 워크숍을 통해 전시 내용을 학습하고, 수어해설영상을 통해 소개할 유물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나리오 작성, 수어 번역, 수어 해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

- 이 프로젝트는 국립서울농학교의 역사 교과 및 청각장애 학생 진로체험 과정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역사학습과 미래 직업탐색의 기회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교육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박물관과 특수학교 간 협력 교육네트워크 사례는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

□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청각장애인 불이익 해소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⁴⁵⁾

○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 발생(「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권고사항)하는 등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특히 공인영어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였음. 그동안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되어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청각장애인⁴⁶⁾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⁴⁷⁾을 마련함

45)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였습니 다-, 보도자료, 2021. 9. 1.

46)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

47)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 타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 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산출

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

□ 장애인증명서 전자발급 서비스 실시⁴⁸⁾

-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증명서⁴⁹⁾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⁵⁰⁾한 총 23종을 2020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하였음
- 해당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⁵¹⁾ 국·공립 시설이나 영화관⁵²⁾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라. 건강 및 보건으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기존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음⁵³⁾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인력기준을 종전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직접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어 통역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장애인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

48)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추가 발급 -’, 보도자료, 2020. 11. 13.

49)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50) 추가된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51)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고궁·왕릉, 국립공원, 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 등

52) 전국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영화관

53) 시행 2021. 4. 28. 보건복지부령 제795호, 2021. 4. 28., 일부개정

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임⁵⁴⁾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개정) 마련⁵⁵⁾

○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하여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마련함

-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하여 장애인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매뉴얼의 시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먼저,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하여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20. 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⁵⁶⁾반영하였음. 또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개정하였음. 마지막으로, 최근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포함

54)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도모-, 보도자료, 2021. 2. 8.

55)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 개정판 마련’, 보도자료, 2021. 4. 20.

56)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예방 방안, 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 혈액투석 지원 안내 등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신규 목차 비교〉

1판 목차	2판 목차
CHAPTER I. 개요 1. 장애인의 고려 필요성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참고]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CHAPTER II. 장애인대상 고려사항 1.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2. 이동서비스 지원 3.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4. 돌봄 공백 방지 5.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CHAPTER I. 개요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2. 감염병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3. 장애인 대상 고려사항 4. WHO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고려사항
(신 설)	CHAPTER II. <u>코로나19 대응단계별 세부 고려사항</u> 1. 개요 2. 지자체 세부 고려사항 3. 관련 주요기관 세부 고려사항
CHAPTER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대응 지침 2. 장애인 거주시설 대응 지침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지침	CHAPTER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1.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대응개요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공통대응 지침 3. 일상생활 지원 4. 건강 및 의료 지원 5. 그 밖의 지원
참고. 의사소통 지원 등 배포용 자료 1.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배포용) 2.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매뉴얼	부록.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등 1.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3판, 배포용) 2.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매뉴얼 3.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코로나19 대응 안내 4.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사례 및 추진현황

□ 비대면 조사를 통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⁵⁷⁾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처음 도입함

- 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⁵⁸⁾⁵⁹⁾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국민연금공단)하

57)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 -’, 보도자료, 2021. 4. 29.

여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무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가 가능해져 대면 조사로 인한 장애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조사 기간 단축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비대면 종합조사 대상은 장애 유형별 특성, 조사항목방식, 조사 적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장애등록심사자료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신청자의 장애 상태를 사전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개발한 비대면 종합조사 매뉴얼을 적용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임
- 장애등록심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신청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화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장애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임⁶⁰⁾

58) 장애로 인해 거동이 곤란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등 보조기기를 무료로 제공

59) -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복지 증진 도모

- (근거법령)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 (사업내용)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34개 품목 무료 교부

장애유형	지급 품목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전동침대, 피터시트 등 25개 품목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등 5개 품목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4개 품목

- (교부절차) 주민센터 등 신청 → 공단 종합조사 → 교부대상자 결정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 → 적합한 보조기기 교부

(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종합조사)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장애유형에 대해 비대면 종합조사도 병행하여 추진

- (상담·평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연계 및 의뢰

60)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종합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063-713-6033, 60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⁶¹⁾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고비용·저수익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임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지정 기준〉

지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진료실, 처치실, 진통실, 분만/수술실, 회복실, 입원실, 수유실 등 필수 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 세부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장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체중계, 진찰대 등 10개 필수 장비(선정 후 구매)
인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의(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 간호사 6명, 직종별(임상병리사, 행정, 방사선, 원무, 약무) 1명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 제공 필요 내용과 제공 방안 상담 및 합리적 편의 제공 •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및 웹사이트 운영

- 장애 친화적인 필수 주요 시설 및 편의시설, 장비 등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61)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 ‘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 보도자료, 2021. 7. 28.

제4절 분석

1. 국내의 정당한 편의제공 법령 관련 쟁점

가.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의 관계

- 국내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명시하고 있는 판례들에서도,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혼재 문제가 나타남**
 - 사전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의 접근성 의무와, 사후적이며 개별적인 방식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자체의 개념적 차이점을 고려할 때, 이 둘을 구분하지 않거나 혹은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당한 편의’의 용어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시설물 이용 영역에서의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 내용 형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동·교통수단 영역의 경우에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위임하고 있음
 - 그런데,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 본 CRPD 제6호 논평(2018)에 따른 접근성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의 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편의제공 보다는 접근성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접근성 가운데서도 **접근성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임
 - 실질적으로 접근성 내지는, 접근성의 최소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규율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법리에 따라 사안을 판단한다면, 뒤에서 상술할 내용과 같이, 장애인 접근성의 완전한 보장의 목표로 다가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의 예시

-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각 조항들이 이를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음
 -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를 예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거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비해 두터운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판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음
 - 앞서,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CRPD 제6호 논평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 편의제공이 의무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거절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접근성 의무와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었음.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제공 당사자에게 발생가능한 과도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부담에 의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요청이 제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이는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 그 법적, 실질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요청된다는 뜻으로 새겨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요비용이나 의무자의 부담능력, 편의제공으로 인한 영향, 각종 지원제도 등을 통한 이용 가능 자원의 유무 또는 특징 등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가 문제되며(오욱찬 외, 2018).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유형적 세분화에 의한 고려가 필요함**

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범위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등 편의법 등의 법령에서는 시기나 대상의 종류, 규모 등에 있어 단계적 적용범위를 나누어 규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법 제정 무렵 단계적 달성 목표로 예정되었던 현행 적용범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선 접근성 보장 효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사례의 이해

가. 사례수와 유형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 거부와 관련하여 법원을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다투어 인용되기에 이른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장애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자와의 교섭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법정에서 인용 또는 기각까지 진행되기보다는, 개별적인 당사자들간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해당 사례에서의 문제 해소에 그치는 것이 사례수가 많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됨
 - 특히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경우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일부를 공개하고 있어서 본 보고서의 경우에도 공개된 인용사례를 분석한 것이며 진정사건의 조사 등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의무당사자의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제 실익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짐에 따라 공개 및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 기반한 것임
 - 본 보고서의 제5장 및 6장에서 후술할 내용과 같이, 개별 구제된 케이스들을 포함한 과거 실제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 개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져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사하는 자료이기도 함
- 법원을 통해서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건들의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였음. 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한 평등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와 진정 등의 방식을 통한 구제신청 제도가, 접근성 문제에 관한 장애인들의 사법구제절차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15개 법정등록 장애범주와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사례가 비교적 높은 빈도로 축적된 유형으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통신과 관련한 사례, 휠체어사용자인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접근영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다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언급하고 있는 국내의 판례 및 결정례들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 방식의 집단적vs. 개별적, 사전적vs.사후적 여부에 따른 엄밀한 개념적 구분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각 접근 영역에 따른 장애인의 활동 참여와 불이익 제거, 이를 통한 차별 해당 여부의 판단 내지는 그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유형별 대표사례 심층 분석

- 제2절에서 살펴 본 법원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들 가운데, 장애유형 및 접근영역별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하여 의미있는 논점을 제시하고 대표사례를 선별하여 해당 사례에 나타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주요 쟁점 및 판단 기준에 관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기로 함

□ ○○중앙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정당한 편의제공

- 앞서 문화·예술활동 분야의 사례로 다뤘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규에 나타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규정 취지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열거적으로 보아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협소하게 해석하게 될 경우의 한계를 극복하는 논리로서 기능함
- 앞서 제시한 쟁점과 관련하여, 법규에 나타난 정당한 편의의 규정 내용을 예시

적으로 보고 있는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로서 유의미함

- 이 사례에서 피고들이 영리 사업자로서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과도한 부담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이 아닌 민간의 영리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있는 사례라 볼 수 있음
- 본 사안에서 판례를 통해 실시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2장을 통해 논의의 기초로서 살핀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무엇인지의 논점과 관련해서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살펴 보아야 할 핵심 지점이 있으리라 생각됨. 특히 문화향유권을 이해함에 있어 본질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사례의 경우, 시설이용뿐 아니라 영화 그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을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보았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제공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제공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도로 화면해설의 내용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렇다면 무엇을 최소 필수적인 동등함을 갖춘 ‘정당한’ 편의제공이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영화에서 표상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접근성 조치 의무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물리적인 기준들은 비교적 세부적으로 수립되고 법령이나 지침, 매뉴얼 등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반면, 인적 영역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성, 적절성, 효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의 ‘정당성(합리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음⁶²⁾

62) 화면해설의 제공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성, 적절성, 효과성과 같은 ‘합리성’이 갖추어졌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20.6.12. 결정, 20진정0176200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서비스 영역
접근성 vs.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정당한 편의제공

- 앞서 정보통신·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던 사례로서,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피진정인을 상대로,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시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임을 주장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안임
- 공공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부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의 성격,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상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의 비용’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본 사안에서 진정인은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판단한 사례임
 -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 등에 대하여 보이스아이 등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접근성의 최소기준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됨. 정책적 개선 방안을 다루는 제5장에서 재차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사례에서도 바로 앞의 사례에서 제시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즉, 편의의 제공여부에 관한 논의를 넘어, 보이스아이로 제공되는 범위나 점자로 표현된 내용들이 어느 수준일 때 관련성, 적절성, 효과성을 갖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2020.11.24. 20진정0200800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각장애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접근성 vs.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정당한 편의제공

-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피진정인들이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대학 강좌를 온라인 동영상 교육의 방식으로 제공함에 있어 자막이나 수어통역 등 편의를 미제공한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임을 주장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안임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거부를 차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정당한 사유를 너무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의 목적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바로 위의 사례에서처럼 공공기관이 의무부담자인 경우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면책사유 판단 기준이 다루어졌음
 - 이 사례에서는,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기관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본질적이며’ ‘파괴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최신 결정례들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 있음. 적어도 의무부담자가 공공인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2017.7.3.결정 15진정0667600 외 13건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각장애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 및 교통수단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접근성 vs.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정당한 편의제공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들이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등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라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안임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교통행정기관인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이룬다고 판단하였음
 - 한편, 교통사업자인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설치된 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⁶³⁾
- 이 사안에서 교통행정기관이 적극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제기되었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당사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이며 사전적인 이동교통수단 관련 법제도를 통해 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상 접근성의 방식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임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 상용화 전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교통행정기관이 이미 보편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서 고려했어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도 이를 시행하도록 접근성의 기준으로 편입하였어야 했던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이처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 시외버스의 상용화 전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설치된 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은, ‘건축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 ‘접근성의 점진적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수

63) 한편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있으므로, 그동안 ‘즉각적 의무인 합리적 편의’가 개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힌 CRPD 제6호 논평(para.42)의 내용
 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제도의 중요한 의의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 2014.8.20. 결정 13진정0876000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뇌병변 장애 휠체어 사용자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물 접근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접근성 vs.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근성 + 편의제공

-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대학교 재학생인 진정인이 대학교 총장인 피진정인을 상
 대로, 지하1층 식당과 지상 4층 동아리방에 대한 접근수단으로 계단만 설치하
 고 진정인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행위가 교내활동에
 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행위임을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하였던 사안임
-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사전적·집단
 적·표준적 접근성 조치는 문화, 교육, 노동, 그밖의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영역
 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선결요소라 할 것임
 - 본 사건에서와 같이 시설물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성 조치 의무 내용은 장
 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규율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 건물 특성상 장애인등편의
 법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을 어긴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러한 피
 진정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미이행으로 말미암아 진정인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장애
 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당 건물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 사례에서의 구제 방식이 최적의 것인지에 관하여는 특히 시설물 기준 위
 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피진정인에게 조치 의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피진정인이 든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나 구제조치의 대안에 관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면하게 되는 불이익의 제거라는 목적과 제거에 관한 의무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음을 들어 이를 배제한 점에서, 각 분야의 접근성 보장의 기초로서의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의사소통에 대한 기본적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 2018.8.10. 결정 18진정0327200

장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면증 우리나라 등록장애유형 외
접근 영역	기본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쉬는 시간 연장, 수면 시 깨워 주기, 별도의 시험실 제공
	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
접근성 vs. 편의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편의제공

○ 기면증 수험생에 대해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임을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 대해 권고한 사안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치료 및 약물복용에도 완치가 어렵고,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보았으며, 이에, 교육부장관에 대해 기면증을 가진 대학 수험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쉬는 시간 연장, 수면 시 깨워 주기, 별도의 시험실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교육부장관에 대해 권고하였음
- 기면증의 경우 법정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⁶⁴⁾,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64) 이와 관련하여, CRPD 제6호 논평에서는 당사국이 협약 5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자 취해야 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로, 반차별법이 '정신사회적, 지적, 또는 감각 손상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장애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장애인 관련자는 물론 과거·현재·미래의 장애와 추정되는 장애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장애 포용적인 반차별법은 지정된 보호 대상 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장애는 폭넓은 손상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para.73.(b))고 제시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장애에 해당함. 법정 등록 장애유형 중심으로 각종 장애인복지제도가 형성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의 일반적인 인식 내지는 제도적 노력이 이러한 기반 위에 형성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제에서만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는 것은 불충분한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소결

- 접근성의 점진적 실현에 이르기까지 접근성 보장을 위해 기능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접근성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영역이거나 접근성 표준에서 대비하지 않은 범위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이 그 간극을 채우는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CRPD 제6호 논평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의 점진적 실현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 줌
- 접근성 최소기준 규정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에 따라 정당한 편의 내용을 규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접근성 조치 의무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및 이들간의 개념적 구분에 관한 CRPD 제6호 일반논평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 속성은 사전적이고 집단적인 것으로서 접근성 조치, 그중에서도 접근성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밝히면서 접근성 최소기준과 정당한 편의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법령상 나열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
 -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규정에 있어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파악할지 열거적인 것으로 파악할지에 관하여, 사안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사후적 요청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정을 예시적인 것

으로 파악하고 있는 최근의 하급심 판례 경향성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 하겠음. 그러나, 이처럼 현재의 규정 자체로도 법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무부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시적인 규정으로 하고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필요하고 적절한 조정이나 변경’ 등을 명시하는 안이 바람직함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판단 기준

- 최근의 판례들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거부에 대한 면책사유로서 과도한 부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영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최근의 국내 법령 및 결정례·정책의 분석 결과 사례는 정보통신·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웹접근성과 관련한 사례들은 해당 접근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기관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본질적이며 파괴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과도한 부담 판단 시 고려사항들로서, 기관의 성격, 업무범위, 예산 등이 제시되고 있는바, 그밖에도 **공적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장

해외의 경우

제4장 해외의 경우

제1절 법령

1. EU

- 유럽연합(EU)은 2020년 현재 27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연합체로서, 외교권 및 주권은 개별 회원국에게 있으며, 2009년 발효된 리스본조약을 근거로 현행 체제가 성립되어 당사국 간 합의에 기반한 EU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07년 3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2010년 12월에 비준하여 2011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장애차별과 관련한 주요 법령으로는 동등대우지침(Directive 2000/78/EC), 교통약자 이동권 특별지침(Directive 2001/85/EC), 시민의 이주 및 거주권 권리 지침(Directive 2004/38/EC) 등이 있음
- 동등대우지침(Directive 2000/78/EC)
 -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동등 대우 원칙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고용과 직업활동에 있어서 국적 이외에 종교 또는 신념, 장애, 나이 또는 성적성향의 사유에 따른 차별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 이동권 특별지침(Directive 2001/85/EC)
 - 유럽연합(EU)은 장애인의 이동수단과 관련한 특별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1/85/EC)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등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음
- 시민의 이주 및 거주권 권리 지침(Directive 2004/38/EC)
 - 지침 2004/38/EC는 유럽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민의 권리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권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2019년 4월 17일 유럽의회에서 유럽접근성법을 제정
 - 이 법은 지난 2016년 유럽연합의 웹접근성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무를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유럽접근성법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소비정보의 의무적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는 적용대상인 무인발권기, ATM 및 결제수단, 컴퓨터 및 관련 운영시스템, 스마트폰, TV, 소매금융서비스, 전자북(e-book), 전자상거래, 항공기 및 대중교통 서비스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됨
 - 이러한 유럽접근성법은 회원국의 상이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영국

□ 개관

- 영국의 차별은 대부분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을 중심으로 이해·판단되고 있음
 - Equality Act 2010에는 이에 따른 실행규약(Code of Practice)이 함께 구성되어 있음. Equality Act 2010은 2010년 4월 8일 제정된 이래, 2020년 9월 30일 한 차례 개정된 데 이어, 2021년 3월 31일 2차 개정되었음⁶⁵⁾

□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

- 평등법 2010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조정 의무는 다음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며(section 20), 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불이행을 합리적 조정의무의 불이행으로 보고, 의무자가 장애인과 관련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규정함(section 21).

65) 2021년 12월말 기준, 2차 개정법률 시행 중

- ① 의무자의 조항(provision), 기준(criterion)이나 관행(practice)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장애인에게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
- ② 어떤 물리적 특징(feature)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장애인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
- ③ 장애인이, 보조장치의 제공이 없다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보조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
- 한편, section 20에서는 위의 ① 또는 ③의 요건이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경우 의무자가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에는 문제되는 상황에서 정보가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서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보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반이 되고 있음

○ 직장에서의 차별과 합리적 조정 의무 불이행

- 고용주는 근로자와 지원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장애로 인해 직업 수행 또는 지원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고용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합리적 조정 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나 구직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는 무제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짐

거동이 불편한 직원은 사무실과 가까운 주차 공간이 필요하나, 고용주는 상급 관리자에게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그녀에게 지정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임. 이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란, 조정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포함하여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에 여러 개의 주차 공간이 있다면 입구에 가까운 주차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 조정이라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 조정에 실패한 장애차별'의 경우라 할 수 있음 .

- 고용주가 합리적 조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장애인 근로자 또는 신청자가 주장하는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또한, 합리적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되는 이익보다 과도하게 더 크거나 비즈니스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불합리한 조정이 요구되는 않으나, 고용주는 합리적 조정을 위한 다른 대안 또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웹접근법(Web Accessibility Laws)

○ 19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웹사이트 접근성을 다루기 시작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온라인으로 실제 확대된 것은 평등법 2010(EQA)에서였으며, 웹접근법을 통해 웹사이트가 동등한 액세스 및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됨

- 다만, 평등법 2010에서는 해당 웹사이트에 필요한 접근성 표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이루어져야 할 조치는 WCAG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영국 인권위원회(The U.K. Human Rights Commission)는 웹사이트를 서비스로 정의할 때 법정행동강령을 강조함

- 웹사이트 소유자가 장애인 고객의 요구 사항을 예상해야 함을 의미
-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은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적용대상

- 영국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1,390만 명 이상이며,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함. 아일랜드의 경우 약 643,000명, 인구의 약 13% 정도가 장애인으로 분류됨
- 평등법 2010에 따라, 일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시각 장애, 운동 장애, 청각 장애 또는 청력 장애, 인지 장애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됨

○ 법준수의 주체는, 정부 기관과 기업으로, 영국 법률은 정부 또는 공공 부문 웹사이트는 모든 거주자에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웹표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영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등 및 인권 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가 이 법률을 시행

- 웹접근법상 웹사이트 접근성은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는 시력 상실, 언어 및 운동 장애, 청력 상실, 인지 장애 등과 같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완료하려는 작업을 방해하는 장벽에 부딪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의미함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동시에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
- 공공 기관(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규정(2018년 9월)상, 모든 공공 기관은 2020년 9월까지 이 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공 기관 접근성 규정은 일부 면제 및 부분 면제를 받은 기관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공공 조직에 적용됨
 -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조직이라 해도, 접근성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해당 기관이 웹콘텐츠의 완전 접근 요건이 '비정상적인 부담'에 직면할 때 적용됨
 - 기관의 규모,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 및 조직의 유형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부담' 여부를 판단하지만, 시간이나 지식 부족과 같은 요인은 고려되지 않음
- 민간 부문과 웹접근성법
 - 민간 부문 사업체는 영국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한 평등법 2010의 소관에 해당함

3. 독일

□ 개관

- 독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angemessene Vorkehrungen)은 연방장애인평등법과 같은 자국내 장애인 관련 개별 법제도에의 명시적인 개

념적 편입(연방장애인평등법 제7조) 이전부터 유럽연합지침의 자국내 수용과 기본법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로서 인정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독일은 국내법적 차원에서 연방 및 주의 장애인평등법, 기본법, 사회법전 제9권, 일반평등대우법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정당한 편의 제공(angemessene Vorkehrungen) 및 접근성 보장(Barrierefreiheit))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독일은 기본법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법전 제9권, 연방 및 주의 장애인평등법, 일반평등대우법, 연방참여법 등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 이밖에 독일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규범을 국내법 차원에서 수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있음

□ 기본법(헌법, Grundgesetz)

- 독일 기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일반적인 평등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일반적인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도 동법 동조 제3항을 준용. 이후 1994년에 이르러 "누구라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라는 규정이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특별히 삽입되었음⁶⁶⁾
 - 동규정을 근거로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전 제9권, 연방 및 주의 장애인평등법, 일반평등대우법, 연방참여법 등이

66) GG. Art 3

- (1) 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 (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Der Staat fördert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 (3) 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제정·적용되고 있음

- 기본법 차원에서 성별, 인종 등 다른 조건과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직접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 및 논의를 활성화⁶⁷⁾하여 이후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의 제정을 견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독일은 동법 동조와 관련한 판례와 해석(다수설)에 따라 제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은 주로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과 인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3자효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라는 특수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제약없는 삶(uneingeschränktes Leben)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조치(정당한 편의 제공 및 접근성 보장)를 취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음⁶⁸⁾

□ 사회법전 제9권(SGB IX)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특히 사회법전 제9권 제1부 “장애인 및 장애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Regelungen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und von Behinderung bedrohte Menschen)”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포괄적인 사회참여권의 보장과 제3부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Besondere Regelungen zur Teilhabe schwerbehinderter Menschen (Schwerbehindertenrecht))”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장내 지원 의무(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은 문서를 읽어주는 사람 등을 노동부에 요구 가능)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67) Helmut Simon, Menschenbild und Grundgesetz, Soziale Sicherheit für behinderte Menschen, Lambertus, 1999, S.51ff.

68) Fachgespräch „Angemessene Vorkehrungen als Diskriminierungsdimension im Recht: Menschenrechtliche Forderungen an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19. März 2019 in Berlin, Berlin: 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 2019, p. 7.

- 동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장애인의 능력과 지식이 발휘되고 향상·발전할 수 있는 노동관계의 유지,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사내직업훈련의 우선 고려, 사외직업훈련 참가를 위한 편의 제공, 사고의 위험을 특별히 고려한 사내설비, 기계, 장치의 마련 및 유지, 장애를 고려한 노동조직 및 노동시간의 조정, 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노동환경 유지 등에 대한 의무가 있음
- 다만, 중증장애인의 요구 충족을 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협동조합의 근로자보호규정 또는 공무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그러나 동법상 청구권자를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으로 한정하고 있고, 필수적인 조치에 대한 거부가 직접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방장애인평등법(BGG)

- 장애인단체 등의 주도로 2002년 연방장애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이 제정됨
- 접근성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별에 해당함(동법 제7조 제1항).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함
 -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동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연방공공기관에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 조치를 의미함(동법 제7조 제2항)
 -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고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허용되고, 남녀간 동등한 권리의 실질적인 행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애여성의 특별한 수요도 고려하여야 함(동법 제7조 제3항)
- 접근성 보장(Barrierefreiheit)은 장애인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원칙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 건물 등의 시설물, 교통수단, 기술도구, 정보처리시스템, 시청각정보원, 의사소통수단, 기타 생활시설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동법 제4조)

□ 주(州)장애인평등법

- 연방장애인평등법은 기본적으로 연방의 공공기관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주차원에서 연방과 같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각 주는 독자적으로 장애인평등법(주법)을 제정하여 현재 독일의 모든 주는 주법으로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하고 있음

□ 일반평등대우법(AGG)

- 기본법 제3조의 규범구체화와 유럽연합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⁶⁹⁾의 독일 국내법으로의 수용·전환을 위해 2006년 8월 일반평등대우법(AGG)⁷⁰⁾이 제정되었음

4. 프랑스

□ 개관

- 프랑스 헌법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조, 1946년 헌법 전문 등을 통해 차별금지를 규정해 왔음.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랑스의 법제는 2005년 장애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위한 많은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제공 의무가 규정된 가장 대표적인 법제는 프랑스 노동법(the Labour Code)으로서, L1132-1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동법에 따라 고용할당제도의 대상이 되는 등록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제공됨
 - 지원, 채용,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L1132-1 LC에서 규정한 차별에 해당함

69)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4개의 반차별지침을 제정하였음. 4개의 반차별지침은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이용에 대한 남녀평등대우원칙의 시행을 위한 지침(2004/113/EG), 남녀평등대우지침(76/207/EWG)의 시행을 위한 지침(2002/73/EG), 반인종차별지침(2000/43/EG), 고용평등지침(2000/78/EG)임.

70)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 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양한 개별 법률 차원에서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음.

- 여기서 더 나아가, L3122-26 LC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시간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규정을 노동법에 두고 있음(L1225-61 LC)

○ 합리적인 편의제공과 관련한 유일한 제한은 “불비례적 비용”에 대한 것으로,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여 산정됨. 장애의 정도와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에 기초하여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을 결정할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⁷¹⁾이 이러한 산정 과정을 보완하게 됨

-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 조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하급심 판결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민간 고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판례가 불충분한 편의제공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재하면서도, 제공된 편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장애인 고용에 있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은 차별에 해당함. 고용주는 불비례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합리적 편의제공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웹접근성 관련 법령

○ 2005년 장애인법 제4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 법인(l'établissement public)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조에 따르면, 인터넷 접근성에 관한 국제기준(EU 지침 2016/2102⁷²⁾ 제6조)가 적용되어야 함

- 동 조 및 이에 관한 시행령인 2009년 데크레(Décret)에 따라, 2012년부터 모든 공적 웹사이트의 경우 접근성 요건 충족의무가 부여되었음

- 이후 법개정을 통해 의무부담자의 범위를 공법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

71) Décret no 2006-134 du 9 février 2006 relatif à la lourdeur du Handicap; (Décret No. 2006-501 du 3 mai 2006 relatif au fonds pour l'insert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 dans la fonction publique.

72) Directive (EU) 2016/21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October 2016 on the accessibility of the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of public sector bodies.

인, 공익적 수요를 이유로 창설되어 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연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의 사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다가, 2019년 데크레에서는 연 매출액이 2.5억 유로가 넘는 사기업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접근성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였음

5. 이탈리아

- 이탈리아 헌법은 제3조에서 “성,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법 아래 평등한 존엄성과 평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탈리아에서의 차별금지 는 실질적인 차별금지를 의미하며, 국가에 대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고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사회적,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함⁷³⁾
- 이탈리아는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로서,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함. 공공사업주는 별도의 부담 없이 이미 사용 가능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사용하여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추가 재원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공공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탈리아의 다양한 법률에서 관찰되는 내용 이기는 하나, 2000/78/EC 지침 제5조에 따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고용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할 수 있음
 - 민간 부문 고용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비용이 불비례적이라면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비용은 고용주들이 부담하게 됨
- 2015년, 합리적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Law 68/1999 제14조에서는, 지역 장애인 고용 기금(the Regional Fund for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y)이 장애인 근로자 통합을 위한 지

73) 제8조 제1항: 종교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
 제37조 제1항: 노동법의 성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
 제37조제3항: 미성년자의 동일 근로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규정하는 특정 조항을 포함
 제51조: 여성과 남성의 선출직 평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

역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능력이 50% 이하로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을 포함하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여 고용주가 이용가능한 기금으로는 유일한 것임

6. 스웨덴

□ 개관

- 스웨덴은 2009년 차별금지법을 통해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도입하였음⁷⁴⁾. 고용뿐 아니라 교육 및 다양한 재화·용역 등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합리적 편의제공의 개념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2015년 개정을 거친 바 있음
 - 2015년 개정 이후 스웨덴의 현행법상 합리적 편의제공은 “불충분한 접근성 (inadequate accessibility)”으로 표현되는데, 불충분한 접근성은 직접 차별, 간접차별, 성희롱과 함께 독립적인 차별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음
 -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규칙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스웨덴 차별법(Swedish Discrimination Act)

- 합리적인 편의
 - 차별법은 직장 생활과 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편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구현해야 함(section 2, § 1)
 -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재정적 부담, 직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고용 기간 및 형태를 고려해야 함

74) Reasonable accommodation was also already provided through the much earlier act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the 1999 Act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working life due to disability (lagen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i arbetslivet av personer med funktionshinder, 1999:132).

- 유니버설 디자인은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사회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 및 목표로 설명할 수 있음

○ 고용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편의

- 고용주는 합리적인 편의를 통해 직원, 구직자 또는 장애가 있는 취업 알선 중인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유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려될 수 있는 조치에는 작업장 및 관련 건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개선하고 건물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됨

○ 평등 옴부즈맨

- 평등 옴부즈맨은 법률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스웨덴 계획 및 건축법(Swedish Planning and Building Act, PBL)

- 스웨덴 계획 및 건축법은 공적 공간의 접근성 및 사용성 (Accessibility and usability in public spaces)에 관하여, 제한된 이동성 등을 가진 사람들이 공적 공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공간확보, 산책로, 도보공간, 리프트, 야외 휠체어 및 도우미, 터미널 등 대형 운송 정류장, 버스 정류장, 승강기 문,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한 규준을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용 대중교통에 관한 법률

- 대중교통을 감독하는 사람과 그러한 교통을 수행하는 사람은 교통이 장애인에 대해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하고,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가능한 한 장애인 여행자에게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

□ 웹 접근성 지침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 스웨덴 웹접근성 지침은 EU의 웹접근성 지침을 따르며, 본 지침은 주 및 지방자치 단체에 적용된다. 공공 기관 및 교육기관, 정부보조금을 받는 개별 교육 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NGO는 제외됨
-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법률 제안에 따라, 공공 운영자는 해

당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조정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공공 사업자의 크기, 성격 및 자원의 상호 관계와 장애인이 받을 혜택과 관련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예상 비용 및 혜택이 고려됨
- 규정은 공공 기관이 공공 기관에 '불균형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공공 기관이 지침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요구 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웹 접근성 지침 제 5항에 근거함

7. 오스트리아

□ 개관

- 오스트리아 법제에서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평등의 증진의 헌법적 원칙은 1867년의 기본법(Staatsgrundgesetz; StGG) 제2조, 1929년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 B-VG) 제7조 그리고 연방공보 1964/59에 따라 헌법의 일부가 된 유럽인권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규정 제14조에 그 근거를 둬

□ 오스트리아 헌법

- 제7조 제1항⁷⁵⁾에서는 모든 시민의 법앞의 평등을 규정하고(제1문) 출생, 성별, 사회적 지위, 계급과 종교로 인한 특혜는 배제됨(제2문)을 천명하고 있음. 특히, 제3문과 제4문에서는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오스트리아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모든 영역과 일상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75) 오스트리아 헌법 제7조 제1항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출생, 성별, 신분, 계급과 신앙에 의한 특혜는 불가능하다. 누구도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정부(연방, 주 그리고 공동체)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처우를 보장함을 인정한다 ("B-VG, Artikel 7. (1) Alle Staatsbürger sind vor dem Gesetz gleich. Vorrechte der Geburt, des Geschlechtes, des Standes, der Klasse und des Bekenntnisses sind ausgeschlossen.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Die Republik (Bund, Länder und Gemeinden) bekennt sich dazu, die Gleichbehandlung von behinderten und nichtbehinderten Menschen in allen Bereichen des täglichen Lebens zu gewährleisten.").

□ 연방장애인평등법

- 연방장애인평등법은 제5조제2항에서의 간접 차별의 경우에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조건, 특히 장벽의 제거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불법이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제6조제1항). 다만, 그 부담의 과도함 여부는 (1) 불리한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2) 차별에 반대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3) 해당 조치에 대한 공적 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 (4) 동법의 발효와 차별 주장 사이에 경과된 시간, (5) 동법의 보호를 받는 집단의 일반 이익에 대한 불이익의 영향 및 (6) (주거)생활공간 접근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시설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함(제6조제2항)
- 만약,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조건의 제거가 제1항의 의미 내에서의 과도한 부담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동등한 대우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당사자의 상황이 적어도 현저하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차별이 존재하고, 적절성을 검토할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함(제6조제3항). 또한 장애를 통한 간접 차별의 존재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적용 가능한 접근성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준수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제6조제4항)

□ 법제상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

- 오스트리아 법제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UN CRPD 제2조의 “reasonable accommodation”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음

□ 웹접근성법 2019

- 웹접근성법(Web-Zugänglichkeits-Gesetz; WZG)⁷⁶⁾는 “장애 없는 웹사이트에 관한 유럽지침”(Richtlinie (EU) 2016/2102)⁷⁷⁾의 이행을 위해 2019년 제정 - 연방 내의 공공기관과 시설들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용에 대한 “웹접근성 선언”을 채택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제4조제1항).

76) BGBl. I Nr. 59/2019.

77) RICHTLINIE (EU) 2016/210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6. Oktober 2016 über den barrierefreien Zugang zu den Websites und mobilen Anwendungen öffentlicher Stellen.

8. 일본

□ 개관

- 일본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장애인기본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들 수 있음

□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

- 법률 제4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합리적 배려(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한 대응이 국제적으로 진전되어, 2006년 유엔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확보하는 것 및 장애인의 고유 존엄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일본은 2007년에 장애인 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이후 국내법 정비를 비롯한 대책을 추진해 옴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교통과 건물로 나뉘어 있던 법률을 통합하여 개정된 법률로, 하드·소프트 양면의 시책을 충실히 하여 고령자나 장애인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유니버설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물건을 처음부터 디자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① 다양한 사람의 참가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면서, ②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또한, ③ 널리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면서 장벽제거(베리어프리)를 위한 대응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본적 생각을 바탕으로 장애인 신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시행으로부터 12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한 공생사회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관련 시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던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2020년 6월 19일에 일부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3월 4일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1) ‘합리적 배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 일본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를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장벽 제거 실시에 대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노력의무에서 법적 의무로 하였음. 단, 해당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은 규정되지 않음**
- 합리적 배려는 장애인이 받는 제한은 장애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장벽과 상대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이른바 사회모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장애인이 각각의 장면(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대응이며,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님
- 합리적 배려는 행정기관 등 및 사업자의 사무·사업의 목적·내용·기능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에서 본래의 업무에 부수 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 비장애자와의 비교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의 제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 사무·사업의 목적·내용·기능의 본질적인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 배려는 장애의 특성이나 사회적 장벽의 제거가 요구되는 구체적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다양하고 개별성이 높은 것으로, 당해 장애인이 실제로 놓여 있는 상황을 근거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위한 수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2) 과중한 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된 요소를 고려하여 대체조치의 선택도 포함해 쌍방의 건설적 대화에 의한 상호이해를 통해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임

- 또한 합리적 배려의 내용은, 기술의 진전, 사회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임. 장애자와의 관계성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 등에는 제공하는 합리적 배려에 대해서 시기에 맞추어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2) '과중한 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 과중한 부담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 등 및 사업자에 있어서 개별의 사안마다, 이하의 요소 등을 고려해, 구체적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행정기관 등 및 사업자는 과중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장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i. 사무·사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사무·사업의 목적·내용·기능을 해치는가의 여부)
- ii. 실현 가능성의 정도(물리적·기술적 제약, 인적·체제상의 제약)
- iii. 비용·부담의 정도
- iv. 사무·사업 규모
- v. 재정·재무 상황

3) 「장애인차별해소법」의 개정으로 인한 변화

- 2021년 5월 개정된 「장애인차별해소법」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의무에 관한 사항에 일부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구 「장애인차별해소법」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 의무를 정하면서 공공에게는 법적 의무를 민간에게는 노력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개정 「장애인차별해소법」은 민간에게도 공공과 동일하게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법적 의무화함

[신구조문 비교]

구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비고
	구 「장애인차별해소법」		개정 「장애인차별해소법」		
부당한 차별취급*	금지 (강제 의무)	금지 (강제 의무)	금지 (강제 의무)	금지 (강제 의무)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합리적 배려**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의무)	노력해야 한다. (노력 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의무)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의무)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 부당한 차별취급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
 ** 합리적 배려: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려를 요구하는 의사의 표명이 있었던 경우,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처를 실시하는 것

- 구법에 비하여 개정법은 과거 합리적 배려의 범주는 기존 장벽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조치(설비, 장치, 건축물 등)를 넘어, 최근에는 정보·서비스·정책접근과 같은 무형의 조치에 대한 합리적 배려가 강조되고 있음⁷⁸⁾
- 다만,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행위의 하나로 보지만,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에서는 합리적 배려에 대한 구체적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차별금지의 관계가 법률상 다소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음

9. 홍콩

□ 개관

- 홍콩은 1996년부터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DDO)」을 제정·시행중에 있음. 제정 이래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 1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최근인 2020년 6월 19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은 3개 조문(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999년 7월 8일 개정으로 제27조 (a)항 (i)~(ii)호가 폐지된 것 이외에는 제정당시 조문 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⁷⁹⁾

78) 内閣部,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基本方針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sabekai/kihonhoushin/pdf/gaiyo.pdf>), 2017

79) 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도시계획위원회, 지역위원회, 정부부서, 정부의 모든 사무에서 제공되

- 구체적으로는 제4장 제24조부터 제26조에서는 교육, 건물, 상품·서비스 및 시설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제27조에서는 제26조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이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로 판단됨. 다른 한편, 제28조에서는 건물의 관리나 처분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하게 제공되는 이익이나 편의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수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그 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도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분리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도 곧 차별에 해당하여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이처럼 홍콩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를 차별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점에서,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형태로 입법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홍콩은 영역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규정보다는 제27조 예시규정을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범주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또한 제27조를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의 범위, 주체 등을 필요할 경우 확장할 수 있게 됨. 이 때문에 홍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둘러싼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에 갭(gap)을 해석을 통해 최소화하는 등 유연하며 탄력적인 입법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홍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1996년부터 독립된 행정기구로서 평등기회위원회(平等機會委員會,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EOC)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는 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7월 8일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서비스가 삭제되고 현재 정부부서 및 정부의 사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당한 편의제공 주체를 확정했다. 외형상 정당한 서비스 제공주체의 축소로 보여 지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정부부서 및 정부 사무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의미로 해석하는 한, 구범 질서보다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미국

□ 개관

-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은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평가되면서 전 세계 국가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음
-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42 USCA § 12111, (9)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합리적 편의제공”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A)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존 시설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B) 직업 구조조정, 파트타임 및 수정된 업무 스케줄, 빈 직위예의 할당, 설비 또는 장비의 변경 및 습득, 시험·훈련 자료 또는 정책의 적절한 변경 또는 조정, 장애인을 위한 자격을 갖춘 상급자 또는 통역관의 제공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유사한 편의제공 사항들

(10)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

(A) 총칙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이라는 용어는 (B)에서 규정한 요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이 드는 조치들을 의미한다.

(B) 고려할 요소

편의제공이 그 적용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i) 이 chapter에서 필요하다고 규정한 편의제공에 드는 비용과 특징
- (ii) 합리적 편의제공에 포함된 시설 또는 시설 마련에 드는 전반적인 재정적 자금; 이같은 시설에 고용된 사람의 수; 이 시설의 운영에 있어 이 같은 편의를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의 영향 또는 비용과 자원의 효과
- (iii) 적용기업의 전반적인 재정적 자금; 이 같은 근로자들의 숫자 측면에서 적용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규모; 시설의 수, 종류 및 위치
- (iv) 인력 구성, 구조 및 기능을 포함하는 적용기업의 운영 또는 운영 유형; 적용 기업에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시설의 지리적 독립성, 행정적·재정적 관계

- 같은 법 42 USCA § 12111, (10)에서 과도한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1. 호주

□ 개관

- 호주의 1992년 제정된 호주의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장애차별법, 이하 DDA라 함)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합리적 조정(reasonable adjustment)”을 들 수 있음. 1992년 제정된 호주의 DDA에는 “합리적 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판례를 통해 간접차별 조항에서 합리적 조정 의무가 도출되었고, 2009년 DDA 개정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정 의무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음⁸⁰⁾
- 호주의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조정 의무 특징
 -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은 차별 가해자가 차별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차별로 규정함. 다만 그러한 조정이 차별 가해자에게 심각한 어려움이나 부당한 비용을 지우게 될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음. 이를 “부당한 어려움(unjustifiable hardship)”이라고 함(섹션 4)
- DDA는 장애 차별 금지 영역을 Part 2에서 규정하면서 Division 1에서 노동 관련 차별(discrimination in work)을 규정하고, Division 2에서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으로 교육(education), 부지의 접근(access to

80)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2009. “Improved rights prote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 Commentary on the 2009 changes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Cth) and related measures”. PP.5-6.

https://www.humanrights.gov.au/sites/default/files/content/legal/publications/Improved_dda2009.pdf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정의 규정은 합리적 편의 제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Reasonable accommodation” mean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동협약 제5조 제3항은 국가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n order to promote equali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premises), 재화와 서비스, 시설물(goods, services, and facilities), 숙박시설 (accommodation), 토지(land), 클럽 및 단체 활동(clubs and incorporated associations), 스포츠(Sports), 연방 법과 프로그램의 운영(administration of Commonwealth Government laws and programs)을 규정함. 이상의 영역에서 합리적 조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금지된 차별로 인정됨

12. 캐나다

□ 개관

- 캐나다의 1985년 제정된 Canadian Human Rights Act 1985(캐나다 인권법, 이하 CHRA라 함)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편의제공의무(duty to accommodate)”를 들 수 있음.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캐나다의 편의제공은 노동과 고용을 그 대상으로 하며, 업무 및 고용을 넘어 협약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⁸¹⁾
- 제정 당시 CHRA에는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판례를 통해 간접차별 조항에서 편의제공의무가 도출되었음
 - 편의제공의무의 위반을 차별로 선언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결로 1985년 O'Malley 판결이 있음.⁸²⁾ 백화점의 판매원인 청구인인 Theresa O'Malley가 사용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도인 자신을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 근무하게 한 것이 온타리오주 인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사용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믿는 근로자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도에게는 근무규정이 비례적이지 않은 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

81)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Canada, para. 13.

82)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and O'Malley v. Simpsons Sears Ltd, [1985] 2 S.C.R. 536. 이 판결 당시 온타리오주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에는 합리적 조정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1986년 개정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RSO 1990(Ontario) c. H 19, art 11, 24.

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O'Malley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차별은 중립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인적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합리적 조정을 제공을 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간접차별과 합리적 조정의무를 연결하였음. 즉 대법원은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요구되지 않지만 '불리한 결과적 차별(adverse effect discrimination)'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함⁸³⁾
- 이러한 입장은 캐나다 권리와 자유의 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15조의 평등에 대하여 판단한 1997년 Eldridge 판결에도⁸⁴⁾ 적용되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이라는 합리적 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캐나다 헌장 제15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⁸⁵⁾
- 연방대법원은 1999년 Meiorin 판결부터는⁸⁶⁾ 차별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분류하고 합리적 편의제공을 간접차별과만 연결하던 기존의 접근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의무는 간접차별뿐만 아니라 직접차별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함

□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징

- CHRA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로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논의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제공 법리는 인권법에서 차별의 면책규정으로서 편의제공을 의미함. 즉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는 차별의 진정직업요건 항변에서 차별의 일응 입증에 있으면 사용자는 과도한 부담에 이를 정도의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때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됨⁸⁷⁾

83) 이수연, “캐나다의 고용상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 이화젠더법학 제2권 제1호, 2011.

84) Eldridge v British Columbia (AG), [1997] 3 SCR 624.

85) Andrews v. 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 [1989] 1 S.C.R. 143.

86) British Columbia (Public Service Employee Relations Commission) v. BCGSEU, [1999] 3 S.C.R. 3.

87) 이수연, 앞의 글, 116면.

- 이러한 편의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인권법이 보호하는 차별금지사유 전체에 적용되지만,⁸⁸⁾ 장애를 이유로 한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위반의 문제가 되며, 이 경우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위반과 유사한 상황이 됨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편의제공의무 불이행은 간접차별, 직접차별과 결합하여 인권법상 차별 또는 헌법상 차별로 인정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편의제공의무는 노동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었음

88) 캐나다인권법

제2조 이 법은 의회의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안의 범위 내에서 모든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종,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결혼여부, 가족관계, 유전적 특성, 신체장애 및 사면 받은 유죄판결이나 범죄기록 유예 명령 등을 근거로 차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각자가 가질 수 있고 또한 갖기를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적 효력이 미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판례 및 결정례

1. EU

□ 덴마크의 노동관계법에 의한 해고 사건

- 2007년 3월에 유럽연합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2010년 12월에 비준했고, 2011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시켰음. 유럽연합의 장애인 권리협약 발효 이후 유럽법원(ECJ)는 2013년 4월 11일 HK Danmark(Ring and Skouboe Werge 사건을 판결하였음
- 이 사건에서 덴마크의 노동관계법(Forskelsbehandlingslov)에 의하면 노동자가 12개월에 걸쳐 총 120일의 유급 상병휴가로 결근한 경우에 축소된 해고 고지 기간을 거친 해고가 허용되었음. 당사자인 덴마크인 Ring은 치료가 불가능한 허리통증으로 여러 번 상병휴가를 사용한 후 해고되었고, Skouboe Werge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이후 시간제와 전일제 상병휴가를 사용하고 난 이후 해고되었음. 노동조합 HK Danmark가 두 원고를 대리하여 동등대우지침(2000/78/EC)을 반영한 덴마크 차별금지법(Law No.1417)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였음
- 동등대우지침(2000/78/EC) 제5조의 요구에 따라 덴마크 차별금지법 제2a조는 지침을 반영하며 “사용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용에 접근, 참여, 진입 또는 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하지만 이는 만약 그러한 조치가 사용자에게 불비례적 부담을 부과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담이 공공 조치에 의해 충분히 해결된다면 불비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 노동조합 HK Danmark는 덴마크 차별금지법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장애를 가진 두 명의 원고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두 노동자의 결근이 장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축소된 해고 고지 기간 이후의 해고를 규정한 덴마크의 노동관계법(Forskelsbehandlingslov)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불능 상태(incapacity)

는 그들이 전일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대우지침(2000/78/EC)의 의미 내에서 장애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음. 사용자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동등대우지침(2000/78/EC) 제5조에 의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덴마크의 노동관계법(Forskelsbehandlingslov)에 따라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대우지침(2000/78/EC)에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음

-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덴마크 국내법원은 소송절차를 보류하고 유럽법원(ECJ)에 사전 질의를 회부하였음. 가장 핵심적인 질의는 Chacón Navas 판결에 비추어 장애 개념의 명확화였음. 또한 근로 시간 단축이 동등대우지침(2000/78/EC) 제5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결국이 장애로 인한 것이거나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합리적 편의를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 축소된 고지 기간 이후의 해고를 허용하는 덴마크의 노동관계법(Forskelsbehandlingslov)의 적용을 동등대우지침(2000/78/EC)이 무력화 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음
- 이 사건은 유럽연합이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이후 유럽법원(ECJ)에 제출된 최초의 장애차별 관련 사건이라, 유럽법원(ECJ)의 동등대우지침(2000/78/EC)의 해석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음. 실제로 이번 유럽법원(ECJ)의 판결은 이전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 유럽법원(ECJ)는 사전적 의견으로서 EU 기능조약(TFEU) 제216(2)조에, “유럽연합이 비준한 국제법은 유럽연합법의 일부이며 유럽연합 기구에 구속력이 있고 유럽연합의 법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유럽연합의 법적 질서의 필수적 부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동등대우지침(2000/78/EC)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음
- 동시에 유럽법원(ECJ)는 “장애가 반드시 노동과 직업 생활에서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고 강조하고, “장애는 반드시 직업 생활의 방해로 이해되어야 하고 시간제 근로 밖에 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러한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최종적으로 유럽법원(ECJ)는 “근로 시간 단축은 지침에 의한 편의조치의 하나

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과 같은 이슈에서 불리한 처우의 근거로 허용되는 결론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실패의 결과일 경우에 지침은 국내법을 무효화 시킨다고 명료하게 판시했음. 유럽법원(ECJ)은 이러한 경우에 “장애를 지닌 노동자의 결론은 노동자의 장애가 아닌 사용자의 행위 실패에 기인한다고 덧붙였음⁸⁹⁾”

2. 영국

□ 합리적 조정 실패: 고용 영역

-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와 지원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장애로 인해 직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
 - 이것은 대부분의 고용주가 처리하는 데 익숙한 법적 의무이지만 '장애'를 구성하는 것과 '합리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것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종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고용주가 장애가 있는 근로자 또는 신청자를 위해 합당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2010년 평등법에 따라 차별이 됨
 - 대부분의 경우 해당 개인은 고용주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경우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재판소에서 불법적 차별에 대한 청구에 직면할 수 있음
 - 고용재판소가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경우, 고용주는 무제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는 장애인 근로자나 구직자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을 한 경우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정의 의무가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 또는 신청자가 겪는 불이익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8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62011CJ0335/> 홍선기, 2021, 사회법연구 제43호, p59-61.

- 합리적 조정 실패 시 평등인권위원회의 역할
 - 위원회는 고용주의 의무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고용주가 합당한 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적인 차별에 대한 청구를 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
- 고용재판소에서의 법적 조치
 -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이 계속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 반면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3. 독일

- 장애관련 해고의 전제조건 (LAG Berlin-Brandenburg, Urteil vom 05.06.2014 - 26 Sa 427/14)
 - 잘못된 수행가능성을 이유로 한 장애인 근로자의 해고는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한 해당 업무장애를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 이것은 고용주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함. 여기에서 정당성 평가를 위한 판정기준은 본래의 작업장이 아니라, 작업장 변경(개조)에 비례하는 소요비용임(참조: BAG, Urteil vom 19.12.2013 - 6 AZR 190/12)
 - “정당한 편의제공”(angemessene Vorkehrungen)이란 폭넓게 이해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완전하고, 유효하며 그리고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등대우규범에 관한 입법지침 2000/78/EG (Gleichbehandlungsrahmenrichtlinie)⁹⁰⁾의 20번째 해석기준⁹¹⁾에서 가

90) RICHTLINIE 2000/78/EG DES RATES vom 27. November 2000 zur Festlegung eines allgemeinen Rahmens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in Beschäftigung und Beruf.

91) “(20) Es sollten geeignete Maßnahmen vorgesehen werden, d. h. wirksame und praktikable Maßnahmen, um den Arbeitsplatz der Behinderung entsprechend einzurichten, z. B. durch eine entsprechende Gestaltung der Räumlichkeiten oder eine Anpassung des Arbeitsgeräts, des Arbeitsrhythmus, der Aufgabenverteilung oder des Angebots an Ausbildungs- und Einarbeitungsmaßnahmen”.

- 능한 편의제공으로 열거된 것에 국한되지 않는 조직적인 조치까지를 포함함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민법 제241조제2항(§ 241 Abs. 2 BGB)의 노동조합 법과의 합치된 해석에 있어서 이 조항으로부터 나옴(참조: BAG, Urteil vom 19.12.2013 - 6 AZR 190/12)

4. 프랑스

-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주요 결정례
 - 장애인으로 인정된 직원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직업 의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고용주가 결과 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본 사례(CPH de Saint-Denis, 28 juillet 2017, RG n°F 15/0246)
 - 근로계약 이행 개시 후 6개월 후에 작업대 배치와 관련하여 직업의사의 권고를 고려해야 함에도 고용주가 결과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본 사례(Cass. soc., 25 janvier 2012, n° 09-72.671)
 - 장애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업의사의 권고에 따라 작업대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주의 의무에 위배되었다고 본 사례(CA Aix-en-Provence, 9e ch. a, 9 juin 2017, n° 15/06162)
 - 청각장애 직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동료 및 관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고용주가 취한 적절한 조치로서, 직원의 아내를 통역사로 고용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Délibération Halde n°2009-320 du 14 septembre 2009; CPH de Rouen, 27 janvier 2011, RG N° F 08/00390)
 - 조울증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해고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직업의사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과실을 핑계로 해고 결정을 내린 고용주의 행위는 장애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Décision du Défenseur des droits MLD 2012-120 du 1er juin 2012)
 - 공공부문 고용주가 객관적 정당성 없이 대리인의 직책을 충원해 주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조처에 대한 거부로서 장애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Décision du Défenseur des droits n°2017-292, du 21 novembre 2017)

□ 교육 영역

- 장애인평등기회법의 제정 이후,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 함께 일반학교에서 재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학생 통합교육이 장려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있음
- 「장애에 관한 법률」 2005-102는 장애아동을 주류 학교 시스템에 통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교육권 및 교육 내 합리적 편의제공이 동법 제 19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명시되어 있음
- 이에 관한 2010년 12월 15일 결정에서, The Conseil d'Etat는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 편의제공을 통해 유치원 단계에 있는 장애아들이 교육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학교 당국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 편의제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권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음⁹²⁾
- Conseil d'Etat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11년 4월 20일자 판결을 통해 주당국에 의해 지불된 개별 교육 프로그램 조항이 과외 활동과 관련된 수요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및 물류에 대한 고려와 관계 없이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판시하였음⁹³⁾ 따라서 학부모들은 이러한 권리의 이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당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가치분 구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음⁹⁴⁾
- 장애에 관한 법률은 교육 강령(the Code of Education) L112-4항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시험 절차에 대해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명시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92) Ministerial Instruction No. 2006-126 of 17 August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 educational programme (Circulaire relative à la mise ne oeuvre et au suivi du projet personnalisé de scolarisation)available at: <http://www.education.gouv.fr//bo/2006/32/MENE0602187C/htm>.

93) Conseil d'Etat, No. 344729\149: Conseil d'Etat, No. 344729, 15 December 2010, available at: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JuriAdmin.do?idTexte=CETATEXT000023248217>.

94) Conseil d'Etat, No. 34534, 20 April 2011, available at: www.legifrance/gouv/fr/affichJuriAdmin/do?oldAction=rechJuriAdmin&idTexte=CETATEXT000023897748&fastReqId=911059899&fastPos=7

6. 스웨덴

- 스웨덴의 합리적 편의제공 관련 랜드마크 사례로, 뮐뮈 시 관할 학교에서 장애아동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꼽을 수 있음
 - 고도의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2009년 태생의 취학 전 아동이 프리스쿨 1년을 보낸 후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폐증상의 강도가 학교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뮐뮈 시 관할 학교측은 해당 아동이 특수학교로 전학갈 것을 요구했으나 학부모는 전학을 원치 않았고, 추가 예산 없이는 아이를 학교에서 맡을 수 없다는 학교측과의 사이의 공방으로 1심⁹⁵⁾과 2심⁹⁶⁾에 걸쳐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쟁점이 다투어짐
 - 처음에는 학교가 해당 아동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과제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주3회 소규모 특별 보충교육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일 충분하지 않게 되면서, 교습법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이듬해에 이르서야 커리큘럼이 확정되면서 학습이 뒤처지게 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와 뮐뮈 지역의 반차별시민단체가 뮐뮈시를 상대로 장애 학생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교습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교육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구성한다고 주장한 사례임
 - 1심에서는, 협상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학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 부모와, 추가 예산을 받고도 한 자폐 아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공지하지 않은 학교가 쌍방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학교도, 부모도 무엇이 진실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를 위해 다투지 않았다고 평가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특수학교로의 전학권고는 직접차별이 아니므로 피고 학교의 재판 비용을 원고로부터 일부 환불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학습 및 제반 생활에 피해를 입은 자폐아동과 그 부모가 학교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조정적 판결이 이루어짐
 - 1심의 핵심 쟁점은, 학교측이 아이의 자폐강도가 시간이 가면서 심해짐에 따라

95) MALMÖ DISTRICT COURT JUDGMENT Section 3 2019-11-18 Unit 304T, Objective No.T 11646-17.

96) Skåne and Blekinge Court of Appeal , 2020.04.29.
<https://press.malmomotdiskriminering.se/media/84144/malmo-tr-ft-11162-18-dom-2019-11-28pdf> (A school failed to investigate accessibility measures for a pupil with disabilities in due time (2019))

-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권고한 것은 직접차별이 아님을 공시하였다는 점임.
-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적기에 조치하지 않아 교육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학교가 차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들어 항소하였음
 -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해당 학생이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동급생과 비교할 때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한 것으로, 차별법에 위반하는 학교의 조치로 인하여 의무교육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말피 시가 20,000 스웨덴 크로나를 이자와 함께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 CRPD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유사판결과 함께 스웨덴 법이 이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음

7. 오스트리아

□ 노동 영역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직원을 다른 직무로 재배치하거나 주요 직무 또는 직무 설명을 변경할 의무가 포함되지는 않음. 2014년 4월 29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이동성을 잃은 간병인의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청구인은 자신이 고용주의 기업 내에서 여전히 다른 일(비서 또는 행정 업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을 맺은 실제 직업이라는 결론을 분명히 하였음. 이것은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모든 노력의 핵심이며,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평등한 대우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고용을 종료할 권리를 결정한다고 보았음. 결국, 법원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재배치하거나 새 직위를 만들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음.⁹⁷⁾ 또한 회사의 파산이나 기타 중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이익보다 직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봄⁹⁸⁾

97) OGH, Urteil vom 29.4.2014, 9ObA165/13z (abgerufen am 25.10.2021, https://www.ris.bka.gv.at/Dokument.wxe?Abfrage=Justiz&Dokumentnummer=JIT_20140429_OGH0002_009OBA00165_13Z0000_000).

98) 예를 들어, Oberverwaltungsgericht, Entscheidung vom 22.2.1990, Nr. 89/09/0147; Entscheidung vom 11.6.2000, Nr. 2000/11/0096; Entscheidung vom 4.10.2001, Nr. 97/08/0469.

8. 일본

□ 교육 영역

- 공립 초중학교에서의 객담흡인에 필요한 기구의 확보 처분 의무이행 등 청구사례(나고야지방법원 2020년 8월 13일 판결)

○ 당사자

- [A] 미성년자 자녀는 부(父)인 원고
- [B] A의 부
- [C] A의 모
- [D] A가 재학중인 중학교
- [E]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

○ 소송에 이른 경위

- A(미성년자 자녀)는 부(父)인 원고 B 및 모(母)인 원고 C의 장남으로 성문하 협착증(기도폐쇄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질환)에 걸려 기관 카뉴레 또는 T-튜브(이하 양자를 합쳐 '카뉴레' 등이라 함)를 삽관하고 있다.
- 본 사건은 원고들이 D에 대해 (1) A가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객담흡인을 위한 기구(이하 '객담흡인기구'라 함)가 필요하며, 피고에게는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합리적인 배려로써 A를 위해 가래 흡인 기구를 취득하여 이것을 유지 및 보관, 정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구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및 보관, 정비할 것을 청구하는 동시에, (2) E가 A가 초등학교 재학 시, 피고가 A의 등교 조건으로, 객담흡인기구의 준비 및 그 비용을 원고 학부모의 부담으로 하고 A의 등교일에 객담흡인기구 등을 지참하도록 요구한 것 등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 판결요지

-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은 개별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 될 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객담흡인기구를 필요로 하는 공립학교의 학생 내지 그 보호자가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동 항에 따라 동 기구의 취득 및 보관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교육위원회가 공립초등학교 아동의 등교 조건으로 객담흡인기구의 취득 및 보호자에 대한 동 기구 등의 지참을 의무화한 것은, ① 객담흡인기구는 카테터를 캐뉼레 등에 삽입해서 기관 내의 객담을 흡인병에 흡인하는 것으로 그 기구의 성질상 불특정 다수의 아동이 함께 사용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오로지 A(원고의 자녀인 장애아동)의 개인적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② 원고에게는 원고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헌 제26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5조 등), A의 학교생활에 사용할 물품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③ 객담흡인기구는 구입비용이 수 만엔이며, 해당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정액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④ 위 아동이 사용하는 객담흡인기구는 약 30cm×30cm의 크기로 무게 약 2kg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가 요강 등에서 원고가 객담흡인기구를 취득해야 한다고 본 것이 장애자기본법 제4조 및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나 합리적 배려의 제공에 해당할 수 없으며 교육위원회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이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결의 의미**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학생만을 위해 국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고가의 의료기구를 취득하여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상의 합리적 배려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9. 홍콩

□ 시설물 접근

○ 휠체어 사용자 극장 좌석선택 제한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C)의 아버지인 대표 고소인(RC)은 영화관(R)의 모든 휠체어 공간이 극장 측면에 위치하여 좌석 선택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함. ▪ 더욱이 극장과 매표소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음. ▪ 이에 RC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R에 대해 장애 차별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함.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이 좌석 선택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공간을 재배치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엘리베이터와 접근 가능한 화장실로 안내하는 적절하고 눈에 띄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R의 직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했음. ▪ R은 또한 새로운 영화관을 설계할 때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는 데 동의했음.
판단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O에 따라 시설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필요를 고려해야 함. ▪ 또한 고객이 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간판을 설치해야 함.

10. 미국

구분	●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접근영역	■ 고용
제목	청각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통역사의 제공이 합리적인 편의제공인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
판결·결정일	01/21/2016
사건번호	158 F.Supp.3d 427 (No. CCB-14-2983)
법원·평등기구·결정기관명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Maryland.
청구주체(신청인·진정인·원고 등)	Lauren SEARLS
상대방(피신청인·피진정인·피고 등)	JOHNS HOPKINS HOSPITAL.
결론유형	● 인용
판시사항·결정사항·주문	<p>Auren Searls는 존스 홉킨스 병원(JHH)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행한 것은 ADA 제12112조 (a) 및 재활법 제79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Auren Searls는 구제 선언, 손해배상금 지급,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정 비용, 그리고 그 밖의 공정하고 법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p> <p>원고는 ADA와 재활법 하에서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 약식재판신청과 피고가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남겨두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청구에 대해 약식재판을 청구하였다.</p> <p>법원은 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피고의 전문가 신청에 대한 파기청구와 부분적 약식재판신청을 허가하며, 약식재판에 대한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다.</p>
근거법령·참조조문	Title 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42 U.S.C. § 12112(a) (ADA) and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29 U.S.C. § 794

<p>상세내용</p>	<p>Searls 는 2012년 존스 홉킨스 간호 대학을 졸업한 청각 장애인이고, 입술을 읽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수화(ASL)를 더 잘 이해한다. 간호 학교를 다니면서 Searls 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했다. 병원의 모든 과를 돌며 훈련을 받는 동안 간호 학교는 풀타임 ASL 통역사를 제공했다. 최종 로테이션이 끝났을 때 교수진은 그녀에 대해 “팀의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적절하게 의사 소통을 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감도 잘 해주는 학생이다. 그녀는 매우 전문적이며 숙련된 방식으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했으며, 긍정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모든 과정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p> <p>간호학교를 졸업하기 얼마전 간호사 매니저는 Searls에게 채용공고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그녀는 그 중 Nurse Clinician I 직위에 지원했다. Searls는 얼마 후 면접을 보았고, 채용이 되었다. 그 후 Searls은 ASL 통역을 요청하기 위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간호사 매니저에게 물었고, 매니저는 직업보건부서(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에 연락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Searls은 직업보건부서의 직원에게 장애인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풀타임 수화통역사를 요청하였다. 해당 부서는 통역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계산하였는데 평균연봉이 4만달러에서 6만달러 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당시 Searls의 연봉은 5만9천달러 정도 되었다). 그런데 Searls은 2명의 통역사로 구성된 팀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간호부서의 담당자는 예산상 2명의 통역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통보하였다. 간호부서의 담당자는 Searls에게 수화통역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4명의 간호사를 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Searls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을 통보하였다. 그 후 Searls은 다른 병원 (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의 Strong Memorial Hospital)에 간호사로 채용되면서 역시 풀타임 수화통역사를 요청하였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수화통역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p> <p>의회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을 정의할 때 “자격을 갖춘 판독가 또는 통역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으로 통역사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은 직무의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Searls의 청각장애가 필수적인 직무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고용 목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Searls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와 의사소통하고, 환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경보 등이 울리는 것을 듣고 이에 대처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료 전문지식과 훈련을 통해 치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Searls의 통역사 요청을 직업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청이었고 이를 거절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p>
-------------	---

11. 호주

- 호주 인권위원회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관한 판단을 하였음

사건명	Maguire v Sydney Organis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1999)
유형	인권위원회가 DDA 제24조를 근거로 시드니 올림픽위원회의 직접 차별 여부를 검토한 사례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p>Maguire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가 있었으며, 1999년 시드니 올림픽 티켓을 구입하고자 하였음. Maguire는 다음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직접 차별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간접 차별을 주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권장하는 웹 접근성 지침을 따르지 않아 이미지 파일에 대해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지 않음. - 입장권 구매 절차 가운데 반드시 마우스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키보드만을 이용해서는 구매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함. - 스크린리더가 메인 화면에서 제공하는 경기 결과를 요약한 표 형식의 정보를 읽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경기 결과표를 전혀 인식할 수 없음. <p>이를 이유로 Maguire는 다음 사항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미지 파일에 대해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삽입해서 스크린리더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할 것. - 스케줄 페이지와 스포츠 인덱스 역시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 경기결과표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확보해 줄 것.
결정내용	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DDA 섹션 24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차별이 섹션 5의 직접 차별 및 섹션 6의 간접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올림픽위원회가 주장한 “부당한 어려움”에 대하여 웹 사이트 개선 시 모든 페이지를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으며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올림픽 위원회에 대해 원고 측의 요구안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어려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익명 게시된 스포츠 활동 관련 인권위원회 조정 사례⁹⁹⁾]

진정인의 아들은 법적으로 시각 장애인이며 피진정인 공립 초등학교에 다녔음. 진정인은 아들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계단의 상단과 하단 및 기타 관련 지점에 TGSI(Tactile Ground Surface Indicators)를 설치하도록 학교에 요청했으나 학교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진정인은 또한 학교에서 벨이나 기타 청각 신호가 있는 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진정인 학교는 조정을 통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을 보였음.

진정인은 학교가 교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각장애인기관을 초청하여 매년 학교에서 설명회를 제공하고, 교사가 장애 학생의 편의시설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도록 권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결됨. 학교는 또한 구기스포츠를 할 때 벨이 달린 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장차(장애인용 스포츠) 골 볼(goal ball)을 도입하기로 동의함. 학교와 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들을 다가오는 학교 캠프에 포함시키는 것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와 지원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기로 합의함.

12. 캐나다

○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편의제공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음

“편의제공의 목표는 일할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곤란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면 근로자의 편의제공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곤란 없이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곳에서 조정이 있으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편의제공의무의 목적이다. ... 심사기준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다. 사용자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의무는 없지만, 과도한 곤란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장을 조정하거나 그나 그녀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¹⁰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편의제공의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에서와 같은 항변과 입증을 요구함. 트럭 운전자 Terry Grismer가 1984년 뇌졸중을 겪은 이후 시야각이

99) https://humanrights.gov.au/complaints/conciliation-register/list?field_discrimination_type_value=All&field_grounds_value=All&field_areas_value=All&field_date_value=All&keys=disability+sport

100) Hydro-Québec v. Syndicat des employé-e-s de techniques professionnelles et de bureau d'Hydro-Québec, section locale 2000 (SCFP-FTQ), 2008 SCC 43 (CanLII) [Hydro-Québec] at paras. 14, 16.

좁아지는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자동차감독관 (Superintendent of Motor Vehicles, 자동차 운전자를 관리하는 행정청)은 그의 시야각이 운전을 하기 위한 최저기준(120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자동차감독관이 시각장애를 가진 Grismer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에 대한 차별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자동차감독관이 시각장애를 가진 Grismer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에 대한 차별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¹⁰¹⁾

101) British Columbia (Superintendent of Motor Vehicles) v. British Columbia(Council of Human Rights), [1999] 3 S.C.R. 868. 김선희, 캐나다의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21, 81-84면 참조.

제3절 정책 및 제도 등

1. EU

□ 개관

- EU가 장애인 정책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3년 유엔이 “장애인을 위한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표준규칙’)을 제정하면서부터로서, 유럽의회는 산하에 장애인 관련 위원회인 “유럽의회 장애인그룹”(European Parliament Disability Intergroup)과 “유럽의회 장애인 지원그룹”(European Parliament Disability Support Group)을 두고, 장애에 관한 현안 사안들에 대해 검토해 왔음
- EU는, 2010년 11월 15일 ‘유럽 장애 행동전략 2010-2020: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한 새로운 합의’(European Disability Strategy(EDS)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를 채택하였는바, 배리어 프리가 적용된 유럽 사회와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고 온전한 사회경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음
 - ① 유럽연합 위원회가 「유럽 접근성법」 채택 (2019년)
 - ②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에 관한 지침을 채택함 (2016년)
 - ③ 장애인의 접근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 해양, 도로, 교통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함
 - ④ 첫 번째 유럽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표준을 채택함 (2014년)
 - ⑤ 표준화에서 접근성을 주류화할 뿐만 아니라 건축 환경에 대한 접근성 표준,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에 따른 새로운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을 함
 - ⑥ 탑승과 사전 공지 등 항공편을 -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발행함 (2012년)

- ⑦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기차 탑승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지침을 채택함 (2015년)
- ⑧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내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에 착수함
- ⑨ 유럽 시설 투자 기금의 지원을 받는 접근성 의무 요건을 소개함 (2013년)
- ⑩ 웹 접근성에 관한 연구 등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와 개발에 대한 재정을 지원함

○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물리적 환경, 이동수단, 정보통신기술과 체계(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ICT) 및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함

□ 정보통신·의사소통

○ 유럽 국가별 읽기 쉬운 문서(Easy-to-read)정책

-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유럽국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읽기 쉬운 문서’ (Easy-to-read)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읽기 쉬운 자료’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를 말하는데, 이러한 ‘읽기 쉬운 자료’는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문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읽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읽기 쉬운 자료’를 대체도서로 활발하게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 ENAT)의 접근성 정책의 목표는 관광지와 개별 관광사업에서 정보 및 교통수단 제공을 통해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접근성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주류화가 필수적이며, ‘분야 책임’의 달성이 장애 주류화의 핵심으로 널리 받아들

여겼음. ‘분야 책임’은 공공기관의 각 ‘분야’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책, 장애인 관광 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연구를 공식화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와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전달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함. 더 나아가 분야 책임이 실천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접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의 제공에서 추가 비용은 장애인 이용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2. 영국

- 포용적 디자인에 대한 영국 표준 (British Standards for inclusive design)
 - 2018년에는 포괄적인 디자인을 다루는 새로운 영국 표준이 도입됨. 표준은 두 부분으로 제작됨
 - BS 8300-1:2018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건축 환경 설계. 외부 환경에서는,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접근 방식 등 외부 건축 환경이 장애인뿐 아니라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모범 사례 설계 원칙 장려
 - BS 8300-2:2018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건축 환경 설계. 건물(실행 강령)에서는 건물 내부의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권장 사항 제공
 - 예를 들어, 주차장의 경우,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장애인 베이(스팟)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 근처에 배치되어야 함
 -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없는 운전자가 예약된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순찰해야 함
- 대중교통 차별 가이드 (Public transport discrimination guide)
 - 대중교통차별가이드는 장애인의 경험이 차별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차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필요한 템플릿, 증거 및 출처 등)의 수집에 필요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함
 - 버스 이용
 - 휠체어 공간이 다 찼거나, 버스가 정차하지 않거나, 시청각 안내 방송이나 경사

로가 작동하지 않아 버스에 오르거나 내릴 수 없는 경우, 평등법에 따라 버스 회사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버스 회사가 취해야 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음

- 예를 들어 경사로를 운영하거나 버스를 멈추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 장애인을 위한 우선 공간과 좌석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장애인 승객을 위해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현재 위치와 정류장이 언제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2017년 Paulley v FirstGroup PLC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전자가 다른 승객에게 휠체어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 승객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내야 한다고 판정함
-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운전기사는 그 승객들을 설득하여 버스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구가 통하지 않을 시에도 이를 다른 방법으로 요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동안 운전을 거부할 수도 있음. 버스 회사의 정책은 최소한 운전자가 이러한 모든 단계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경사로나 시청각 안내 방송 등 이미 합리적으로 조정된 사항은 정상 작동해야 하며, 버스 회사는 이를 신속하게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역사적 건물에 대한 접근권 (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

○ 보존 원칙

- 기획 허가상, 계획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제안에 적용된 원칙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포괄적인 액세스가 달성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 및 액세스 설명에 의해 지원되어야 함.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고, 이는 건물의 물리적 특징에 대해 제안된 합리적인 조정에 참고되어야 함

○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 접근과 보존의 관점에서 창의적이고 민감한 디자인을 통해 이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능

- 접근 계획은 휠체어 사용자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제한된 이동성, 감각 장애 및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및 노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함

- 평등법은 물리적 특징으로 인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옵션을 설명
 - 기능 제거
 - 기능 변경
 - 회피하는 합리적인 수단 제공
 -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 앞의 옵션 중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체 방법
 - 실무에서 합리적인 조정
 -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평등법 실행 강령 지침은 합리적인 조정을 식별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목록을 제공
 - 장애인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
 - 장애인 고객에게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의견 묻기
 - 합리적인 조정 요청에 응답하는 방법을 인식하도록 직원 교육
 - 직원들이 장애인을 위한 추가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예: 청각 장애인)
 - 직원이 합리적인 조정의 의무를 인식하고 장애 고객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여 그러한 조정을 식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건물 내부 관련 규정 예시
 - 일관된 스타일로 디자인된 명확하고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됨.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응답을 듣거나 해독할 수 없는 경우 길을 묻는 것을 꺼릴 수 있음
- 평등법 2010에 따른 건물의 '합리적인 조정'의 예
 - 건물의 개인 소유 카페라면 임시 경사로가 적합
-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
 - 블루 배지 제도는 장애인 승객 또는 운전기사를 위한 제도로서 가려는 목적지 근처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임

□ 장애 부문 챔피언 제도

○ 섹터 챔피언(The Sector Champions)

- 각 분야 비즈니스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활용하여 장애인 소비자 그룹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분야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주도하도록 함

○ 커뮤니티 챔피언 제도(Community Champions scheme)

-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Covid-19의 더 큰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 등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디지털 방식의 정보접근이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전용 헬프라인 등, 지역주민 맞춤형 지원을 제공

□ Disability Confident 고용주 제도 (Disability Confident employer scheme)

- 장애인이 직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고용주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계적 요건들을 충족해 가며 자발적인 평가 및 검증, 보고 등을 통해 레벨1, 레벨2, 레벨3으로 나아가며, 리더로 인정받으면 지역 및 비즈니스 영역에서 챔피언 역할을 하게 됨

□ 합리적 조정과 관련된 위원회¹⁰²⁾

○ 영국에서는 평등인권위원회(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가 합리적 조정을 위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으로부터 'A' 등급을 받은 독립적 위원회임

- 위원회는 2006년 평등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비부서 공공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됨
- 증거, 분석, 평등 및 인권법 분야에서 전문가이자 권위 있는 조직이 됨을 목표로 하며, 정책 입안자, 공공 기관 및 기업을 위한 필수적인 접점이 되고자 함
- 위원회는 차별에 맞서고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다른 조직 및 개인과 협력함

102) 이 절은 평등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음

3. 독일

□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연방장애인평등법(BGG)¹⁰³을 개정하여, 제2장a를 “연방공공서비스기관에서의 장애없는 정보기술”¹⁰⁴이라는 이름으로 신설
- 무장애정보기술에 관한 시행령(BITV: Barrierefreie-Informationstechnik _Verordnung)
 - 연방기관의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용을 위하여 그래픽을 사용하는 표면 등을 갖추어야 하며, 웹사이트 표출 소스(html)과 보이는 웹주소(Webadresse), 수화, (이해하기) 쉬운 언어(사용) 등 상세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 영역

- 교육분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고등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생활, 연령,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예로 시험시간의 연장, 개별보조도구 또는 특수텍스트라벨링도구 등이 허용됨¹⁰⁵

6. 스웨덴

□ 2013 고용혁신정책: 스웨덴의 포용적 노동 시장 구축

- 2010년 스웨덴의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용률은 62%로 OECD 전체에서 가장 높았음
 - 근로능력이 저하된 장애인의 약 50%가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덴마크 등 근로능력이 저하된 장애인의 26%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

103) Das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vom 27. April 2002 (BGBl. I S. 1467, 1468)

104) Abschnitt 2a Barrierefreie Informationstechnik öffentlicher Stellen des Bundes.

105) Hellrung, 2017, 9.

- 2009년에 근로 능력이 저하된 스웨덴 직원의 75%가 적응된 업무, 작업 속도, 근로 시간, 보조 등 근로 조건의 적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절대 다수가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함

□ 1982년 스웨덴 고용보호법 No. 80

- 스웨덴의 장애인은 연령, 질병 또는 후천적 장애로 인한 능력 저하가 해고의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며 고용주는 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고용 보호 권리를 누린다고 할 수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인 작업장을 보장하고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편의 시설에 대한 표준을 설정함
- 연령,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고용주는 먼저 작업장을 조정하거나 직원을 재활시키거나 직원을 다른 적합한 작업으로 이전해야 하며, 합당한 모든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만, 특히 고용주에게 부당한 고충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음

7. 오스트리아

□ 국가장애행동계획

- UN 장애인권리협약(UN-BRK)을 장기적으로 이행하기 위해¹⁰⁶⁾ 2012년 7월에 각료회의에서 『국가장애행동계획 2012-2020』(Nationale Aktionsplan Behinderung; NAP)이 채택됨. UN의 CRPD가 많은 지역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NAP를 통한 향후 장애정책의 방향과 토대를 마련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기대됨
- 연방 차원에서 연방의 모든 영역에서 접근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수립하고 수

106) Biewer/Koenig/Kremsner/Möhlen-Prozer-Prummer-Resch-Steigmann-Subasi Singh, Evaluierung des Nationalen Aktionsplans Behinderung 2012-2020, Bundes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Pflege und Konsumentenschutz (BMSGPK), Wien, 2020, S. 14
(https://www.sozialministerium.at/dam/jcr:ec106d2c-7346-4360-8756-975de92d9576/Evaluierung_des_NAP_2012_2020.pdf, 2021년 12월 13일 현재).

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강제할 구속력은 없음. 그리하여 여러 번의 유인에도 불구하고 연방주들은 이 계획의 수립과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 또한 접근성 영역에서 조치와 목표를 위한 연방차원에서의 자금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음

8. 일본

□ 기본방침

- 일본의 경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을 중심으로 동 법 제4조에 규정된 ‘차별의 금지’를 구체화하는 「장애인차별해소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 제1항)
- 기본방침에서는 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② 행정기관 등이 강구해야 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대응요령), ③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대응지침), ④ 기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것임

□ 장애인정책위원회

- 장애인정책위원회(원문은 「障害者政策委員会」)는 장애인기본계획의 책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조사 심의나 의견보고를 수행하며, 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한 감시나 권고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내각부에 설치된 기관임 2011년 「장애인기본법」의 개정에 의해 설치되었음
-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여 장애인,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학식·경험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택됨

□ 장애인 웹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JIS X 8341-3:2016」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정보통신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해당 시스템을 설계나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격을 정한 것이 「JIS X 8341」으로서¹⁰⁷⁾, 이중 웹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이 JIS X 8341-3(정식 명칭 : 고령자·장애인 등 배려 설계지침 -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기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 제3부: 웹 콘텐츠)임

- 웹 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개발, 확인, 시험, 보수·운용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WCAG 2.0에 기반하여, 누구나 웹 콘텐츠에 접속하여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가 되는 지각가능성, 조작가능성, 이해가능성, 견고(퇴)(robust)성¹⁰⁸⁾의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광시설에서의 편의제공을 위한 일본의 인정(認定)제도¹⁰⁹⁾

○ 일본정부는 2020 각료회의를 통해 ‘마음의 배리어프리(心のバリアフリー)’라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동 계획의 구현은 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하는 ‘장애의 사회 모델’을 이해하는 것, ② 장애가 있는 사람(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합리적 배려의 불제공)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 ③ 자신과는 다른 조건을 가지는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힘을 키우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곤란이나 아픔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3가지를 포인트로 하고 있음

- 배리어프리계획을 관광시설에서 실제로 구현한 것이 ‘관광시설에서의 마음의 배리어프리 인정제도(観光施設における心のバリアフリー認定制度)’임

- 관련 법률 정비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대응이 있다면 인정제도 등과 같은 제도 정비는 소프트웨어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

107) 규격번호인 8341은 일본어로 친절하다는 의미의 단어인 ‘やさしい’를 연상시켜서 부여된 것임

108) 원문은 堅牢性이라고 표현함.

109)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kankocho/shisaku/sangyou/innovation_00001.html

□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제시한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 배려 사례

-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에서 '합리적 배려'
- '합리적 배려'의 제공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항

1. 장애가 있는 아동·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초·중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배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1) 교원, 지원원 등의 확보
- (2) 시설·설비의 정비
- (3) 개별 교육지원계획이나 개별 지도계획에 대응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 등의 배려

2. 장애가 있는 아동·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초·중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의 「합리적 배려」는 특별지원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면,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례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음

3. '합리적 배려'에 대해 조약에서 말하는 '균형을 잃은 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으로서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아동·학생 개개인의 장애상태 및 교육적 요구, 학교 상황, 지역 상황, 체제면, 재정면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합리적 배려의 구체적 사례¹¹⁰⁾

1. 공통사항

-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을 토대로 한 장애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시설 정비
- 장애 상태에 따른 신체 활동 공간 및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확보
- 장애 상태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교원 등의 배치
- 이동이나 일상생활 돌봄 및 학습면을 지원하는 인재 배치
- 장애 상태를 바탕으로 한 지도 방법 등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및 심리학 전문가 등의 확보
- 점자, 수화, 디지털 교재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교재 등의 확보(디지털 교재, ICT 기기 등의 이용)
- 장애상태에 따른 교과목의 배려(예를 들어 시각장애의 경우 도공·미술, 청각장애의 경우 음악, 지체부자유자의 경우 체육 등)

2. 시각장애의 경우

- 교실에서의 확대 독서기나 독서대 이용, 충분한 광원 확보 및 조정(약시)
- 음성신호, 점자블록 등의 안전설비 부설(학교 내·통학로 모두)

110)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44/attach/1297380.htm

- 장애물을 제거한 안전한 환경 정비(예를 들어 복도에 물건을 두지 않는 등)
 - 교과서, 교재, 도서 등의 확대판 및 점자판 확보
3. 청각장애의 경우
- FM식 보청기 등 보청환경 정비
 - 교재용 비디오 등에 자막 삽입
4. 지적장애의 경우
- 생활능력이나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생활훈련실이나 일상생활용구, 작업실 등의 확보
 - 한자 읽기 등에 대한 보완적 대응
5. 지체부자유자의 경우
-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 방(공간)이나 설비 확보
 - 의료적 지원 체제(의료기관과의 연계, 지도 의사, 간호사 배치 등)의 정비
 - 휠체어·환자이송용침대(들것)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비의 확보
 - 장애 상태에 따른 급식 제공
6. 병약 신체허약의 경우
- 개별 학습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작은 방(공간) 등의 확보
 - 휠체어·환자이송용침대(들것)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비의 확보
 - 입원, 정기진료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의 학습내용 보완
 - 학교에서 의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간호사 배치
 - 장애 상태에 따른 급식 제공
7. 언어장애의 경우
- 스피치에 대한 배려(구음장애 등으로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
8. 정서장애의 경우
- 개별 학습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작은 방(공간) 등의 확보
 - 대인관계 상태에 대한 배려(선택성 관목이나 자신감 상실 등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경우 등)
9. LD, ADHD, 자폐증 등의 발달장애의 경우
- 개별 지도를 위한 컴퓨터, 디지털 교재, 작은 방(공간) 등의 확보
 - 쿨다운을 위한 작은 방(공간) 등의 확보
 - 구두에 의한 지도뿐만 아니라 판서, 메모 등을 통한 정보 게시

□ 장애인 고용에 관한 우량 중소기업주에 대한 인정제도(모니스 인정제도)¹¹¹⁾

11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monisu.html>

10. 미국

접근영역	■참정권
요지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상세내용	<p>투표에 대한 접근권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p> <p>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모든 미국인의 투표에 대한 접근권을 촉진하고,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등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므로 이를 위해 발령된 행정명령임</p> <p>제3조(유권자 등록 및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공기관은 시민의 투표를 위한 등록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p> <p>(a) 각 기관의 장은 유권자 등록 및 유권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해당 법률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기관 자료, 웹사이트, 온라인 양식,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그 밖의 대중 접근이 가능한 방법을 포함하여- 투표 등록 방법, 메일 투표 요청 방법 및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방법 등,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ii)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주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 또는 Vote.gov과 같은 연방 웹사이트로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하는 방법 (iii) 대중이 직접 참가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 과정에서 유권자 등록 서비스 제공 및 메일 투표 신청에 접근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유권자 등록 및 메일 투표 신청서 양식과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의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부여 (B) 모든 관련 주법을 준수하는, 유권자 등록 및 메일 투표 신청서 작성 지원 (C) 기관이 속한 영역 내에서 유권자 등록 서비스가 승인되도록 하기 위해 초당적이지 않은 제3의 조직 및 주의 공무원에게 요청하고 간원하는 일 (iv) 여러 언어로 된 유권자 등록 및 선거 정보 제공으로 접근권을 확대하고,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모든 시민이 선거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 (v) 해당 법률에 따라, 신분증이 '주 유권자 식별법'에 규정된 형식으로 대중에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p>(b) 이 명령이 발령된 날부터 200일 이내에,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유권자 등록과 유권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한 전략 계획을 대통령의 국내 정책 보좌관(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Domestic Policy)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상세내용</p>	<p>(c) 전자정부 사무국(The Administrator of the Office of Electronic Government) 및 관리 및 예산 사무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행정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방 웹사이트와 미국 국민에게 선거 및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 또는 현대화하기 위한 기관 간의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미국 디지털 서비스 행정관(the Administrator of the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은 이 조의 (b)항에 규정된 전략 계획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장애인 유권자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 이 명령 발령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the Department of Commerce) 내 국립표준기술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장애인이 ‘온라인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the online Federal Voter Registration Form)’을 이용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평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NIST는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 선거 지원 위원회(the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및 기타 기관과 협의하여, 유권자 등록, 투표 기술, 메일 투표, 투표 장소 및 투표 종사자 교육을 포함한 장애인의 비공개적이고 독립적인 투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분석해야 한다. 270일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NIST는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the Federal Voter Registration Form)과 장애인과 관련하여 확인한 기타 장애물 모두에 관한 권고안을 발행해야 한다.</p>
<p>관련 법령</p>	<p>the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p>

11. 호주

○ 고용분야에서의 대표적인 합리적 조정의 예로는 다음이 거론됨

- 장애인이 시간제로 일하거나 유연적으로 일하는 것, 장애인이 자신의 집이나 1층에 가까운 다른 사무실, 상점 또는 부지로 옮기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구를 옮기거나 출입구를 넓히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인이 하기 어려운 일부 사소한 의무(즉, 직업의 고유한 요구 사항이 아님)를 다른 팀원에게 재분배, 장애인의 재활, 평가 또는 치료(예: 물리 치료 또는 심리 치료 예약)를 위해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허용하는 것, 장애인에

대한 추가 교육, 멘토링, 감독 및 지원 제공하는 것,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청각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증폭 전화 또는 필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디지털 녹음기와 같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개조하는 것, 장애인 이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과 인터뷰 변경, 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을 위해 Auslan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거나 시각 장애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문서를 읽어주는 인력 제공, 징계 또는 고충 처리 절차를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¹¹²⁾

- 이러한 합리적 편의제공에 드는 비용은 고용지원기금(Employment Assistance Fund, EAF)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EAF는 장애 및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이들의 고용주가 업무 관련 장비 개조, Auslan 수어 통역 서비스, 관련 직장 지원 및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함.¹¹³⁾ EAF는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장애인, 자영업자인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직을 위해 Auslan 수어 통역 서비스나 특수한 작업장비가 필요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함

12. 캐나다

□ 편의제공의 세 원칙: 존엄성 존중, 개별화, 통합 및 완전한 참여

○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는 편의제공의 세 원칙으로 존엄성 존중(Respect for dignity), 개별화(Individualization), 통합 및 완전한 참여(Integration and full participation)를 들고 있음¹¹⁴⁾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으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긍심, 자기 가치 및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포함하고, 여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완전성과 권한 부여가 포함됨.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며,

112) <https://www.afdo.org.au/what-are-reasonable-adjustments/>

113) <https://www.jobaccess.gov.au/employment-assistance-fund-eaf>

114) 이하의 내용은

http://www.ohrc.on.ca/en/policy-ableism-and-discrimination-based-disability/8-duty-accommodate#_edn130를 요약하여 번역함.

이는 자기 결정에 대한 개인의 권리, 온정주의 없이 대우받을 권리를 반영하며, 사람들이 선택에 최소한의 간섭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편의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의 본인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함. 주택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및 고용주는 존엄성과 기타 인권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방법부터 그러한 가치를 가장 적게 존중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함

- 법에서 편의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식은 없으며, 각 사람의 요구 사항은 고유함. 따라서 편의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새롭게 고려되어야 함. 같은 상태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의 경우 한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음. 따라서 편의제공은 개별화를 요구함.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캐나다 대법원은 직원 최대 결근 기간을 규정 한 취업규칙이 편의제공 과정의 개별화된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분적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¹¹⁵⁾
- 편의제공은 또한 개인의 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되고 구현 되어야 함. 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달성하려면 장벽이 없는 포괄적인 설계가 필요하며, 기존 장벽을 제거해야 함. 특정 시점에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장벽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까지 편의를 제공해야 함. 고용, 주택, 서비스 및 시설은 장애인의 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하고 조정되어야 함. 어떤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별도의 또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고용 또는 주거에서 분리된 대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¹¹⁶⁾

115) McGill University Health Centre (Montreal General Hospital) v. Syndicat des employés de l'Hôpital général de Montréal, 2007 SCC 4 (CanLII), [2007] 1 SCR 161, 2007 [McGill].

116) 연방대법원은 통합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분리가 더 적절한 편의제공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함. Eaton v. Brant County Board of Education, [1997] 1 S.C.R. 241 [Eaton], para. 69

제4절 분석

1. 해외의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 관련 쟁점

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접근성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관계

- 유니버설 디자인 등, 사전적이며 집단적인 방식이면서 또한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세분화하여 제도화하는 접근성 법령 및 정책의 설계는, 이를 통한 접근성 보장 효과를 최대화함과 동시에, 정당한 편의제공 방식으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편함을 줄여 주는 한편, 해당 국가의 장애인 아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 당사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의하여 사후 조치되는 방식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집단적이며 보편적인 사전 정비 방식으로 작동하는 접근성 조치에 비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불편하고 번거로운 권리보장의 방식일 수 있음. 정당한 편의제공의 작동방식은 접근성 조치의 그것에 비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교섭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미 연방인력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에 관한 행정명령¹¹⁷⁾의 경우,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기존 의무 외에,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접근성 조치를 통해 최대한 사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면할 접근성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제거된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 개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 제도의 작동이 그다지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함
 - 이처럼 접근성 표준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및 제도 등의 경향은 정당한 편의제공 사건의 빈도 또는 해결을 위한 법원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11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6/25/executive-order-on-diversity-equity-inclusion-and-accessibility-in-the-federal-workforce/>

- 신기술의 등장 시 해당 기술을 이용한 영역에 대한 접근의 경우, 초반에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식을 통해 보장되지만,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끊임없이 마련해 가고 있으며, 웹접근성의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정책 및 제도 등을 통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법률을 통한 예비의 방식으로, 해당 영역의 접근은 정당한 편의보다는 접근성 조치의 형태로 확보되는 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전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을 통한 웹접근성의 확보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성격보다는 접근성 조치 의무의 성격에 가까움. 다만, 제2장 및 제3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접근성 표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이상적으로 구현되기 전까지,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¹¹⁸⁾.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정보 접근과 관계맺음 방식이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 생활에서 기본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웹접근성 표준 등도 그 수준을 빠르게 높여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으로서 또는 과도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또한 일정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 웹사이트 접근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그 의무의 불완전한 준수를 차별로 보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해당 웹접근성 규정은 CRPD 제6호 논평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성 최소기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을 부가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와 복지제도와의 관계

-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접근성의 수준과, 법률의 형식으로 사회가 합의한 접근성 조치의무의 수준이 불일치할 수 있고, 그 제도가 되지 못한 나머지의 영역이 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형식으로 요청되거나 또는

118) CRPD 제6호논평에 따르면, ‘건축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 접근성의 점진적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동안 즉각적 의무인 적절한 편의가 개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para.42).

요청이 좌절되거나 혹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함께 필요함

- 접근권의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의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공적편의 지원 내지는 복지제도의 존재가 그 예가 될 수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에 대한 지원제도 활성화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은 물론,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하는 일에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하며, 이는 차별금지법제와 복지법제가 잘 맞물려 기능하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시사함

2. 해외의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에 대한 이해

가. 분야

-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판례 등이 수집된 것은 주로 교육이나 노동 분야 등 한정적인 범위로 나타남
 - 이들 분야에의 집중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공적 영역이면서,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사항이 복합적이며, 해당 사건에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차별문제와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 노동 영역의 접근성 보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고용주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거부와 관련하여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함께 발견되는 것으로 보임

나. 장애 유형

- 판례 및 정책 사례에서 외부신체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었으며, 그중 시각·청각언어장애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이나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불이익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주로 휠

이 바람직함

- 접근성 표준을 구성하는 법령들은 이와 같이 장애인만이 아닌 범용화된 방식의 접근성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¹¹⁹⁾은 유니버설 디자인 형태의 접근성 표준에 해당하는바,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 기준[별표 2] 및 점검표[별표 3]는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예라 할 수 있음
-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각종 배리어프리 법제에서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지향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접근성 보장 법제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3. 소결

- 사전적이며 집단적인 방식의 접근성 조치의 경우에도 세분화된 경우의 수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접근성 보장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 등, 사전적이며 집단적인 방식이면서 또한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세분화하여 예비하는 접근성 법령 및 정책의 설계는, 이를 통한 접근성 보장 효과를 최대화하는 효과를 지님.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건의 빈도 또는 해결을 위한 법원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사전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을 통한 웹접근성의 확보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성격보다는 접근성 조치 의무의 성격에 가까움
 - 웹접근성과 관련한 법령의 발전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 신기술의 등장 시 해당 기술을 이용한 영역에 대한 접근의 경우 초반에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식을 통해 보장되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장애인등의 접근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끊임없이 마련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연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제도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차별금지법제와 복지법제가 잘 맞물려 기능하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19) 시행 2020. 11. 2., 문화재청예규 제224호, 2020. 11. 2., 일부개정

- 장애인당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한 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은 물론,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하는 일에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장애인당사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음

제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제5장 정책 및 입법 개선

제1절 유형별 쟁점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이에 대한 일반논평을 기초로 국내외 법령, 판례 및 결정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하여 고찰한 제4장까지의 내용에 더하여,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최적의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접근성, 접근성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1) 접근성 보장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편의제공이 작동되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세분화하여 보는 방법과, 2) 접근성이 표상하고 있는 접근권의 법제화 방식에 대해 먼저 살펴 보고자 함

1.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경우의 수

- 법령 및 제도 등의 정비를 위해서는 접근성 보장의 목적에 비추어 접근성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혼재가 문제되는 영역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크게, A.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욕구와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나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접근성 조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B. 욕구와 필요성이 아직 인지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A.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욕구와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나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접근성 조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 접근성 단계적 적용범위상 일정 기간 뒤 조치 대상이나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 ex. 의무화 대상을 정한 일정 법적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을 받는 사업장 등
 - (2) 접근성 조치 대상으로 규정된 것과 성질이 유사하나 일정 법적 기준 이하로서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경우 : ex. 일정 면적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등

- (3)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이며 집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물리적 제한이나 다른 법적 제한으로 인해 접근성 조치의 형태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ex. 역사적 건축물로서 보존 필요성 때문에 시설물 변경을 요하는 특정 접근성 조치가 불가한 유적지 등
- (4) 성질상 접근성 조치 대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형태로 제도화된 경우

○ B. 욕구와 필요성이 아직 인지되지 못한 경우

- (1)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 접근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 확장되어, 새로운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 ex.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 (2) 접근영역의 속성상 접근성 조치 대상과 같은 보편적, 사전적 방식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경우 : ex. 장애당사자의 장애 외 요인이나, 장애유형의 교차 등으로 인하여 보편적이거나 사전적인 방식으로 예비되지 못한 경우
- (3) 장애인 당사자와 공동체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접근성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타 잠재적인 경우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본질에 관하여, 개념적으로는 B-(2)를 떠올리기 쉬우나, 판례 및 결정례들을 통해 분석된 사례들 중 상당수는 A-(2)나 A-(3), 혹은 B-(1), 그리고 A-(4)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석됨

- 그리고 B-(2)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정당한 편의제공의 문제만이 제기되기보다는, 접근성 조치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일부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일컫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문제를 접근성 의무와 분리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두 문제의 순수한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해결이 필요하며, 최소한 각각의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접근권의 법제화 방식

가. 논의의 필요성

- 접근성 의무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모두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타 대중 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할 권리’가 총체적으로 가장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이론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 ‘접근할 권리’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두 의무를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접근할 권리’는 장애인권리협약상 ‘접근성’ 및 ‘합리적 편의제공’,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상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법제화되어 있음. 그런데 접근‘권’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부 법령에서만 등장하고 있을 뿐으로, 이는 ‘접근성’이 갖는 권리적 요소를 부각하거나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
- 특히 ‘접근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접근권’을 어떻게 개념화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구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함. ‘접근권’이 선언적 규정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들이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으로서의 규범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그렇다면, 1) 기본권으로서의 ‘접근권’은 어떤 성질을 지닌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지, 이를 자유권으로 볼 것인지 사회권으로 볼 것인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음 2) 우리 헌법상에서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볼 때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볼 때 효력의 작용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는바, 자유권적 접근이 바람직함은 물론이지만 접근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감안하여 그 일부를 혹은 사회권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적 논리가 무엇이겠는지에 관한 고찰 또한 필요함 3) 그리고 기본권적 보장뿐 아니라, 제도적 보장의 방식으로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조명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논의들에 더하여, 4) 접근권이 빈틈 없이 보장되기 위한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 논의로서, 접근권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관계에 관하여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 보는 과정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5) 차별금지법제와 복지법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권이 전체 법제에서 조화롭고 또한 힘있게 보장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 또한 정책 및 입법 개선 방향 도출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됨

나. 자유권과 사회권

- 인간은 육신을 가진 생명이기에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에 굶어 죽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굶어 죽지 않을 권리’는 얼핏 사회권으로 포섭될 것 같지만 그보다는 자유권으로 보는 것이 온당함. 존엄한 인간이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임. 굶어 죽지 않을 자유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가장 자연권적인 권리라 할 수 있음. 즉, 법질서나 법체계 내에 명문화되든 아니든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것임
- 종래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로 이해되어 왔음. 국가에게는 침해금지의무가 있고,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된다는 소극적·방어권적 성격을 중심으로, 수범자로서 국가의 침해금지의무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접근되어 옴
- 그러나 나홀로 개인이 아닌, 사회생활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자유권 실현이란,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의 사적 영역에서도 침해되지 않고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실효적이라 할 수 있음. 즉, 소극적 보장이 아닌 적극적·실질적 보장이 요청되는 것임
- 자유권이 공적 영역에서 보호되더라도 사적 영역에서 침해될 경우 그 실현은 공허해지므로, 국가는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자유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 실현의무는 행

정개입청구권의 형태로 발현되어 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위한 기본권(자유권과 사회권 포함)의 실현은 공동체의 규범적 구성부분이자 존재이유이라 할 것임

- 한편, 빵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전부는 아니며, 생존이 육체적·경제적 생존만을 의미할 수는 없음. 인간의 존엄성은 정신적·문화적 생존도 강조함.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이 어느 정도 주거·의료·교육 및 문화·환경적 이익을 누리는가는 인권과 복지의 주요 척도가 되며, 국가에 따라서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고, 평균적·상대적으로 상당한 수준 이상일 수도 있음. 인간 존엄에 필수적인 또는 필요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공동체별 공감대에 따라 생존권적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생활권적일 수도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복지혜택일 수도 있음
- 헌법적 포섭에 있어서는 전자 쪽일수록 자유권·자연권적이고 후자 쪽일수록 사회권·실정권적이게 됨. 기실 자유권·사회권 또는 자연권·실정권은 선형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선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개념으로, 헌법규범체계 내지 기본권체계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시대적·사회적 가치판단에 따라 개념구분 기준점은 이동될 수 있음. 한편,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책무도 전자 쪽일수록 필수적·의무적 성격이 강하고 후자 쪽일수록 덜 하며, 그 이상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임의적·재량적 성질을 지니게 됨.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러하듯, 인권과 복지는 계층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그 성질을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님
- 장애인의 기본권도 관념적으로는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뉘볼 수 있는바, 생존 생활에 불가결한 안전망적인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 당사자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권적·자연권적 포섭이 바람직함
- 즉, 장애인의 접근권은 생활영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제도화되겠지만, 장애인의 일상 참여에 불가결한 필수적 전제조건에 해당할수록, 이를 자유권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음. 안전망적 접근권 내지 필요조건적 접근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개별 상황별 사례로 구체화될 것임
- 장애인의 접근권을 자유권으로 포섭하면, 그만큼 강한 보호를 받게 됨. 법리적

으로는 천부적인 자연권성을 갖게 되어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보장되는 효과가 있음. 공감대적 일상참여와 사회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접근권의 양적·질적 내용과 범위도 확대됨. 구체화 법률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라 해도, 실정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으며, 이때, 자연권적 자유권인 한 헌법규정이 있고 없고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 제11조 평등 조항 등에 의하여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접근권이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임

- 장애인의 접근권 중 어떤 내용을 사회권으로 포섭하면, 성질상 실정권에 해당하여 헌법 규정이 있어야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 우리 헌법상으로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 및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 및 제5항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보호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포괄적인 장애인의 접근권이 도출될 수 있음. 헌법 제37조 제1항을 공감대적 합의를 전제로 한 사회권에도 적용되는 자기완결조항으로 보면, 이 또한 장애인의 접근권의 헌법 근거가 될 수 있음

다.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 권리실현이 법률 없이도 직접 헌법만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규정내용이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는 다른 문제로서, 법규상 구체적 내용규정에 의해서만 권리가 구체화되는 것은 아님. 헌법규정의 내용이 일반·추상적이더라도, 직접적 권리실현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추상적 권리라는 용어 때문에 이를 법률구체화에 의해서만 권리가 실현되는 것으로 관념하기 쉬우나, 이는 권리의 성질에 대한 오인에 따른 것으로, 규정의 내용이 추상적이라 해도, 직접적 권리실현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임
- 기본권 실현이 헌법규정만으로 가능하다면 이를 직접적 효력규정 내지 직접적 권리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간접적 효력규정 내지 간접적 권리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함. 직접적 권리의 내용은 당해 법규상 구체적일 수도 추상적일 수도 있는바, 추상적이라고 해서 직접적 권리성 부인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추상성은 법률을 통해서도 구체화될 수 있고, 유권기관의 법해석에 의해서도 구체화될 수 있음

- 헌법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법률구체화를 통해서만 권리가 실현된다는 것일 경우, 이에 속하는 기본권은 직접적 권리로 볼 수 없음. 법률구체화가 국가 내지 입법부의 의무일지라도, 입법부작위 상태인 한 권리는 실현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추상적 권리를 쓰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간접적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본질에 부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접근권을 천부적 자연권 내지 헌법상 자유권으로 관념하면, 접근권이 헌법상 직접적 권리성을 갖는 데는 문제가 없음. 구체화 법률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그에 의하여 실현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유권적 접근권은 자기실현의 규범력을 갖기 때문임
- 반면, 헌법상 사회권으로 포섭되면, 내용 구체화는 일차적으로 법률의 몫이지만, 입법 미비·불완전의 경우에는 이차적·보충적·후견적으로 사법부가 구체화하여야 함. 이는, 사법부가 권력분립을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안주하여 위헌선언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이유이기도 함. 장애인에게 접근권 방치는 회복불가능한 존엄성 훼손 내지 존재부정일 수 있기 때문임. 현대국가에서 기능적 권력분립과 사법적극주의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은 이를 사회권으로 관념하더라도 헌법상 직접적 권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헌법상 구체적일 수도 추상적일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권의 명확한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구체화가 바람직하며, 이를 통한 접근권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접근권은 법률상의 권리 또는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으로서 실현되게 됨. 그러나 구체화 법률이 없더라도 여전히 직접적 권리로 보아야 하며, 접근권의 내용확정 또한 헌법의 몫이라 할 수 있음
- 접근권 실현의 계층적 다양성이나 점진적 단계성 및 현실적·기술적·재정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를 헌법상 사회권으로 포섭하면서도 직접적 권리가 아닌 간접적 권리로 보아야 할 경우나 그와 같은 견해가 없지는 않을 것임. 즉, 이는 법률구체화가 있어야만 접근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국가(또는 입법부)의 입법 자체는 의무적이지만, 내용확정은 헌법테두리 내의 법률의 몫이기 때문에 이른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전형에 해당하게 되고,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나, 입법적으로 권리실현이 담보되지 않는 결과로

이러하게 됨

- 그러나 간접적 권리도 헌법상 권리로서 사법적 소구권이 인정되며, 입법으로써 실현되는 접근권은 권리로 포섭되고, 행정법상으로는 개인적 공권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

- 상대적이기는 하나, 기본권적 규범가치가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규범질서의 양면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연은 없으며,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보장, 제도적 보장을 최소한 보장으로 볼 이유는 더더욱 없음
- 민주주의 원리 위의 헌법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이익실현과 주체간의 이해조절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 형성임. 이를 위한 기본권보장과 제도보장은 모두 다 실질적 보장이라야 하며, 서로 보완적 분담관계에 선다고 볼 수 있음. 즉, 기본권 구현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제도 실현은 헌법상 법률상 다양한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 및 반사적 이익효를 수반함
- 자유권적이든 사회권적이든, 접근권 구현과 접근성 제도 실현도 마찬가지임. 동전의 양면처럼, 법성숙과 더불어 접근권과 접근 제도는 상호 긴밀히 융합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분야에서는 이를 위한 주관적·객관적 법치, 실체적·절차적 법치, 형식적·실질적 법치의 조화가 중요하게 됨
- 국가에 주어진 접근권 실현의무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입법부작위는 위헌이 될 것임. 국가에게 기본권적 접근권 실현을 위한 제도화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그와 관계없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접근성 제도화의무를 부여받을 수도 있음
 - 전자의 제도화는 기본권적 접근권 실현 효과를 갖지만, 후자의 제도화는 직접적으로는 기본권적 향유가 아닌 제도적 보장으로 인한 접근성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렇다고 접근성 제도에 의하여 장애인이 누리는 이익을 제도보장의 반사적 효과로만 접근할 것은 아님. 개인적 공권 내지 법적 이익으로 포섭할지, 단순히 반

사적 이익만을 인정할지는 입법 즉, 법률형성의 몫으로, 장애유형과 상황, 접근 제도의 필요도·의존도를 고려하되, 복리국가라면 가능한 한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권 내지 법적 이익 쪽에 관심 둘 필요가 있음

-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의 양면적 상보관계를 감안하면 헌법적 차원이 아닌 법률적 차원의 접근권 실현도 접근권과 접근성 제도에 관한 조화로운 규범틀 형성을 위하여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할 것임

○ 국가의 접근권 내지 접근성 실현을 위한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극적 위헌확인 외에 적극적 입법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도 논할 문제임

-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 향유자이자 객관적 규범 질서의 공동형성자이고 구성원의 하나인 장애인도 마찬가지임은 명백함
- 헌법상 직접적 효력 내지 권리규정이든 간접적 효력 내지 권리규정이든, 접근권에 내재하는 청구권성으로부터, 그리고 접근권 실현 내지 접근성 제도화를 위한 국가의 법률구체화 의무에 상응하여, 장애인에게는 입법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마. 접근권, 접근성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관계

○ 앞서 살핀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안전망적 인권적 자유권과 이를 넘어서는 복지적 사회권 양면성을 지니면서 유형화해 볼 수 있음. 강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유권적 포섭이 바람직하나, 유형별 상황별 현실을 고려하며 부분적으로 사회권으로 포섭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직접적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접근권 실현을 위한 접근성 제도화가 중요함.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의 완전한 일상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의 일반적 접근성 보장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 헌법상 자유권적 접근권 실현 내지 사회권적 접근권 실현 수단으로서의 접근성 제도화만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성 보장 그 자체에 의하여 도출되는 법률상 접근권 및 법률상 이익 논의도 촘촘한 접근권 실현과 제도화에 유익할 것임

○ 편의제공은 접근권 및 접근성의 개별적·사후적·보충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

니며, 접근권 및 접근성 제도의 미흡함이나 공백·사각을 채워주는 보완적 기능으로서도 논의 실익이 있음

- 편의제공이 지향해 가야 할 최소한의 방향은,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연속선상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목표는 접근성 조치의 “집단적”인 조치 수준을, 보다 “맞춤화”된 수준으로 사전 설계하고 대응함으로써 가까워질 수 있음
- 접근성의 문제와 관련 있는 여러 유형별 특징들, 즉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성별, 접근 대상의 종류, 관련자의 유형, 사회경제적 상황, 기술적 상황, 법적 상황, 각종 지원 제도의 현황 등 장애인 당사자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섬세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그 실현방법이기도 함

바. 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와 사회복지법제의 적극적 관계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공동체가 노력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령들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공통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제공거부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한 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서이지만,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제도화해 온 것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령의 오랜 역사에서 이루어진 바이기도 함. 다만, 전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률이고 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률이라는 차이를 지님
-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 22조),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과,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3조),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8조),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제46조의2),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제65조) 등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규정들은 공공 및 민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 관한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해 접근성 의무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의 부담을 낮추는 기능을 함

사.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금지되는 차별행위 사유가 되는 장애로 보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동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법령들이기는 하지만, 장애모델을 비롯한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는 장애 관련 정책 전반에 있어서의 여러 괴리를 낳을 수 있음
- 기존 법정 장애 중심의 복지제도에 관하여 제기되어 온 여타 문제들을 차치하고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장애인의 기본적 자유 향유를 위하여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요청되는 권리임과, 불완전하고 고정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충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등록 장애 여부가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 제거가 필요한 상황을 겪고 있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인권법제에 더하여 사회복지법제에서의 장애 범주 확장 내지는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장애 유형이

나 요청되는 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변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임

- 특정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를 중심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케이스가 주로 제시되어 온 것은, 시설거주 비율이 높은 장애 유형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형태로 공적 문제제기하는 빈도가 낮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도 풀이됨
- 그렇다면, 장애인의 탈시설을 논의하는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한 양상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1. 접근성 보장제도 강화

-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구성하는 전체 제도가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음
 - ① 접근성 표준의 개선과 ② 정당한 편의제공의 증진, ③ 접근성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함

가. 접근성 표준의 개선

- 접근성 표준은, 접근성에 대한 장벽을 식별하고 그 극복 방법을 고안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장벽이 되는 특성을 사전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1) 제거 (2) 변경 (3)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특성의 활용(신설, 변경, 제거) (4) 서비스 등 다른 방식의 접근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 됨
- 특히 접근성에 관한 최소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접근성 표준의 현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접근성 표준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접근성 최소기준 이상으로 일단 접근성 표준을 정한 뒤, 그 접근성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그 개선의 방식 가운데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이 중요하리라 생각됨. (1) 기존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법으로 규율하던 영역을 접근성 표준의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편입하는 것과, (2)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등 접근성 표준의 마련을 위한 기준점 자체를 범용 디자인에 두고, 접근성의 최소기준을 처음부터 비교적 높게 마련하는 것. 이처럼 접근성 표준을 개선하는 것은 접근성(권) 보장을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이는 아래에서 살펴 볼 정당한 편의제공의 증진을 고려하여 함께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증진

- 정당한 편의제공의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체와 개선 내용에

따라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임

- ①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부담자로서 직접 편의 제공 (편의 범위 확장 및 질적 제고)
- ② 편의제공 의무 법제화를 통해 편의제공 의무 부담자 및 부담 내용 수립 (지속적인 단계적 확대)
- ③ 의무부담자의 편의제공에 대해 보조금·현물 등 직접 제공(+) 및 이를 위한 재원 및 제도 조성 (공적편의 지원을 통해 의무부담자가 과도한 부담 항변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설계)
- ④ 의무부담자의 편의제공에 대해 조세 등 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 지원 및 강화
- ⑤ 의무부담자의 편의제공에 대해 인증제도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인 마련
- ⑥ 장애인당사자가 편의제공 요청 시 활용할 수 있는 비용 또는 인적 및 물적 지원 제공 (현행 복지제도 또는 개인예산제와의 결합 등을 고려)
- ⑦ 보장되지 못한 경우의 구제장치 마련(이행강제 및 보상·배상)
- ⑧ 분쟁해결기관 및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지속적 개선
- ⑨ 정당한 편의제공 사전 계획 및 사례, 매뉴얼 등 지식관리, 교육 및 훈련, 캠페인 등
- ⑩ 접근성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조화를 통한 접근성(권) 보장 계획 수립 (전체 시스템 및 프로세스 설계, 구현을 위한 단계별 세부지침 및 점검표 등을 포함한 법령 정비,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장치 마련 등)

다. 접근성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범위 외의 접근성 장벽이 있는 경우, 이를 누가 제거할 부담을 지는가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제도적 대비가 필요함. 의무화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예¹²⁰⁾에서와 같이 인정제도 등을 활용하거나, 영국의 경우¹²¹⁾에서와 같이 섹터별 챔피언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대안적으로 시도

120) 모니스 인정제도 등은,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인정 표시를 상품이나 광고 등에 붙일 수 있으며, 정책금융으로 저리융자를 받거나 공공조달에서의 가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21) 섹터 챔피언은, 각 분야 비즈니스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분야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주도한다.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처럼 기존의 접근성 표준이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식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편의제공 요청 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 또는 인적 및 물적 지원이, 해당 케이스에서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맞춤형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복지제도와의 결합 등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호주의 NDIS 제도를 참고하여 개인별 예산제 등과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고안하기를 제안함
- 이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는 제도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유익함. 그러나 의무부담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접근권의 온전한 행사를 어렵게 함. 어느 곳에서도 그 접근 가능함을 예측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장애가 없는 경우와 동등하게 실제 사회참여가 가능하며, 따라서 개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 실현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삶의 전 영역에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방법은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완전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요컨대, 장애인의 일상 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강력한 접근성 제도화가 필요함. 자유권으로서의 접근권 확대, 사회권적 접근권 보장의 헌법적 직접효 인정, 부단한 법률구체화 노력 및 기본권적 권리성 외 제도적 권리성 강화 등을 통한 실효적·실질적 접근 제도를 구축해가는 정책 지향이라야 할 것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성 지원 제도 강화

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공적 지원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적 지원의 존재 또는 그 정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에 있어서 공적 지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입안되는 것은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부담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

공 의무의 내용을 공공부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장애인이 접근성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그 의무이행의 부담을 개별화 시킴으로써 저항을 높이기보다는 공동체가 그 의무이행의 부담을 함께 나눔으로써 '과도한 부담'임을 들어 의무이행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자신의 부담능력을 이유로 바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지원제도의 이용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됨

○ 장애인의 삶이, 장애인의 경험, 장애인의 접근성이 대상의 속성에 따라 분절적이어서는 안 될 것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에 있어 공적 지원의 고려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특히 의미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임. 즉, 현재의 장애인복지제도들이 본래의 복지증진 목적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결합하여 공동체의 모든 생활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를 가능케하는 인권보장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강화될 수 있음. 복지제도와 차별금지를 통해 그 본래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가 상보적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임

- 현재의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정책들은 장애인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들과 담당 부처를 달리하고 그 접점이 자주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촘촘한 제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적 지원 제도의 설계는, 공동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조직 및 제도의 하드웨어적 칸막이를 넘어서기 위한 정기적인 교류의 공통 화두로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나.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접근성 지원제도 강화

○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접근성 지원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범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정당한 편의제공은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편의제공

을 요청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이로 인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구조화된 제도이기 때문임

- 국가는 모든 유형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수월하도록 공공과 민간 양 영역에서의 접근성 상향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이를 위한 재정과 기술 등 파격적 지원을 하여야 함. 공급자적 제도 개선만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과 산업 융복합도 주요 이슈로 볼 수 있음

다. ‘정당한’ 편의의 기준 수립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선도

- 접근성의 형식적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이 확보되려면, 각 접근 대상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어야 함. 특히 제3장에서 국내 사례와 관련하여 살펴본 것처럼, 정당한 편의가 인적 서비스나 물리적 측정치를 통해 정의되기 어렵다면,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침이나 매뉴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착하고 참고할 만한 사례데이터를 축적하는 관리가 필요함
- 특히 앞서 정당한 편의제공 증진 방안으로 제시하였던 “⑨ 정당한 편의제공 사전 계획 및 사례, 매뉴얼 등 지식관리, 교육 및 훈련, 캠페인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요청-탐색-평가-협의-결정-적용 등의 프로세스에 돌입할 의무부담자 및 장애인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에 필요한 상담, QnA 지식 및 사례 데이터 관리, 정책 개발, 공적편의 지원제도 연결 등)가 필요함. 현재 법원 및 인권위원회에서 인용된 사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지식들이 분야별로 산재되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지식정보화의 병행이 요청됨
- 개별 사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은 상황 및 욕구 유형별로 분석 및 정리하여 각 영역별 접근성 조치로 상향화 반영할 필요가 있음. 어디까지 접근권과 접근성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분야별로 체계화하고 유형화하는 것도 필요함. 특히,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구조화 데이터 기반 개별 사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관리의 선도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장애인 접근권과 접근성 및 편의제공 지능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함

3. 접근영역별 개선 방향

가. 기본 영역

1) 정보통신·의사소통

□ 웹접근성 표준 개선을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접근성은 다른 모든 분야의 접근성에 관여하여 장애인이 각 분야의 생활영역에 의미있게 접근하여 본질을 향유하도록 하는 기본 영역의 특징을 가짐
- 시각장애인의 숙박시설 예약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미국의 2019년 판례¹²²⁾에서 살펴볼 수 있듯, 장애인의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대안적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 접근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정보 접근성은 단순히 어느 서비스를 이용가능한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충분히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기 위한 기반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가는 정보의 핵심 내용 및 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양식 자체에 관련되기 때문임
- 특히 오늘날과 같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접근이 좌우되는 지능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어떤 대상이 이용가능한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요청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성 표준을 선제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표준 KWCA 2.1이 2015년 이후 바뀌지 않은 채 국제 최신 표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바¹²³⁾, 이에 대한 빠른 개선이 촉구됨

122) 5/11/2019, 2019 WL 6048611(No.RG18888208),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Alameda County

123) [2021 국감] 구명투성이 웹 접근성 인증, 시각장애인은 웹 접근을 포기했다, 2021.10.07. 오늘경제, 김하나 기자,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2>

□ **정당한 편의로서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반영**

- 의사소통과 관련한 합리적 편의제공에 있어서 미국의 입법례를 보면,¹²⁴⁾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의 유형은 개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공공기관은 서비스 및 지원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서비스와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고 함
- 이를 기반으로 미국의 2021년 판례는 서류 작성 도움을 위한 담당자 배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요청한 점자 문서 제공이 필요 없으며 점자 문서 제공 등이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 공공기관인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유형에 관하여 다룰 여지가 있으며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과 개선으로 얻게 될 이득의 비교를 통해 과도한 부담임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함¹²⁵⁾
- 자기결정권의 존중 측면에서의 방법 결정과 결과적 측면에서의 효용 중 무엇을 핵심 가치로 할 것인지, 무엇이 최선의 이익인지, 그리고 무엇을 최선의 이익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법과 매뉴얼, 적용례의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의사소통의 방식은 접근의 질과 내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시혜적인 편의제공이 아니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접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법제 및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124) 28 C.F.R. § 35.130(b)(7)(i)

125) 03/25/2021, 528 F.Supp.3d 928(No. 1:19-cv-03311-JMS-TAB),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D. Indiana, Indianapolis Division

2) 시설물 접근·이용

□ 역사적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제공 사전 설계에 의한 배리어 프리

- 시설물 접근·이용과 관련하여, 장벽으로 작용하는 성상에 관한 물리적 변경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역사적 건축물 등 물리적 변경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근본적인 접근성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일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들이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접근성 조치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사전 설계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됨
- 또한, 이처럼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방식을 함께 사전 설계할 필요성은, 역사적 건물에 대한 접근성 이슈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다른 개별 분야의 접근성 법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역사적 건물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① 역사적 건물등에 관한 접근성 표준의 단계적 향상 및 ② 접근성 조치 방식의 물리적 변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제도화, 위 두 가지 단계가 유의미함
 - 역사적 건물처럼 물리적 변경이 어려운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다른 건물등에서 통용되는 접근성 조치 방식의 적용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음. 이 경우, 접근성 표준의 향상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도, 이미 파악된 물리적 변경의 한계를 토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법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사전적으로 설계하여 제도 및 법령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 역사적 건물의 보존 필요성과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성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관련 요소를 세분화하여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① 역사적 건물등에 관한 접근성 표준의 단계적 향상
 - 해외에서도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어려운 문제로 다루어지며, 영국의 오래된 영국 법원 건물에 대한 접근성 문제 제기 사례에서 나타나듯, 현

재 진행형인 이슈라 볼 수 있음

- 영국의 역사적 건물에 대한 접근권 지침은 역사적 건물의 경우 각 건물 외관이 나 설정의 디자인, 특성으로 인하여 보존을 위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접근을 위한 변경을 고려할 때 각 건물의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랜 고민과 논의의 결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② 접근성 조치 방식의 물리적 변경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 제도화

- 건물의 물리적 특징에 관한 장애인의 합리적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역사적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가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실행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보상조치가 제안될 수 있음
- 그러나 역사적 건물의 성상의 변형만이 아니라, 인적 요소가 결합된 서비스 방식의 편의제공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적용가능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고안하고 의무부담자와 장애인당사자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기준 마련이 바람직함

□ 개별 기관 단위의 변경요소 발생 시 정당한 편의제공 프로세스 적용 제도화

○ 개별 기관 단위에서 재정비 또는 신규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앞서 영국의 2019년 결정례¹²⁶⁾ 등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조정 및 접근성 조치의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즉, ① 설계 또는 초기단계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 평가하고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것, ② 변경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하며, 이는 협의에 따를 것, ③ 장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의사소통을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할 것, ④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의 이행을 확보할 것 등은 합리적 조정 및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일회적 조치가 아닌,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합리적 조정과 접근성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26) 영국 EHRC, Network Rail이 철도역의 보수공사 시 평등법 제23조에 따른 협약을 마련하도록 개입한 사례

3) 이동 및 교통수단

□ 이동 및 교통수단 정당한 편의제공 표준매뉴얼 강화

- 최근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의 개정¹²⁷⁾을 통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대상이 확대되고 저상버스 도입이 전면화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접근성의 강화로 이어지려면, 운송사업자들의 정책이 이 법에서 정한 접근성 표준 뿐 아니라, 개별 장애인들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요청되는 본래적 의미의 정당한 편의를 실제 제공할 수 있도록 원칙과 실행 방법을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이동 및 교통수단 정당한 편의제공 표준매뉴얼 강화가 필요함. 정당한 편의제공으로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도 구체적인 조정에 따른 조치 의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우선 순위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의 행위를 요청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사전 매뉴얼이 제시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임. 이러한 사전 매뉴얼의 제작 및 강화, 적용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선행 제도 등이 참고가 될 것임
- 영국의 2017년 판례, 즉 버스회사의 평등법 2010 위반(Paulley v. FirstGroup) 케이스의 경우, 휠체어 공간 사용에 있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이 유모차 동반 승객에 우선한다는 등의 원칙을 버스 회사가 더 강하게 관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이동 및 교통수단 사업자가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정책과 이를 수록한 매뉴얼의 보완과 가장 모범이 되는 해석례를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의무부담자들의 개선 조치를 도출하였던 혁신적인 사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사례에 적용되거나 더 나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공개되지 않는 판례 또는 결정례 등에서 나타난 가장 개혁적인 정책들을 포착하여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혁신하는 일련의 데이터 관리를 통한 지식 프로세스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021.12.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2.1.18. 일부개정된다.

나. 개별 분야

1)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표준 매뉴얼 개발

- 앞서 이동 교통수단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표준 매뉴얼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처럼,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표준 매뉴얼 개발 및 강화가 필요함
- 극장에서의 편의제공에 관한 미국의 판례¹²⁸⁾에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침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원칙을 관철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장애인 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사례들과 각 케이스별 조치 방법에 관하여, 공공 및 민간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정책이나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개별 기관들의 정책 및 매뉴얼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또한, 제도적 강제 방법을 고안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줌

□ 역사적 건축물 또는 문화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 시설물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범위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시설물 접근성 확보 외에도, 분야별로 취약한 지점을 찾아 시설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문화재보호법¹²⁹⁾ 제8조는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회 규정¹³⁰⁾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

128) 14/4/2004, 364 F.3d 1075(No. 02-57013),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129)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7호, 2021. 5. 18., 일부개정]

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열거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전문가의 관여여부에 따라 실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으로 장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영역의 정당한 편의제공 구현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정책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 2와 같다고 하며, 동조제2항에서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 제공 및 안내와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로 나누어 제시함
- 위 시행령 별표 4의2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관광시설에서도 여전히 접근성조치 및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경우 정보 제공 및 안내와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에 대해 이를 장애인 당사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지역공동체 내의 가용 자원의 확보 및 운용을 통해, 기존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편의제공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130) [시행 2021. 5. 1.] [대통령령 제31464호, 2021. 2. 17., 일부개정]

2) 교육

□ 정당한 편의제공의 상세화된 예시 개발을 포함한 교육계획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 배려 사례에 관하여,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적장애, ④ 지체부자유, ⑤ 병약·신체허약, ⑥ 언어장애, ⑦ 정서장애, ⑧ 발달장애 등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합리적 배려의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요청하고 구현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사례에 관하여, 이를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목록화하여 의무부담자와 장애인당사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권리구현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특히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험은 학교 밖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선도하는 의미도 있을 것임. 따라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화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상세화된 예시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가 및 지자체의 교육계획에서 구현하기를 제안함

□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금 활성화

- 미 교육부의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¹³¹⁾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투입되는 총 자원의 양과 질을 증진함으로써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 ① 집단적인 방식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서비스의 설계의 방법, ② 개별화된 방식의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시스템적 사전 준비, ③ 합리적 편의제공 요청 시 해당 요청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며 거부되지 않도록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 ④ 교육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지원의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장치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 환경에서도 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장치로서 기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131)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releases-more-3-billion-american-rescue-plan-funds-support-children-disabilities>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 속에 기금의 활성화를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에 따른 편의제공이 필요한 상태이면서도 해당 편의가 의무부담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여 거부되는 경우 등에 있어, 의무부담자 또는 장애인당사자가 직면하게 되는 부담을 이러한 공적 기금 등의 지원이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 분야의 접근성 보장 관련 계획 시 공적 지원 제도의 운용을 포함하여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함

3) 노동

□ 과도한 부담 판단 시 공적 편의 고려

- 청각장애가 있는 간호사 고용 시 풀타임 수화통역사 제공을 거부한 고용주에 관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미국의 판례¹³²⁾는,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필수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 고용주의 합리적 제공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그 거부에 관하여 차별이라 판단함으로써,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편의제공을 이행할 유인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편의제공에 따른 재정적 부담 여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요청된 편의의 내용의 본질에 비추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판단 구조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의 항변으로 인해 편의제공이 거부되기 쉬운 많은 사업장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고용주가 이러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접근성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 편의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되, 실제 그 비용이 과도하여 고용주가 단독으로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부담을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

132) 01/21/2016, 158 F.Supp.3d 427 (No. CCB-14-2983),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 Maryland

도록 설계하는 것이 고용 영역에서의 접근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는 의무부담자를 정하는 전체 법제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의 수준을 가장 높이는 효과가 있음.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의무자의 부담이 과도해져서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거나 혹은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전체 의무를 면제받음으로써 편의제공과 공동체 간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효용은 공적편의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 선행 연구(오욱찬 외, 2018)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제도개선방향 설계 시 고려사항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함

4) 사법·행정·참정

□ 참정 접근성 증진을 위한 관여기관간 조정 프로세스 정비

- 미 국무부의 투표에 대한 접근권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¹³³⁾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인 참정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분석-평가-전략계획의 수립-기관간조정-권고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 줌
- 기본적으로는, 참정 영역에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 정보통신·의사소통 접근성의 이슈 등이 함께 관리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상의 법정토론회나 선거공보물, 선거에 관한 교육자료 등과 관련해서는, 특히 점자, 수어, 음성, 디지털음성, 자막, 읽기 쉬운 글 등 정보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기관간 조정 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조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다른 기관의 행위가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마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개별 장애인에 대한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된 법률적 권리, 또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선언된 천부적 권리로 확인하는 데

13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3/07/executive-order-on-promoting-access-to-voting/>

그치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반차별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갖는 헌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헌법을 근간으로 하여 권리체계들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제도가 장애인 접근성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며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심층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함

5) 금융·보험 및 상거래 등

□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경우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케이스 분석·활용

- 금융·보험 등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 및 결정례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논점들의 경우 주로 의사소통에 대한 편이가 문제됨¹³⁴⁾. 예를 들어, 은행이 장애가 있는 고객의 이익 보호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온라인 banking 서비스를 거부하고 폰 banking을 사용하도록 조언한 것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¹³⁵⁾, 시각장애인이 명세서를 점자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점자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인쇄본을 보낸 은행의 서비스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¹³⁶⁾, 계약 체결 시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자 동석 등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¹³⁷⁾ 등에 대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편의제공 요청이 해당 방법을 통한 장애인의 이익 보호를 이유로 거부되거나, 계약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나, 이들 케이스가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 분쟁해결절차로 들어서게 되면 주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최종 결론을 얻게 되기보다는 당사자들간의 화해나 조정 등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당사자들간의 조정 등을 통한 분쟁해결 시에는 최초 진정사건 등에 관한 자

134) 금융·보험 등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보다는 접근성 표준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장애 차별의 논점이 다루어진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집된 국내외의 사례들 가운데 접근성이 주요 이슈가 아닌 사례들을 수록 배제하였다.

135) 홍콩 EOC(평등기회위원회) 결정례로서, 해당 사례에서 분쟁은 조정을 통해 해소되었다.

136) 홍콩 EOC(평등기회위원회) 결정례로서, 해당 사례에서 분쟁은 조정을 통해 해소되었다.

137) 청각장애인과 은행 간에 수화통역자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보증채무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착오무효가 부정되었던 2002.5.20. 일본 동경지방법원의 판례 등

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조정을 통해 실제 관행이 바로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조치가 개별 기관이 아닌 관련 업계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그 효과가 개별 장애인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에서, 당사자들간 조정으로 종결된 사례들의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 내용에 관해서는 비식별화 등을 통하여서라도 이에 대한 정보를 되도록 공개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관련 대안이 될 수 있음

6) 주거 및 기타 재화·용역 일반

□ 법령과 관행의 장벽 해소를 포함한 ‘정당한’ 편의의 적극적 적용

- 과도한 부담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 법령에 정하여진 바와 다르다는 것을 들어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CRPD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시한 장애치료를 위한 주택 개조에 관한 스웨덴 결정례¹³⁸⁾가 있음
- 이 결정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 및 통합을 지원하고 격리 또는 분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정, 주거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진행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치료 요법을 위해 집을 확장하기 위한 조정 요청이 법령에 따른 개발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이를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보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수적인 요구라는 점에서 합리적 편의에 포함된다 고 함
- 이와 같이 과도한 부담 여부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법과 관행 또한 조정이 필요한 장벽의 하나로 파악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이러한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국가 입법·행정·사법기관의 변경 노력 및 평등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됨

138) 3/24/2014, HM Vs. 스웨덴, 장애치료를 위한 주택 개조에 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결정

제3절 법령 체계화 방안

1.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혼재 문제의 해소

가. 정당한 편의제공의 형식으로 접근성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법률

- 정당한 편의제공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접근성을 나타내는 경우, 특히 접근성의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음. 특히 장애인등편의법이나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이들 규정의 성격을 접근성의 최소기준으로 보는지,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보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됨
- 첫째, 접근성의 최소기준임에도 이를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래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접근성 조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이행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이행의 거부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에 적용되는 ‘과도한 부담’ 항변을 적용하여 판단함으로써 조치 내용이 훨씬 더 협소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됨. 이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둘째, 본질적으로 접근성의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한 것임에도 이를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개별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는 법이 명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래적 의미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을 거부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됨
- 셋째, 정당한 편의제공 방식은 본디 접근성 최소기준을 통한 보편적 대비방법으로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 없었기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속성상,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최소기준에 따른 접근성 조치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임. 이를 고려할 때,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용어로 접근성 최소기준을 규정

하고 있는 법은, 해당 법에 명시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수준보다도 더 열악한 정도로 접근성 최소기준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렇기에 접근성 조치를 그 최소기준 이상, 당해 법령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 이상으로 확장하여 더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 내용에 부합하는 용어 전환과 이를 반영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 이러한 방식이 시설물 접근과 같이 거의 모든 접근성의 기본·공통적인 기반 영역에 대해 적용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사전적·집단적·표준적 접근성 조치는 문화, 교육, 노동, 그밖의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영역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선결요소라 할 것이기 때문임
- 그런데 시설물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성 조치 의무 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규율되는바, 그 규정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는 대부분 접근성 조치 중에서도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최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거나, 혹은 실제 개별 장애인의 ‘최적’ 접근성 보장을 위해 어떤 ‘정당한 편의제공’이 요청될 수 있는지에 관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
- 그럼에도 ‘정당한 편의’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접근성 최소기준에 해당하여 무조건적 이행이 요구되는 조치에 관해서도 ‘과도한 부담’ 여부 등 의무이행 거부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도록 규율하는 것은, 개별 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법에 정한 내용 이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시설주 등 의무부담자가 이행할 접근성 조치의 수준을 약화할 우려가 있음

나. 접근성 적용범위와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문제의 해소

- A-(1) 유형(접근성 단계적 적용범위상 일정 기간 뒤 조치 대상이나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 ex. 의무화 대상을 정한 일정 법적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을 받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 관한 법적 대응

-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연속적 보완 관계를 고려할 때 정당한 편의 제공의 형태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접근성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명시적으로 함께 작동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이미 인지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비하는 제도적 설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A-(1)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 법에서 단계적 적용범위상 아직 접근성 조치 의무 대상이 아님이 명확한 시기라는 점 때문임. 접근성 조치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적 상태를 이유로 들어 마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의무 주체들이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처럼 접근성 조치의 형태로 불이익이 사전적으로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접근성 확보는 필요하며, 따라서 같은 불이익 제거의 효과를 정당한 편의제공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애인 당사자와 의무 주체 모두가 명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섬세한 법제의 마련이 요청됨
- A-(2) 유형(접근성 조치 대상으로 규정된 것과 성질이 유사하나 일정 법적 기준 이하로서 의무화 대상이 아닌 경우 : ex. 일정 면적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법제적 대응
- 접근성 조치 대상으로 규정된 대상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더 정당한 편의제공 방식의 작동이 명시적으로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한 대상들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사전적이고 집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도화된 만큼, 비록 그 제도화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해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영업 수익 등에 비추어 휠체어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의 부담이 과도하여 접근성 조치 의무를 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규모의 차이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 여부를 달리해도 좋을 당연한 요인은 아니라 할 것임.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배제된 것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장치의 동시 고안이 필

요하며,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특별히 발동하는 복지지원제도가 함께 연결될 필요가 있음

- 위의 두 경우 모두 단계적으로 접근성 조치의무의 적용 범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그 시일을 기다리는 동안 권리보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접근성 조치를 통한 불이익 제거가 이상적으로 작동되기까지 그 조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정당한 편의제공이 그 자리에서 대신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접근성 조치 의무에 대하여 병행적 또는 예비적으로 기능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일수록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

다. 접근성 조치를 규정하는 법제의 정비 방안

- 접근성 조치를 규정하는 법제의 정비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먼저, 접근성 조치의 범위의 확장이 하나임. 기존 접근성 조치 의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사전적이며 무조건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상 확장이 필요함
 - 이때 보다 세분화된 유형적 접근을 통해 의무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최대한 수요자 맞춤형의 접근성 확보 효과를 이루고 이를 통해 정당한 편의제공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형식으로 규정된 접근성 최소기준을 접근성 조치 형식으로 끌어 올리는 것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정당한 편의제공’의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전적이며 집단적인 접근성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법문언에도 반영하여 접근성 조치 의무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도록 규범체계의 제자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접근성 조치 규정 시 정당한 편의제공과 병행 작동하도록 함께 규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음. 다시 말해, 접근성 조치 규정 시 접근성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였거나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접근성 조치의 방법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당해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방식이 함께 작동된다는 점이 병행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는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접근 대상에 따라서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직면한 불이익 제거를 위한 작동 방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분하고, 특히 병행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의존할 때보다 더욱 두텁고 연속성있게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라. 개정 대상 예시

1) 시설물 접근·이용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법령 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제4항 등)

○ 위에서 논의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 조치의 혼재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형성을 장애인등편의법에 위임하고 있는바,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의 시설물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이나 조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접근성의 최소기준으로서 사전적이며 집단적인 내용만을 반영한 성격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함

- 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시설물 접근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형성을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를 찾아 보면, 여기에서는 대상시설 종류에 따른 편의시설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는 시설물 접근·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로 국한하는 효과를 낳음
 - 그런데 1) 이들 시설은 장애인들의 온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2) 물적 시설에 한정되어서, 실제 장애인들의 개별적 요청이 예상되는 인적 요소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두어 접근성을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던 본래의 목적대로의 기능을 훼손하게 됨

- 따라서 위 장애인등편의법에 대해서는 이를 1)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닌, 사전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성 조치’의 일환으로 ‘접근성 표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편의제공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2) 그 법적 속성을 ‘접근성 표준’으로 보게 되면 과도한 부담 항변을 적용하기보다는 무조건적 이행을 요청하게 되는 접근성 최소기준의 성질을 띠게 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제3항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형식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이동·교통수단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법령 개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8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4항 및 제7항의 이동·교통수단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동조제8항에서는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편의의 내용 형성을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그런데, 위의 시설물 접근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인적 요소 내지는 정당한 편의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고려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규정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본래 목적대로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고, 접근성 표준으로서의 무조건적 이행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함

-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앞서 규정되어 왔던 연혁적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현상일 수 있겠으나, 접근성 표준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성격이 다른 만큼 그 각각에 적합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그 구분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교통약자법에 대하여, 이를 1)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닌, 사전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성 조치’의 일환으로 ‘접근성 표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편의제공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도록 함.** 아울러, 2) 그 법적 속성을 ‘접근성 표준’으로 보게 되면 과도한 부담 항변을 적용하기보다는 무조건적 이행을 요청하게 되는 접근성 최소기준의 성질을 띄게 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제4항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형식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삭제하도록 함

2.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의 확대

가. 필요성

1)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1조에서 고용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면서,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호까지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의 6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위 조항은 정당한 편의 내용에서 모집·채용과정이 누락된 것과, 편의제공의 내

용을 6가지로 열거하는 것의 두 가지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먼저, 고용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접근성 보장은 이미 채용완료된 기존 직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스웨덴 차별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직원, 구직자, 취업 알선 중인 사람”이 합리적 편의를 통해 유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제11조 고용 영역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대상에서 모집 및 채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법 제 11조각호에 더하여, “모집·채용 과정의 변경 또는 조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미국 ADA Title I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의 내용에 관하여 (A)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존 시설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B) 직업 구조조정, 파트타임 및 수정된 업무 스케줄, 빈 직위에서의 할당, 설비 또는 장비의 변경 및 습득, 시험·훈련 자료 또는 정책의 적절한 변경 또는 조정, 장애인을 위한 자격을 갖춘 상급자 또는 통역관의 제공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유사한 편의제공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¹³⁹⁾고 규정함
- 이처럼 기타의 규정을 두어 예시적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법에서는 6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라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낳게 됨. 물론, 정당한 편의에 관하여 예시적으로 해석하는 최근의 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향에 비추어 실제 케이스에서 달리 판단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 예상되지만, 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려는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예시적 규정으로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은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

139) 42 USCA § 12111, (9)

치단체: 2009년 4월 11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이러한 적용 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영국 및 독일의 경우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고, 스웨덴 차별법의 경우 직원이 10명 미만인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편의제공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미국 ADA의 경우 15명 이상 사업장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적용함¹⁴⁰⁾.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1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대신 위에서 살핀 “공적 편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함께 설계해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나. 개정 대상 예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각호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에 더하여, “1의2. 모집·채용 과정의 변경 또는 조정”과, “7. 기타 유사한 편의 제공”을 신설함으로써, 현재의 채용과정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거나 열거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줄일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4. 상시 1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3년 4월 11일부터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140) 42 USCA § 12111. (5)(B)

3. '접근권'의 명문화

가. 필요성

- 접근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본법 또는 헌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접근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개선사항이 워낙 많다는 점에서, 입법방식상 그때그때의 개별 법률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법 내지 일반법적 규율을 통하여 일정 기준과 수준을 마련하여 상보적 규범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이 향유하여야 할 인권이나 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 이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장애인의 인권 내지는 확장적 의미에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규범적·법리적 뒷받침은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장애인권리협약과 함께 [헌법-기본법 내지 일반법-개별법 내지 특별법]의 촘촘한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접근성과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접근권'을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동법에서 다루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상당수는 사전적, 집단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접근성 조치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사후적, 개별적 요청에 따른 접근성 방법인 정당한 편의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동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건축법 등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의 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갖는 장애인 인권 보장에 있어서의 기능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접근권은 보다 기본적인 법에서 '권리'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과 같은 최상위 규범을 통해 이러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의 '권리'가 '접근권'으로 명문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현행법상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장애인등편의법, 양성평등기본법, 문화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음. 그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에 관한 접근

의 권한을 갖는 자를 일컫기 위하여 ‘접근권한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권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영역을 한정지어 ‘보건의료접근권’을 다루고 있음. 영역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접근성’을 보장받고 그 목적을 온전히 향유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권’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문화기본법의 접근권 개념이라 할 수 있는바, 문화기본법 제8조제3항제6의2호에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일반원칙으로 규정되어 여러 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접근성’ 또한, 그 의미상 ‘접근의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새길 수 있겠으나, ‘정당한 편의제공’과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 ‘접근성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와 제도 양면에서의 그 내용 및 형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언급한 바와 같이 접근권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권리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 내지는 헌법을 통한 명문화가 그 규범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임

나. 방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의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접근권’ 개념을 둬으로써, 현재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이 일부 법률에서 일부 영역과 대상에 한정하여 사용되던 ‘접근권’의 용어를, 다른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며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작동하는 권리로써 확장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음

2) 장애인기본법(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의하는 경우

- 장애인 기본법 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이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접근성의 두터운 보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기본법은 분야별, 조직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으나 종합적이고 일관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정책영역에 있어서,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규범력 확보 수단이기도 함. 선언적 규정이 아닌, 규범적 구속력 있는 기본법 내

지 일반법의 위상을 갖는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은 분절적인 개별법규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기 쉬운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돌려 장애인 인권보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권리보장의 방법을 모색하는 종래의 부분적 논의보다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기본법의 형태로 담아내고 그 속에 수요자인 장애인의 기본권 및 공급자인 국가와 사회의 책무 등을 고려하는 수요공급의 양면을 고려하는 구성체제로 설계한다면, 오히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들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제도적 개입이 어려웠던 일체의 법령 및 정책 등의 방향성이 재정립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접근권’을 명문화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규정 또한 이 기본법에 둬으로써, 각 분야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해석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후술할 내용과 같이 접근성이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사례 등 데이터들이 관리되어야 이를 통해 실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기반 장애인 접근권 구현을 위한 데이터 관리 근거 규정을 기본법에 담는 것도 바람직함
- 기본법 제정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 기존의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법들은 일반법 내지 개별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 이러한 기본법 제정 전후를 막론하고, 후술할 내용과 같은 장애인등편의법 등의 개정을 통한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헌법 개정에 의하는 경우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헌법에 먼저 명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헌법 제11조에 장애를 명문화하여,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장애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개정할 수 있을 것임

○ 헌법에 접근권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① 장애인의 일상 참여와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접근권은 최대한 보장된다. ②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권 실현과 접근성 제도화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 또한, 장애와 관련하여 오랜기간 문제되어 왔던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 개념의 확대도 필요함

- 즉,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조문에 대하여, 이를 “⑤ 장애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개정하는 것이 전체 법체계 속에서 장애인 접근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지능정보기술이 일상 생활영역에 결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양상이 과거와 크게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장애인의 일상의 모습이나 관계맺음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의 보장을 기점으로 하여 사회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성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음
- 접근성 관련 법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함. 사전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의 접근성 조치의 적용이 어렵다면 사후적이고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제공 방식의 접근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접근성의 점진적인 실현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즉각적 의무인 정당한 편의가 개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¹⁴¹⁾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에 기반하여 두 방식의 적용을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를 재정립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였음.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권의 헌법 명문화,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한 접근권 구체화, 개별법들에 의한 유형별 영역별 촘촘한 접근성 제도화 및 정당한 편의제공 병행 입법 등을 제안함
- 이외에도 향후 접근성 표준에 의하여 보장되는 영역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하여 접근성이 보장되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 법령 밖의 범위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CRPD에 규정된 접근성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근성의 완전한 보장이 필요함.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부담자 또는 편의제공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거나 제한할 실정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해당 대상이 장애인에게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

141) CRPD 제6호논평, para.42.

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편의제공 의무부담의 주체 또는 의무의 내용, 접근성 구현방법, 접근성 구현을 위한 비용부담 구조를 고려하여 편의제공이 주어지는 법제마련이 필요할 것임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 거부에 초점을 맞추어 법원이나 평등기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케이스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음. 접근성 표준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권을 구현하는 국가별 법제의 특성 때문이거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분쟁이 당사자간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소되면서 종국판결에 이르지 못하여 공식 케이스로 수집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사례가 고용 등의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다양한 논점이 발굴되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상세화된 정보를 의무부담자 및 장애인 당사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은, 완전한 접근성 보장의 길에 이르기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례 축적이 중요함
- 개별 장애인이 특정한 장소, 시설, 장치, 서비스 등에 접근함에 있어 마주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 사이의 배려 의무로서도 의미를 지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그 조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향후 다른 개별 사례에 있어서의 더 나은 조치를 발굴하기 위한 동력원이기도 함.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들이 갖는 의미를 흘려 보내지 않고 증폭 시킴으로써 진정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다시 말해, 각 사례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한 개인에 대한 개별적 구제가 완료되었다는 만족 또는 단편적인 평가에 그치거나 개별 기관에서의 시정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해당 지식을 관리함으로써 다른 사례, 다른 기관, 다른 생활영역으로 확장 적용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지식관리 및 지능형 활용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 또한, 일면적 접근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기존의 시설물 이용을 위한 접근성 조치 관련 제도가 시설물의 출입구나 계단, 화장실, 물리적인 기준을 충

족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에 더하여 해당 시설 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약 시스템도 장애인 웹접근성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 영역의 논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임. 시대의 발전과 함께 여러 접근영역간 융복합 경향이 강화되면서, 접근영역은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드웨어적 분절적 한계를 갖는 기존의 장애 차별 철폐의 노력은, 오늘날 보다 **융복합콘텐츠와 연동서비스** 지향적으로 진화 될 필요가 있음

- 대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동등한 접근을 보장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해당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님. 먼저, 합리적인 조정으로 인해 접근 대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접근 대상의 본질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지점을 모두 뜻한다고 할 것임
- 접근성 개념의 적극적 대두가 치열한 장애인권운동의 결실일 수 있었던 것은, 접근권이야말로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향유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일상참여와 관계맺음의 방식이기 때문임
- 본 연구가 접근권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진행형 대화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복합적 속성을 이해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이 접근성과의 상보관계 하에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접근권을 두텁고 연속성있게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덧붙여, 보고서에 담긴 몇 가지 서식은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내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국내외 법령 판례 결정례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고퀄리티로 검색활용하고, 이를 통한 기본 통계와 연관 결합 통계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항목서식의 예로 제시된 것이며, 장애유형과 분야유형에 관한 접근성과 편의제공에 관한 빅데이터와 AI 화두에 대응하는 데도 매우 유용함을 강조함
- 이 연구를 기반으로 접근권 적극입법, 실효적 정책 추진과 완성도 높은 제도 개선, 관련 법령 사례 등의 부단한 지식구조화에 의한 활용성 제고, 디지털 융복합에 의한 첨단환경 조성 등으로 이어져 가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학술논문

- 강영무, 홍순구, 이현미, 차윤숙, “장애인복지관의 웹 접근성 평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1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 김남진, “국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50권 제1호,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07.
- 김대명,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1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년.
- 도지혜, 유은영, “근로환경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28권 제3호, 대한작업치료학회, 2020.
- 박민영, “주요국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장애의 정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 서창교, 황채영, “전국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평가”, 한국장애인복지학 제21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3.
- 송종길,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한국방송학회, 2003.
- 심재진, “장애인의 접근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장애인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대전지방법원 2012.2.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 _____, “영국과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와 장애인사회보장법제의 관계 -고용상의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국가의 장애인고용지원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52권, 한국노동법학회, 2014.
- _____, 서정희, 오욱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0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8.
- 양승광,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정당화 사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에 관한 평석 -”, 사회보장법학 제9권 제2

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0.

오봉욱, “장애인의 접근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제8권,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2.

오욱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27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5.

_____,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평가 -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위계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6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1.

유동철,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적 보장 방안”, 비판사회정책 제20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5.

_____,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이동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정립에 관한 일 고찰”, 비판사회정책 제56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이용직,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

전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관한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39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정다찬, 도유미, 나운환, “장애인 근로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직무만족과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한국재활복지공학회, 2019.

조임영,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35권, 한국노동법학회, 2010.

조주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장애 유형과 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6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2003.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제8권,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홍석한, “미국의 장애인법(ADA)에 대한 고찰 — 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32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21.

Fachgespräch „Angemessene Vorkehrungen als Diskriminierungsdimension im Recht: Menschenrechtliche Forderungen an 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19. März 2019 in Berlin, Berlin:

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 2019

Mahlmann, Matthias, Country report: Non-discrimination: Transposition and implementation at national level of Council Directives 2000/43 and 2000/78; Germany,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0

Welti, Felix/Arne Frankenstein, Arne/Hlava, Daniel, Angemessene Vorkehrungen und Sozialrecht: Gutachten erstattet für die Schlichtungsstelle nach dem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erlin: Schlichtungsstelle nach dem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2018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201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018.

국가인권위원회,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 2013.

국토교통부,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2020.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실태 및 개선방안, 2019.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문화공연장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 2011.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을 위한 방안 연구, 2012.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차별금지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2017.

한국법제연구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2009.

한국법제연구원,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복지지원법제의 관계 -UN 장애인권리협약,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2018.

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 2018.

한국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 2020.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개발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집, 2010.

발표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 2009.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202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 기념토론회 발표자료, 2020.

웹 자료

■ 미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Inform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on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ttps://www.ada.gov/>
Job Accommodation Network ADA Library, <https://askjan.org/ADA-Library.cfm>

■ 영국

the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working for everyone, 'reasonable-adjustments', <https://www.acas.org.uk/reasonable-adjustments>
enhance the uk,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20 years on a long way to go?', <https://enhancetheuk.org/the-disability-discrimination-act-20-years-on-a-long-way-to-go/?gclid=EAIaIQobChMI1JyJq4LC6QIVla2WCh2tjgqrEAAAYASAAEg>

Disability Rights UK, 'The Equality Act and disabled people', <https://www.disabilityrightsuk.org/equality-act-and-disabled-people>

■ 호주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reasonable adjustment', <https://humanrights.gov.au/about/news/speeches/reasonable-adjustment>

■ 독일

European Equality Law Network, <https://www.equalitylaw.eu/downloads/5226-germany-country-report-non-discrimination-2020-1-96-mb>

■ 일본

内閣部,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基本方針(내각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2017,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sabekai/kihonhoushin/pdf/gaiyo.pdf>

内閣府ホームページ(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cao.go.jp/>

■ 홍콩

殘疾歧視條例(장애차별 조례),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487>

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立法會(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 <https://www.legco.gov.hk/>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인쇄일| 2021년 12월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장애차별조사1과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02)2125-9966
|FAX| 02)2125-0924
|제작| (주)두루행복한세상 (사회적·장애인기업)
|전화| (070) 4659-0803

ISBN : 978-89-6114-862-7 93330

비매품